

시보

선 람	기관의 장

all ways INCHEON

제1730호

2019년 3월 11일 월요일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규 칙

- 인천광역시규칙 제3104호 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규칙 폐지규칙 3

훈 령

- 인천광역시훈령 제1192호 인천광역시 안전보건 관리 규정 5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48호 IFEZ 새아침공원 주차장 시설 사용료 고시 20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49호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21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50호 도시관리계획(송의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34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17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141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454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공고 14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46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143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462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145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463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공고 147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471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공고 148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473호 도시관리계획(석남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 공고·열람 149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47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150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476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공고·열람 15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478호 인천도시관리계획(불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시행(변경) 및 환지계획 인가 153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479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공고 155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48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156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482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157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488호 2019년도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이자지원 계획 (수정) 공고	158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491호 도시계획시설(도로명: 중로1류23호선, 공사명: 범양아파트 주택재건축 도로구조 개선공사) 공사완료공고	160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493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등록변경 공고	16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494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공고	16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497호 일반측량업 등록취소 공고	163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498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복합용도지구, 용현.학익 2-1블록 도시개발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고.열람	164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507호 정보통신공사업자 행정처분	166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514호 남동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준공인가 공고	167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515호 「제5회 생명의 바다 그림대회」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168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518호 2019년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공고	183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520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공고.열람	189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2019-42호 2019 IFEZ 문화행사 지원사업 공모 (재공고)	191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19-83호 손실보상협의 공시송달공고	214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25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9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26호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5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27호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1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28호 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0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32호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	260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33호 인천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75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34호 인천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84

규 칙

인천광역시규칙(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폐지이유

「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규칙」의 내용이 2019년 1월 7일 공포된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포함됨에 따라 존속 필요성이 없어져 이를 폐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규칙을 폐지함.

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3월 11일

인천광역시규칙 제 3104 호

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규칙 폐지규칙

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규칙을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훈 령

인천광역시훈령(발령)

□ 제 명 : 인천광역시 안전보건 관리 규정

□ 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관계법령의 준수 및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안전보건업무 우선, 준수의무를 정함(제1장)
- 나.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를 정함(제2장)
-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장)
- 라.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장)
- 마. 안전관리계획, 위험성 평가실시, 안전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장)
- 바.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장)
- 사.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7장)

인천광역시 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2019년 3월 11일

인천광역시훈령 제 1192 호

인천광역시 안전보건 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 소속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제4조(안전보건업무 우선)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 사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

하며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 사업장을 관리·감독하는 해당 부서장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시설, 기계, 기구 및 작업방법 등 물적·인적 안전보건에 대한 사고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시장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제6조(관리감독자) ① 시장은 안전보건 업무 수행을 위하여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사람을 법 제14조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관 분야의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소관 분야의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소관 분야의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소관 분야의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소관 분야의 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및 보건관리자(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소관 분야의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③ 관리감독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안전관리자) ① 시장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기 위하여 법 제 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를 둔다.

②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된 업무 및 관계법이나 이 규정이 정하는 업무
2. 안전 전반에 관한 업무 계획의 수립

3. 안전관리규정 및 수칙의 이행여부 감독
4. 안전활동의 지도 및 감독
5. 안전사고의 조사, 원인분석, 예방책의 강구, 기록유지 및 보고와 사고사례의 취합
6. 안전점검,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실시
7.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8. 지휘·감독하는 사업장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9.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10.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11.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12. 산업보건의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13. 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보건관리자) ① 시장은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기 위하여 법 제 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를 둔다.

② 보건관리자는 법 시행령 제 17조에서 정한 업무 및 관계법과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위생 전반에 관한 업무계획의 수립
2. 보건위생 활동의 지도 및 감독
3. 보건위생 관계 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4. 보건관계 요원의 지도 및 감독
5. 안전보건관리 규정 중 보건에 관한 규정 및 수칙의 이행여부 확인

6. 그 밖의 근로자 건강유지 등 보건에 관한 사항

제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 업무수행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한다.

1. 근로자위원

가.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나.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2. 사용자위원

가. 사용자대표

나. 대표자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사업장 부서의 장

다.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의 담당자) 1인

라.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의 담당자) 1인

③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① 노사 쌍방은 회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② 위원회는 회의에서 결정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게시판 및 그 밖

의 방법으로 전 직원에게 신속·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심의·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제12조(회의록 작성·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참고인의 직위 및 진술
3. 회의내용, 심의·의결 사항
4. 그 밖의 토의 사항

제4장 안전보건교육

제13조(교육계획 수립) 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의 생활화를

위하여 연간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보건교육) ①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은 다음과 같다.

1. 정기교육
2. 신규채용자교육
3.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4. 관리감독자 교육
5.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교육

② 교육시기 및 교육시간·교육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15조(교육실시 방법) 사업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담당부서의 장 및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외부전문강사를 초빙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지정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킬 수 있다.

제5장 안전관리

제16조(안전관리계획) ① 관리책임자는 매년 초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기본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기본방침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부문별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위험성평가 실시) ① 관리책임자는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한 작업행동 및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 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 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③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방호조치) ①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한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문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기어 등)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방호조치를 임의로 해체하여서는 안 되며,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작업중지) ① 사업장의 작업 중지조치는 관리책임자의 지시에 의거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급박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관리감독자가 즉시 업무를 중지시키고 직원을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먼저 취하여야 한다.

② 작업 중지조치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한다.

③ 모든 직원은 작업 중지조치를 즉각 이행하여 재해예방 및 재해 확산방지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인증) 관리책임자는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를 구입 사용 시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위탁검사기관에서 안전인증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토록 해야 한다.

제21조(안전검사) ① 관리책임자는 사업장에서 사용 중에 있는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위탁검사 기관에 위탁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안전검사 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검사 신청은 검사 주기 만료 15일전에 검사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검사 결과 교부 받은 검사필증은 해당 기계·기구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⑤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규정한 유해·위험 기계·기구로 검사 주기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는 2년 마다 실시한다.

제22조(안전진단)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 및 실적
2. 유해요인제거 및 시설물의 정기점검

3. 안전교육훈련
4. 사고원인조사 및 그 대책수립
5. 안전관련 서류의 기록 및 보존
6.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

② 안전관리자는 해당사업장의 안전진단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대책을 수립한 뒤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점검) ①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및 직원 등 모든 계층의 책임자는 자기 소관 업무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 사항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 할 수 있도록 점검계획을 수립 시행 할 책임이 있다.

② 점검의 종류와 시기는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진행한다.

1. 관리책임자와 안전업무 담당자는 회사 전반에 대하여 안전 상태를 점검 확인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관리감독자는 회사의 안전·보건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업무 시작 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3. 모든 직원은 업무 전 일상 안전 점검 및 업무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24조(사업장의 안전조치) 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작업규율의 확립여부
2. 작업계획 수립의 적정여부

3. 작업배분 및 공정관리 적정여부
4. 작업용구, 작업장구 및 안전장구의 적정여부
5. 그 밖의 안전한 작업에 필요한 사항

제25조(차량안전 운행) ① 차량관리 및 운영부서장은 차량의 점검정비 및 운전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차량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차량관리 및 운영부서장은 매년 3월까지 차량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차량관리·운영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안전수칙 및 안전표지) ① 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안전수칙 및 안전표지를 작성·게시하여야 한다.

② 근무자는 안전수칙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유해·위험한 장소에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아니하는 재료로 제작된 안전·보건표지를 제작 또는 부착 사용하여야 한다.

제6장 보건관리

제27조(작업환경측정) ① 관리책임자는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근로자 건강진단) ① 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② 건강진단의 종류·시기·주기·항목 등 건강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29조(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등) 관리책임자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사용하는 작업장 내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0조(근골격계질환예방) 관리책임자는 근골격계부담작업(반복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의 예방을 위한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 관리책임자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제7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32조(재해발생 시 긴급조치) ① 관리감독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

자가 안전사고 등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병원 응급실 또는 치료실로 후송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사고 경위를 신속히 조사하여 관리책임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33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해당 사업장의 안전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계자는 응급조치 후 즉시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안전사고 또는 재해통보 접수 후 즉시 병원,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해발생현장은 사고발생 상태에서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의 지시 없이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④ 사고조사는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서 정한 산업재해조사 표 양식에 의거 조사하고 조사표를 한달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단,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재해분석 및 대책) ① 관리책임자는 매분기 중에 발생한 재해현황을 총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② 재해분석 결과는 각 부서에 통보하고 게시판에 공고하여 직원 및 각 부서의 협조를 구하도록 한다.

제8장 보 칙

제35조(무재해 운동) 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자율적인 안전사고 예방운동으로 안전사고 예방의식을 고취하고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

하여 무재해 운동을 추진한다.

제36조(문서기록 보존)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모든 기록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년간 보존한다. 단, 작업환경측정과 근로자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한다.

제37조(규정 외 사항) 안전보건에 관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산업안전 관련법령 및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48호

IFEZ 새아침공원 주차장 시설 사용료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제15조 ①호에 따라 새아침공원 내 주차장 시설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1 일

인천광역시장

1. 장 소 : 새아침공원(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주차장
2. 종류 및 명칭 : 근린공원
3. 요금징수기관 : 인천시설공단
4. 공원시설사용료

기 준		사용료(안)	비 고
1회 주차	최초 2시간 까지	무료	
	2시간 이후 30분까지	400원	
	2시간 30분이후 15분당	200원	
전일주차(7시간이상)		4,000원	

5. 주차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차량

- 가. 감면대상차량: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4조의 2 적용
- 나. 면제대상차량

대 상	내 용	비 고
상시 출입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내 근무하는 담당공무원·공무직·기간제근로자, 자원활동가,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직원 및 관용 차량 • 도서관 문화행사 참가자(1시간 추가 무료) • 테니스장 사용수익허가 운영관리자 	상시출입차량, 공무차량 - 사전공문협조, 담당공무원 확인 거친 경우에만 해당
공무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업무 수행을 위한 내방차량 	
공사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경제청, 인천시설공단에서 발주한 공사 용역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6. 적용시기 : 고시일로부터 1개월 뒤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 - 49호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339(2018.12.24.)호로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을 「도시개발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3. 11.

인 천 광 역 시 장

I.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수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 없음):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치(변경)

- 지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43-7번지 일원
- 변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1004번지 일원

○ 면적: (지정) 881,954.3m² → (변경) 881,975.4m² (증 21.1m²)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 없음)

-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개발모델 제시
- 인천대학교 이전 전략계획 및 청운대 입지를 통한 교육인프라 개선
- 주변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 조성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 없음)

- 시행자 : 인천도시공사 사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 없음)

- 시행기간 : 2006. 5. 29. ~ 2019. 03. 31
-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구분	면적(m ²)			비율 (%)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총계	881,954.3	증)21.1	881,975.4	100.0		
주거 용지	소계	189,424.5	증)20.2	189,444.7	21.5	
	공동주택	160,340.9	증)12.9	160,353.8	18.2	
	단독주택	4,401.6	증)6.2	4,407.8	0.5	
	준주거시설	24,682.0	증)1.1	24,683.1	2.8	근린생활시설
상업 용지	소계	52,962.1	증)18.0	52,980.1	6.0	
	일반상업	52,962.1	증)18.0	52,980.1	6.0	
유통 시설 용지	소계	37,253.4	증)8.3	37,261.7	4.2	
	물류·유통시설	37,253.4	증)8.3	37,261.7	4.2	
도시 기반 시설 용지	소계	595,790.0	감)28.3	595,761.7	67.6	
	학교	325,150.1	증)3.4	325,153.5	36.9	대학교(2개소) -인천대,청운대 존치 초교(1개소) -서화초교 존치, 고교(1개소), 유치원(2개소)
	노유자시설	495.8	-	495.8	0.1	어린이집(1개소)
	공원	58,532.2	감)108.4	58,423.8	6.6	6개소
	녹지	34,900.5	증)9.3	34,909.8	4.0	
	공공공지	-	증)197.0	197.0	0.02	
	공공청사	32,606.5	증)9.4	32,615.9	3.7	5개소 (숙골어린이도서관 존치)
	주차장	6,885.0	감)1.0	6,884.0	0.8	5개소

구분	면적(m ²)			비율 (%)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광장	4,512.9	감)0.8	4,512.1	0.5	
	132,707.0	감)137.2	132,569.8	15.0	보행자전용도로 포함
	3,992.0	-	3,992.0	0.5	저류시설 (공원과 중복결정)
기타 시설 용지	6,524.3	증)2.9	6,527.2	0.7	
	912.2	증)0.2	912.4	0.1	1개소
	1,869.2	증)2.6	1,871.8	0.2	2개소
	3,742.9	증)0.1	3,743.0	0.4	

7.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

- 변경 내용 중 ‘기정’은 인천광역시 시보 제1085호(2009.12.14.)의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385호(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다.
- ‘변경’ 따로 붙임

8.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게재생략)

9. 관계도서의 열람방법(변경 없음)

- 공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인천광역시청(도시개발계획과, ☎ 032-440-453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도시창생과, ☎ 032-880-4487)

10.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 따로 붙임

II. 실시계획(변경) 인가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 명칭: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개발모델 제시
- 인천대학교 이전 전략계획을 통한 교육인프라 개선
- 주변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 조성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치(변경)

- 기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43-7번지 일원
- 변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1004번지 일원

- 면적: (기정) 881,954.3m² → (변경) 881,975.4m² (증 21.1m²)

4. 시행자(변경 없음)

- 시행자: 인천도시공사 사장
-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5. 시행기간(변경 없음)

- 2006. 5. 29. ~ 2019. 03. 31

6. 시행방식(변경 없음)

- 수용 또는 사용방식

7.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한다)의 결정내용(변경)

- 따로 붙임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장소: 인천광역시청(도시개발계획과, ☎ 032-440-453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도시창생과, ☎ 032-880-4487)

9. 도시개발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게재생략)

10. 공공시설의 귀속 등에 관한 사항(변경)

- 따로 붙임

11.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

- 변경 내용 중 ‘기정’은 인천광역시 시보 제1085호(2009.12.14.)의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385호(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다.
- ‘변경’ 따로 붙임

[붙임]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

■ 토지세목 조서(기정):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385호(2009.12.14.) 참조

■ 토지세목 조서(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도화동	23-16	광	2170.0	2170.0		인천도시공사				
2	도화동	23-17	광	1480.0	1480.0		인천도시공사				
3	도화동	28-3	전	46.0	46.0		인천도시공사				
4	도화동	28-7	대	132.0	132.0		인천도시공사				
5	도화동	28-8	대	228.0	228.0		인천도시공사				
6	도화동	28-10	광	109.0	109.0		인천도시공사				
7	도화동	28-11	광	1190.0	1190.0		인천도시공사				
8	도화동	28-13	대	833.0	833.0		인천도시공사				
9	도화동	28-15	대	83.0	83.0		인천도시공사				
10	도화동	28-16	전	294.0	294.0		인천도시공사				
11	도화동	28-21	전	288.0	288.0		인천도시공사				
12	도화동	28-22	광	288.0	288.0		인천도시공사				
13	도화동	28-24	광	136.0	136.0		인천도시공사				
14	도화동	28-25	전	79.0	79.0		인천도시공사				
15	도화동	28-28	대	149.0	149.0		인천도시공사				
16	도화동	28-27	대	235.0	235.0		인천도시공사				
17	도화동	28-28	전	734.0	734.0		인천도시공사				
18	도화동	28-29	전	694.0	694.0		인천도시공사				
19	도화동	28-30	전	1091.0	1091.0		인천도시공사				
20	도화동	28-31	전	83.0	83.0		인천도시공사				
21	도화동	28-32	전	198.0	198.0		인천도시공사				
22	도화동	28-33	전	585.0	585.0		인천도시공사				
23	도화동	28-34	전	129.0	129.0		인천도시공사				
24	도화동	28-35	전	317.0	317.0		인천도시공사				
25	도화동	28-36	전	1472.0	1472.0		인천도시공사				
26	도화동	28-37	전	469.0	469.0		인천도시공사				
27	도화동	28-41	대	195.0	195.0		인천도시공사				
28	도화동	28-42	대	78.0	78.0		인천도시공사				
29	도화동	28-43	대	370.0	370.0		인천도시공사				
30	도화동	28-44	대	188.0	188.0		인천도시공사				
31	도화동	28-51	대	350.0	350.0		인천도시공사				
32	도화동	28-53	대	254.0	254.0		인천도시공사				
33	도화동	28-54	대	221.0	221.0		인천도시공사				
34	도화동	28-55	광	208.0	208.0		인천도시공사				
35	도화동	28-56	광	149.0	149.0		인천도시공사				
36	도화동	28-59	전	69.0	69.0		인천도시공사				
37	도화동	28-60	대	1085.0	1085.0		인천도시공사				
38	도화동	28-62	대	172.0	172.0		인천도시공사				
39	도화동	28-65	광	585.0	585.0		인천도시공사				
40	도화동	28-67	전	40.0	40.0		인천도시공사				
41	도화동	28-68	대	232.0	232.0		인천도시공사				
42	도화동	28-69	대	78.0	78.0		인천도시공사				
43	도화동	28-70	대	131.0	131.0		인천도시공사				
44	도화동	28-71	전	24.0	24.0		인천도시공사				
45	도화동	28-73	광	52.0	52.0		인천도시공사				
46	도화동	28-74	전	121.0	121.0		인천도시공사				
47	도화동	28-75	광	73.0	73.0		인천도시공사				
48	도화동	28-76	전	290.0	290.0		인천도시공사				
49	도화동	28-78	대	78.0	78.0		인천도시공사				
50	도화동	28-79	대	461.0	461.0		인천도시공사				
51	도화동	28-81	전	149.0	149.0		인천도시공사				
52	도화동	28-82	광	866.0	866.0		인천도시공사				
53	도화동	28-82	광	866.0	866.0		인천도시공사				
54	도화동	28-82	광	866.0	866.0		인천도시공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역면적(㎡)	관입면적(㎡)	지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55	도화동	28-83	학	652.0	652.0		인원도시공사				
56	도화동	27-5	관	135.0	135.0		인원도시공사				
57	도화동	32-1	대	112.0	112.0		인원도시공사				
58	도화동	33-3	대	88.7	88.7		인원도시공사				
59	도화동	33-4	대	156.9	156.9		인원도시공사				
60	도화동	33-5	대	148.3	148.3		인원도시공사				
61	도화동	34-6	대	40.4	40.4		인원도시공사				
62	도화동	33-7	대	1396.8	1396.8		인원도시공사				
63	도화동	33-8	대	82.5	82.5		인원도시공사				
64	도화동	33-9	대	82.7	82.7		인원도시공사				
65	도화동	33-10	대	107.3	107.3		인원도시공사				
66	도화동	33-11	대	97.5	97.5		인원도시공사				
67	도화동	33-12	대	120.5	120.5		인원도시공사				
68	도화동	33-13	대	222.5	222.5		인원도시공사				
69	도화동	33-14	대	60.0	60.0		인원도시공사				
70	도화동	33-15	대	184.2	184.2		인원도시공사				
71	도화동	33-16	대	77.7	77.7		인원도시공사				
72	도화동	33-17	도	69.7	69.7		인원도시공사				
73	도화동	33-18	대	97.1	97.1		인원도시공사				
74	도화동	33-19	대	105.2	105.2		인원도시공사				
75	도화동	33-20	대	152.8	152.8		인원도시공사				
76	도화동	33-21	대	325.1	325.1		인원도시공사				
77	도화동	33-22	대	149.6	149.6		인원도시공사				
78	도화동	33-23	대	307.9	307.9		인원도시공사				
79	도화동	33-24	대	134.0	134.0		인원도시공사				
80	도화동	33-25	대	179.8	179.8		인원도시공사				
81	도화동	33-26	대	795.1	795.1		인원도시공사				
82	도화동	33-27	대	49.5	49.5		인원도시공사				
83	도화동	33-28	대	843.1	843.1		인원도시공사				
84	도화동	33-29	대	97.2	97.2		인원도시공사				
85	도화동	33-30	대	218.8	218.8		인원도시공사				
86	도화동	33-31	도	74.6	74.6		인원도시공사				
87	도화동	33-32	대	74.3	74.3		인원도시공사				
88	도화동	33-33	대	143.6	143.6		인원도시공사				
89	도화동	33-34	대	94.3	94.3		인원도시공사				
90	도화동	33-35	학	95.6	95.6		인원도시공사				
91	도화동	33-36	학	164.9	164.9		인원도시공사				
92	도화동	35-1	대	148.6	148.6		인원도시공사				
93	도화동	35-2	대	60.3	60.3		인원도시공사				
94	도화동	35-3	대	277.2	277.2		인원도시공사				
95	도화동	35-4	대	149.2	149.2		인원도시공사				
96	도화동	35-5	학	5310.8	5310.8		인원도시공사				
97	도화동	35-6	학	166.7	166.7		인원도시공사				
98	도화동	35-7	학	410.5	410.5		인원도시공사/학교법인애전학원				
99	도화동	35-10	학	557.5	557.5		인원도시공사/학교법인애전학원				
100	도화동	35-8	학	682.2	682.2		학교법인애전학원				
101	도화동	35-9	학	982.4	982.4		인원도시공사/학교법인애전학원				
102	도화동	35-11	학	1.2	1.2		인원도시공사/학교법인애전학원				
103	도화동	36-1	학	953.0	953.0		인원도시공사/학교법인애전학원				
104	도화동	36-10	학	12.0	12.0		인원도시공사/학교법인애전학원				
105	도화동	36-2	학	657.3	657.3		인원도시공사/학교법인애전학원				
106	도화동	36-11	학	22.6	22.6		인원도시공사/학교법인애전학원				
107	도화동	36-3	학	631.6	631.6		인원도시공사/학교법인애전학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면적면적(㎡)	지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구분	
108	도화동	36-12	학	36.3	36.3		인원도시공사/학교법인예전학원					
109	도화동	36-4	학	1682.6	1682.6		인원도시공사/학교법인예전학원					
110	도화동	36-13	학	114.6	114.6		인원도시공사/학교법인예전학원					
111	도화동	36-5	학	2139.6	2139.6		인원도시공사/학교법인예전학원					
112	도화동	36-14	학	51.1	51.1		인원도시공사/학교법인예전학원					
113	도화동	36-6	학	115.4	115.4		학교법인예전학원					
114	도화동	36-7	학	89.1	89.1		학교법인예전학원					
115	도화동	36-8	학	793.0	793.0		학교법인예전학원					
116	도화동	36-9	학	1204.6	1204.6		학교법인예전학원					
117	도화동	37-1	학	280.3	280.3		학교법인예전학원					
118	도화동	37-2	학	2.5	2.5		학교법인예전학원					
119	도화동	37-4	학	117.3	117.3		인원광역시					
120	도화동	37-5	도	121.0	121.0		인원광역시					
121	도화동	37-6	학	59.3	59.3		학교법인예전학원					
122	도화동	37-7	학	260.2	260.2		학교법인예전학원					
123	도화동	37-8	학	74.5	74.5		학교법인예전학원					
124	도화동	37-9	학	102.5	102.5		학교법인예전학원					
125	도화동	37-10	학	881.2	881.2		학교법인예전학원					
126	도화동	37-11	학	25.5	25.5		인원도시공사/학교법인예전학원					
127	도화동	37-99	학	157.5	157.5		인원도시공사/학교법인예전학원					
128	도화동	37-12	대	154.1	154.1		인원도시공사					
129	도화동	37-13	대	99.4	99.4		인원도시공사					
130	도화동	37-14	대	248.6	248.6		인원도시공사					
131	도화동	37-15	대	13.3	13.3		인원도시공사					
132	도화동	37-16	대	125.3	125.3		인원도시공사					
133	도화동	37-17	대	90.5	90.5		인원도시공사					
134	도화동	37-18	대	27.1	27.1		인원도시공사					
135	도화동	37-19	도	162.4	162.4		인원도시공사					
136	도화동	37-20	대	121.8	121.8		인원도시공사					
137	도화동	37-21	대	72.7	72.7		인원도시공사					
138	도화동	37-22	대	69.9	69.9		인원도시공사					
139	도화동	37-23	대	112.1	112.1		인원도시공사					
140	도화동	37-24	대	104.4	104.4		인원도시공사					
141	도화동	37-25	대	57.6	57.6		인원도시공사					
142	도화동	37-26	대	124.9	124.9		인원도시공사					
143	도화동	37-27	도	42.9	42.9		인원광역시					
144	도화동	37-28	대	4.9	4.9		인원도시공사					
145	도화동	37-29	도	13.2	13.2		인원광역시					
146	도화동	37-30	학	78.5	78.5		학교법인예전학원					
147	도화동	37-31	학	168.1	168.1		학교법인예전학원					
148	도화동	37-32	대	53.2	53.2		인원도시공사					
149	도화동	37-33	도	60.0	60.0		인원광역시남구					
150	도화동	37-34	도	6.3	6.3		인원광역시					
151	도화동	37-35	학	145.4	145.4		학교법인예전학원					
152	도화동	37-36	학	23.2	23.2		인원도시공사/학교법인예전학원					
153	도화동	37-40	학	375.2	375.2		인원도시공사/학교법인예전학원					
154	도화동	37-37	학	20.0	20.0		학교법인예전학원					
155	도화동	37-38	학	4.8	4.8		학교법인예전학원					
156	도화동	38-3	학	21801.0	21801.0		인원도시공사/학교법인예전학원					
157	도화동	38-21	학	1542.0	1542.0		인원도시공사/학교법인예전학원					

인 권 광 역 시 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반입면적(㎡)	지분	소유자	주소	선명	주소	권리인	권리구분	비고
158	도화동	38-22	학	63270.0	63270.0								
159	도화동	38-23	학	68.0	68.0		인천도시공사/학교법인해전학원						
160	도화동	38-5	학	74.0	74.0		인천도시공사						
161	도화동	38-14	학	31.0	31.0		인천도시공사						
162	도화동	38-16	학	3.0	3.0		인천도시공사						
163	도화동	38-17	학	44.0	44.0		인천도시공사/인천광역시						
164	도화동	38-18	학	134.0	134.0		인천도시공사						
165	도화동	38-19	학	2036.0	2036.0		인천도시공사/학교법인해전학원						
166	도화동	38-24	학	484.0	484.0		인천도시공사/학교법인해전학원						
167	도화동	38-20	학	142.0	142.0		인천도시공사						
168	도화동	39-13	대	2.0	2.0		인천도시공사						
169	도화동	39-19	학	70.0	70.0		인천도시공사						
170	도화동	40-10	대	2.0	2.0		인천도시공사/인천광역시						
171	도화동	42-1	학	1919.2	1919.2		인천도시공사						
172	도화동	42-2	대	180.9	180.9		인천도시공사						
173	도화동	42-3	대	203.1	203.1		인천도시공사						
174	도화동	42-4	대	285.5	285.5		인천도시공사						
175	도화동	42-5	대	250.1	250.1		인천도시공사						
176	도화동	42-6	대	170.7	170.7		인천도시공사						
177	도화동	42-7	도	43.9	43.9		인천도시공사/인천광역시						
178	도화동	42-8	도	53.7	53.7		인천광역시						
179	도화동	42-9	도	39.8	39.8		인천도시공사						
180	도화동	43-1	학	417.3	417.3		인천도시공사						
181	도화동	43-2	학	1575.3	1575.3		인천도시공사						
182	도화동	43-3	학	1567.8	1567.8		인천도시공사						
183	도화동	43-4	학	599.0	599.0		인천도시공사						
184	도화동	43-5	학	89.1	89.1		인천도시공사						
185	도화동	43-6	학	3622.2	3622.2		인천도시공사						
186	도화동	43-7	학	114602.5	114602.5		인천도시공사						
187	도화동	43-8	학	862.2	862.2		인천도시공사						
188	도화동	43-9	학	535.0	535.0		인천도시공사						
189	도화동	43-10	학	2508.2	2508.2		인천도시공사						
190	도화동	43-11	학	943.3	943.3		인천도시공사						
191	도화동	43-12	학	1176.3	1176.3		인천도시공사						
192	도화동	43-13	학	159.1	159.1		인천도시공사						
193	도화동	43-14	학	420.2	420.2		인천도시공사						
194	도화동	43-15	학	1047.6	1047.6		인천도시공사						
195	도화동	43-16	학	133.5	133.5		인천도시공사						
196	도화동	43-17	학	313.3	313.3		인천도시공사						
197	도화동	43-18	학	211.4	211.4		인천도시공사						
198	도화동	43-19	학	270.4	270.4		인천도시공사						
199	도화동	43-20	학	4059.0	4059.0		인천도시공사						
200	도화동	43-21	학	1623.9	1623.9		인천도시공사						
201	도화동	43-22	학	3267.5	3267.5		인천도시공사						
202	도화동	43-23	학	1079.6	1079.6		인천도시공사						
203	도화동	43-24	학	9529.1	9529.1		인천도시공사						
204	도화동	43-25	학	370.9	370.9		인천도시공사						
205	도화동	43-26	학	989.9	989.9		인천도시공사						
206	도화동	43-27	학	96.7	96.7		인천도시공사						
207	도화동	44-1	대	199.4	199.4		인천도시공사/인천광역시						
208	도화동	44-2	대	278.2	278.2		인천도시공사						

인 권 광 역 시 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역면적(㎡)	면적면적(㎡)	소유지									
						기본	선명	주소	선명	주소	관계인	권리구분	비고		
209	도화동	44-3	대	241.8	241.8			인천도시공사							
210	도화동	44-4	대	186.4	186.4			인천도시공사							
211	도화동	44-5	대	28.9	28.9			인천도시공사							
212	도화동	44-6	도	31.5	31.5			인천광역시							
213	도화동	44-7	도	105.4	105.4			인천도시공사							
214	도화동	44-8	대	187.4	187.4			인천도시공사							
215	도화동	44-9	대	73.5	73.5			인천도시공사							
216	도화동	44-11	대	105.5	105.5			인천도시공사							
217	도화동	44-12	대	78.0	78.0			인천도시공사							
218	도화동	44-13	대	59.4	59.4			인천도시공사							
219	도화동	44-14	대	27.5	27.5			인천도시공사							
220	도화동	44-18	도	8.9	8.9			인천광역시							
221	도화동	45-1	대	1024.8	1024.8			인천도시공사							
222	도화동	45-2	대	122.4	122.4			인천도시공사							
223	도화동	45-3	대	51.9	51.9			인천도시공사							
224	도화동	45-4	대	125.6	125.6			인천도시공사							
225	도화동	45-5	대	115.0	115.0			인천도시공사							
226	도화동	45-6	대	146.7	146.7			인천도시공사							
227	도화동	45-7	대	256.9	256.9			인천도시공사							
228	도화동	45-8	대	80.4	80.4			인천도시공사							
229	도화동	45-9	대	280.0	280.0			인천도시공사							
230	도화동	45-10	대	87.9	87.9			인천도시공사							
231	도화동	45-11	대	89.6	89.6			인천도시공사							
232	도화동	45-12	대	56.5	56.5			인천도시공사							
233	도화동	45-13	대	35.5	35.5			인천도시공사							
234	도화동	45-14	대	75.1	75.1			인천도시공사							
235	도화동	45-15	대	70.2	70.2			인천도시공사							
236	도화동	45-16	대	33.2	33.2			인천도시공사							
237	도화동	45-17	대	41.2	41.2			인천도시공사							
238	도화동	45-18	대	60.7	60.7			인천도시공사							
239	도화동	45-19	도	51.1	51.1			인천광역시							
240	도화동	45-20	대	95.9	95.9			인천도시공사							
241	도화동	45-21	대	70.9	70.9			인천도시공사							
242	도화동	45-22	대	93.2	93.2			인천도시공사							
243	도화동	45-23	대	116.3	116.3			인천도시공사							
244	도화동	45-24	대	97.5	97.5			인천도시공사							
245	도화동	45-25	도	34.1	34.1			인천광역시							
246	도화동	45-26	대	29.7	29.7			인천도시공사							
247	도화동	45-27	대	65.5	65.5			인천도시공사							
248	도화동	45-29	대	124.6	124.6			인천도시공사							
249	도화동	45-30	대	125.6	125.6			인천도시공사							
250	도화동	45-31	대	129.3	129.3			인천도시공사							
251	도화동	45-33	대	76.2	76.2			인천도시공사							
252	도화동	45-34	대	122.6	122.6			인천도시공사							
253	도화동	45-35	대	145.2	145.2			인천도시공사							
254	도화동	45-36	대	219.2	219.2			인천도시공사							
255	도화동	45-37	대	84.8	84.8			인천도시공사							
256	도화동	45-38	대	54.7	54.7			인천도시공사							
257	도화동	46-1	대	126.0	126.0			인천도시공사							
258	도화동	46-2	대	101.7	101.7			인천도시공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역면적(㎡)	면적면적(㎡)	지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289	도화동	48-3	대	128.2	128.2		인원도시공사				
290	도화동	48-4	대	114.9	114.9		인원도시공사				
291	도화동	48-5	대	125.6	125.6		인원도시공사				
292	도화동	48-6	대	120.4	120.4		인원도시공사				
293	도화동	48-7	대	105.0	105.0		인원도시공사				
294	도화동	48-8	대	105.0	105.0		인원도시공사				
295	도화동	48-9	대	105.0	105.0		인원도시공사				
296	도화동	48-10	대	120.7	120.7		인원도시공사				
297	도화동	48-11	도	106.0	106.0		인원도시공사				
298	도화동	48-12	대	109.8	109.8		인원도시공사				
299	도화동	48-13	대	85.5	85.5		인원도시공사				
270	도화동	46-14	대	95.5	95.5		인원도시공사				
271	도화동	46-15	대	118.9	118.9		인원도시공사				
272	도화동	46-16	대	86.1	86.1		인원도시공사				
273	도화동	46-17	대	111.0	111.0		인원도시공사				
274	도화동	46-18	대	161.9	161.9		인원도시공사				
275	도화동	46-19	대	129.9	129.9		인원도시공사				
276	도화동	46-20	대	130.0	130.0		인원도시공사				
277	도화동	46-21	대	143.2	143.2		인원도시공사				
278	도화동	47-1	대	236.2	236.2		인원도시공사				
279	도화동	47-2	대	72.1	72.1		인원도시공사				
280	도화동	47-3	대	331.4	331.4		인원도시공사				
281	도화동	47-4	학	173.4	173.4		인원도시공사				
282	도화동	47-5	도	141.1	141.1		인원도시공사				
283	도화동	47-7	대	488.6	488.6		인원도시공사				
284	도화동	47-9	대	83.6	83.6		인원도시공사				
285	도화동	47-10	대	65.5	65.5		인원도시공사				
286	도화동	47-11	대	105.9	105.9		인원도시공사				
287	도화동	47-12	대	81.4	81.4		인원도시공사				
288	도화동	47-13	대	100.2	100.2		인원도시공사				
289	도화동	47-14	대	59.2	59.2		인원도시공사				
290	도화동	47-15	대	75.0	75.0		인원도시공사				
291	도화동	47-16	대	190.9	190.9		인원도시공사				
292	도화동	47-17	도	220.4	220.4		인원도시공사				
293	도화동	47-18	대	101.7	101.7		인원도시공사				
294	도화동	47-19	대	177.4	177.4		인원도시공사				
295	도화동	47-20	대	130.0	130.0		인원도시공사				
296	도화동	47-21	대	286.3	286.3		인원도시공사				
297	도화동	47-22	대	72.6	72.6		인원도시공사				
298	도화동	47-23	대	80.9	80.9		인원도시공사				
299	도화동	47-24	대	116.9	116.9		인원도시공사				
300	도화동	47-25	대	67.1	67.1		인원도시공사				
301	도화동	47-26	대	106.6	106.6		인원도시공사				
302	도화동	47-28	대	171.1	171.1		인원도시공사				
303	도화동	47-29	도	287.9	287.9		인원도시공사				
304	도화동	47-30	학	1893.8	1893.8		인원도시공사				
305	도화동	47-33	대	218.6	218.6		인원도시공사				
306	도화동	47-34	대	145.8	145.8		인원도시공사				
307	도화동	47-36	대	89.7	89.7		인원도시공사				
308	도화동	48-1	학	7756.3	7756.3		인원도시공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역면적(㎡)	편입면적(㎡)	소재지		관계인			비고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구분
309	도화동	49-1	학	1901.0	1901.0		인원도시공사					
310	도화동	49-2	학	420.0	420.0		인원도시공사					
311	도화동	49-3	학	1125.9	1125.9		인원도시공사					
312	도화동	49-4	학	5188.2	5188.2		인원도시공사					
313	도화동	49-5	학	514.7	514.7		인원도시공사					
314	도화동	49-6	학	280.2	280.2		인원도시공사					
315	도화동	49-7	학	1886.1	1886.1		인원도시공사					
316	도화동	49-8	학	1078.0	1078.0		인원도시공사					
317	도화동	59-1	대	422.0	422.0		인원도시공사					
318	도화동	59-2	대	202.7	202.7		인원도시공사					
319	도화동	59-3	대	880.1	880.1		인원도시공사					
320	도화동	59-4	대	216.4	216.4		인원도시공사					
321	도화동	59-5	도	75.6	75.6		인원광역시					
322	도화동	59-6	대	195.9	195.9		인원도시공사					
323	도화동	59-7	대	199.3	199.3		인원도시공사					
324	도화동	59-8	대	148.4	148.4		인원도시공사					
325	도화동	59-9	대	186.2	186.2		인원도시공사					
326	도화동	59-10	대	170.3	170.3		인원도시공사					
327	도화동	59-11	도	120.5	120.5		인원광역시					
328	도화동	59-12	대	171.3	171.3		인원도시공사					
329	도화동	59-13	대	806.8	806.8		인원도시공사					
330	도화동	59-14	대	221.0	221.0		인원도시공사					
331	도화동	59-15	대	96.6	96.6		인원도시공사					
332	도화동	60-1	대	1718.6	1718.6		인원도시공사					
333	도화동	60-2	대	114.1	114.1		인원도시공사					
334	도화동	60-3	대	209.7	209.7		인원도시공사					
335	도화동	60-4	대	155.7	155.7		인원도시공사					
336	도화동	60-5	대	149.0	149.0		인원도시공사					
337	도화동	60-6	대	198.1	198.1		인원도시공사					
338	도화동	60-7	대	173.5	173.5		인원도시공사					
339	도화동	60-8	대	380.9	380.9		인원도시공사					
340	도화동	60-9	대	158.2	158.2		인원도시공사					
341	도화동	60-11	도	209.3	209.3		인원도시공사					
342	도화동	60-12	차	872.8	872.8		인원도시공사					
343	도화동	61-1	대	183.7	183.7		인원도시공사/인원광역시/인원광역시남구					
344	도화동	61-2	도	227.1	227.1		인원광역시					
345	도화동	61-3	대	223.4	223.4		인원도시공사					
346	도화동	61-4	대	237.5	237.5		인원도시공사					
347	도화동	61-5	대	152.7	152.7		인원도시공사					
348	도화동	61-6	대	147.2	147.2		인원도시공사					
349	도화동	61-7	대	141.8	141.8		인원도시공사					
350	도화동	61-8	대	135.2	135.2		인원도시공사					
351	도화동	61-9	대	148.9	148.9		인원도시공사					
352	도화동	61-10	대	156.1	156.1		인원도시공사					
353	도화동	61-11	대	292.4	292.4		인원도시공사					
354	도화동	61-12	대	292.6	292.6		인원도시공사					
355	도화동	61-13	대	360.0	360.0		인원도시공사					
356	도화동	61-14	대	308.1	308.1		인원도시공사					
357	도화동	61-15	대	314.2	314.2		인원도시공사					
358	도화동	61-18	도	51.3	51.3		인원광역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별입면적(㎡)	지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주소	성명	주소	
389	도화동	61-19	대	205.6	205.6		인원도시공사					
390	도화동	61-20	대	978.5	978.5		인원도시공사					
391	도화동	61-21	대	180.6	180.6		인원도시공사					
392	도화동	61-22	도	16.6	16.6		인원도시공사					
393	도화동	62-1	대	103.8	103.8		인원도시공사					
394	도화동	62-2	대	94.5	94.5		인원도시공사					
395	도화동	62-3	대	15.4	15.4		인원도시공사					
396	도화동	62-4	대	626.3	626.3		인원도시공사					
397	도화동	62-5	도	114.6	114.6		인원도시공사					
398	도화동	62-6	대	184.8	184.8		인원도시공사					
399	도화동	62-7	대	207.3	207.3		인원도시공사					
370	도화동	62-9	대	162.5	162.5		인원도시공사					
371	도화동	62-10	대	184.7	184.7		인원도시공사					
372	도화동	62-11	대	546.6	546.6		인원도시공사					
373	도화동	62-12	대	207.7	207.7		인원도시공사					
374	도화동	62-13	대	266.6	266.6		인원도시공사					
375	도화동	62-14	대	143.3	143.3		인원도시공사					
376	도화동	62-15	대	576.1	576.1		인원도시공사					
377	도화동	62-16	대	280.7	280.7		인원도시공사					
378	도화동	62-17	대	1042.9	1042.9		인원도시공사					
379	도화동	62-18	대	394.2	394.2		인원도시공사					
380	도화동	63-1	대	481.8	481.8		인원도시공사					
381	도화동	63-2	대	603.9	603.9		인원도시공사					
382	도화동	63-3	대	328.1	328.1		인원도시공사					
383	도화동	63-4	대	131.8	131.8		인원도시공사					
384	도화동	63-5	대	176.3	176.3		인원도시공사					
385	도화동	63-6	도	57.6	57.6		인원광역시					
386	도화동	63-7	대	102.3	102.3		인원도시공사					
387	도화동	63-8	대	163.7	163.7		인원도시공사					
388	도화동	63-9	대	159.8	159.8		인원도시공사					
389	도화동	63-10	대	205.0	205.0		인원도시공사					
380	도화동	63-11	대	173.6	173.6		인원도시공사					
391	도화동	63-12	대	75.7	75.7		인원도시공사					
382	도화동	63-13	대	190.6	190.6		인원도시공사					
393	도화동	63-15	대	641.6	641.6		인원도시공사					
394	도화동	63-16	대	622.2	622.2		인원도시공사					
395	도화동	63-17	대	303.0	303.0		인원도시공사					
396	도화동	63-18	대	407.4	407.4		인원도시공사					
397	도화동	64-1	현	2420.5	2420.5		인원도시공사					
398	도화동	64-2	대	74.1	74.1		인원도시공사					
399	도화동	64-3	대	108.8	108.8		인원도시공사					
400	도화동	64-4	대	108.8	108.8		인원도시공사					
401	도화동	64-5	대	485.1	485.1		인원도시공사					
402	도화동	64-6	도	149.6	149.6		인원도시공사					
403	도화동	64-7	대	1640.7	1640.7		인원도시공사					
404	도화동	65	대	119.3	119.3		인원도시공사					
405	도화동	66-1	대	248.4	248.4		인원도시공사					
406	도화동	66-2	대	148.8	148.8		인원도시공사					
407	도화동	66-4	대	63.2	63.2		인원도시공사					
408	도화동	66-5	대	169.3	169.3		인원도시공사					
409	도화동	66-6	대	124.6	124.6		인원도시공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법정면적(㎡)	지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410	도화동	66-8	도	116.7	116.7		인천도시공사				
411	도화동	66-9	대	81.1	81.1		인천도시공사				
412	도화동	66-10	대	105.2	105.2		인천도시공사				
413	도화동	66-11	대	56.7	56.7		인천도시공사				
414	도화동	66-12	대	116.2	116.2		인천도시공사				
415	도화동	66-13	대	91.9	91.9		인천도시공사				
416	도화동	66-14	대	1078.5	1078.5		인천도시공사				
417	도화동	66-15	대	76.9	76.9		인천도시공사				
418	도화동	67-1	대	106.8	106.8		인천도시공사				
419	도화동	67-2	대	810.8	810.8		인천도시공사				
420	도화동	67-3	대	288.7	288.7		인천도시공사				
421	도화동	67-4	대	285.5	285.5		인천도시공사				
422	도화동	67-5	대	263.7	263.7		인천도시공사				
423	도화동	67-6	대	316.3	316.3		인천도시공사				
424	도화동	67-7	대	267.2	267.2		인천도시공사				
425	도화동	67-8	대	5092.5	5092.5		인천도시공사				
426	도화동	67-9	대	1251.5	1251.5		인천도시공사				
427	도화동	67-10	대	1111.3	1111.3		인천도시공사				
428	도화동	67-11	대	304.7	304.7		인천도시공사				
429	도화동	67-12	대	1717.5	1717.5		인천도시공사				
430	도화동	67-13	대	494.9	494.9		인천도시공사				
431	도화동	67-15	대	332.1	332.1		인천도시공사				
432	도화동	67-16	대	179.9	179.9		인천도시공사				
433	도화동	67-17	대	293.9	293.9		인천도시공사				
434	도화동	67-18	도	105.0	105.0		인천도시공사				
435	도화동	70	대	141.5	141.5		인천도시공사				
436	도화동	71-1	대	166.9	166.9		인천도시공사				
437	도화동	71-2	대	163.2	163.2		인천도시공사				
438	도화동	71-3	도	66.4	66.4		인천광역시				
439	도화동	71-4	대	48.8	48.8		인천도시공사				
440	도화동	71-5	대	93.5	93.5		인천도시공사				
441	도화동	71-6	대	270.1	270.1		인천도시공사				
442	도화동	71-7	대	289.1	289.1		인천도시공사				
443	도화동	71-8	도	46.6	46.6		인천광역시				
444	도화동	71-9	대	100.1	100.1		인천도시공사				
445	도화동	71-10	대	286.7	286.7		인천도시공사				
446	도화동	71-11	대	153.8	153.8		인천도시공사				
447	도화동	71-12	대	265.2	265.2		인천도시공사				
448	도화동	71-13	대	36.1	36.1		인천도시공사				
449	도화동	71-14	대	55.0	55.0		인천도시공사				
450	도화동	71-15	대	73.5	73.5		인천도시공사				
451	도화동	71-16	대	25.4	25.4		인천도시공사				
452	도화동	71-17	도	29.2	29.2		인천광역시				
453	도화동	71-18	대	28.4	28.4		인천도시공사				
454	도화동	71-19	대	67.4	67.4		인천도시공사				
455	도화동	71-20	대	145.9	145.9		인천도시공사				
456	도화동	71-21	대	236.5	236.5		인천도시공사				
457	도화동	71-22	대	236.5	236.5		인천도시공사				
458	도화동	71-23	대	63.7	63.7		인천도시공사				
459	도화동	71-24	대	13.6	13.6		인천도시공사				
460	도화동	71-25	대	120.8	120.8		인천도시공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면적(㎡)	지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구분
461	도화동	71-26	대	133.8	133.8		인천도시공사							
462	도화동	71-27	도	39.4	39.4		인천도시공사							
463	도화동	71-28	대	132.0	132.0		인천도시공사							
464	도화동	71-29	대	134.0	134.0		인천도시공사							
465	도화동	71-30	대	91.0	91.0		인천도시공사							
466	도화동	71-31	대	164.9	164.9		인천도시공사							
467	도화동	71-32	대	201.3	201.3		인천도시공사							
468	도화동	71-33	대	172.7	172.7		인천도시공사							
469	도화동	71-34	대	141.0	141.0		인천도시공사							
470	도화동	71-35	대	15.7	15.7		인천도시공사							
471	도화동	71-36	대	91.0	91.0		인천도시공사							
472	도화동	72-1	대	273.3	273.3		인천도시공사							
473	도화동	72-2	대	187.8	187.8		인천도시공사							
474	도화동	72-4	대	164.4	164.4		인천도시공사							
475	도화동	72-5	대	107.9	107.9		인천도시공사							
476	도화동	72-6	대	257.8	257.8		인천도시공사							
477	도화동	72-7	도	164.7	164.7		인천광역시							
478	도화동	72-8	대	183.8	183.8		인천도시공사							
479	도화동	72-9	대	198.7	198.7		인천도시공사							
480	도화동	72-10	대	192.8	192.8		인천도시공사							
481	도화동	72-11	대	190.8	190.8		인천도시공사							
482	도화동	72-12	대	198.6	198.6		인천도시공사							
483	도화동	72-13	대	198.3	198.3		인천도시공사							
484	도화동	72-14	대	203.6	203.6		인천도시공사							
485	도화동	72-15	대	216.4	216.4		인천도시공사							
486	도화동	72-17	대	142.0	142.0		인천도시공사							
487	도화동	72-18	도	12.2	12.2		인천도시공사							
488	도화동	72-19	도	11.9	11.9		인천도시공사							
489	도화동	72-20	대	145.7	145.7		인천도시공사							
490	도화동	72-21	대	543.2	543.2		인천도시공사							
491	도화동	73-1	대	242.9	242.9		인천도시공사							
492	도화동	73-2	대	157.2	157.2		인천도시공사							
493	도화동	73-3	대	187.2	187.2		인천도시공사							
494	도화동	73-4	대	105.5	105.5		인천도시공사							
495	도화동	73-5	대	187.4	187.4		인천도시공사							
496	도화동	73-6	대	231.9	231.9		인천도시공사							
497	도화동	73-7	도	489.1	489.1		인천광역시							
498	도화동	73-8	대	243.0	243.0		인천도시공사							
499	도화동	73-9	대	158.8	158.8		인천도시공사							
500	도화동	73-10	대	200.9	200.9		인천도시공사							
501	도화동	73-11	대	200.9	200.9		인천도시공사							
502	도화동	73-12	대	199.5	199.5		인천도시공사							
503	도화동	73-13	대	199.4	199.4		인천도시공사							
504	도화동	73-15	대	196.5	196.5		인천도시공사							
505	도화동	73-16	대	195.6	195.6		인천도시공사							
506	도화동	73-17	대	382.9	382.9		인천도시공사							
507	도화동	73-18	대	185.2	185.2		인천도시공사							
508	도화동	73-19	대	185.1	185.1		인천도시공사							
509	도화동	73-20	대	179.0	179.0		인천도시공사							
510	도화동	73-21	대	232.5	232.5		인천도시공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역면적(㎡)	번입면적(㎡)	지분	소유지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구분	
511	도화동	73-22	대	325.5	325.5		인권도시공사					
512	도화동	73-23	대	317.4	317.4		인권도시공사					
513	도화동	73-24	대	292.5	292.5		인권도시공사					
514	도화동	73-25	대	275.4	275.4		인권도시공사					
515	도화동	74-1	대	139.7	139.7		인권도시공사					
516	도화동	74-2	대	147.5	147.5		인권도시공사					
517	도화동	74-3	대	277.3	277.3		인권도시공사					
518	도화동	74-4	대	290.9	290.9		인권도시공사					
519	도화동	74-5	대	187.6	187.6		인권도시공사					
520	도화동	74-6	대	181.0	181.0		인권도시공사					
521	도화동	74-7	도	37.9	37.9		인권광역시					
522	도화동	74-8	대	181.5	181.5		인권도시공사					
523	도화동	74-9	대	193.8	193.8		인권도시공사					
524	도화동	74-10	대	459.8	459.8		인권도시공사					
525	도화동	74-11	대	228.5	228.5		인권도시공사					
526	도화동	74-12	대	196.8	196.8		인권도시공사					
527	도화동	74-13	대	179.7	179.7		인권도시공사					
528	도화동	74-14	도	37.0	37.0		인권광역시					
529	도화동	74-15	대	176.4	176.4		인권도시공사					
530	도화동	74-16	대	194.1	194.1		인권도시공사					
531	도화동	74-17	대	211.0	211.0		인권도시공사					
532	도화동	74-18	대	341.1	341.1		인권도시공사					
533	도화동	74-19	대	212.5	212.5		인권도시공사					
534	도화동	74-21	대	210.6	210.6		인권도시공사					
535	도화동	74-22	대	187.2	187.2		인권도시공사					
536	도화동	74-24	대	194.9	194.9		인권도시공사					
537	도화동	74-25	도	52.0	52.0		인권광역시					
538	도화동	74-26	대	181.7	181.7		인권도시공사					
539	도화동	74-28	대	208.3	208.3		인권도시공사					
540	도화동	74-29	대	190.1	190.1		인권도시공사					
541	도화동	74-31	대	208.5	208.5		인권도시공사					
542	도화동	74-32	대	128.9	128.9		인권도시공사					
543	도화동	74-33	대	285.6	285.6		인권도시공사					
544	도화동	75-2	도	336.7	336.7		인권광역시					
545	도화동	75-3	도	88.4	88.4		인권광역시					
546	도화동	75-4	대	115.7	115.7		인권도시공사					
547	도화동	75-5	대	241.1	241.1		인권도시공사					
548	도화동	75-6	대	322.0	322.0		인권도시공사					
549	도화동	75-7	대	223.3	223.3		인권도시공사					
550	도화동	75-8	대	138.7	138.7		인권도시공사					
551	도화동	75-10	대	106.4	106.4		인권도시공사					
552	도화동	75-11	도	48.4	48.4		인권광역시					
553	도화동	75-12	대	96.8	96.8		인권도시공사					
554	도화동	75-13	대	41.8	41.8		인권도시공사					
555	도화동	75-14	대	221.7	221.7		인권도시공사					
556	도화동	75-16	대	182.8	182.8		인권도시공사					
557	도화동	75-17	대	137.8	137.8		인권도시공사					
558	도화동	75-18	대	169.1	169.1		인권도시공사					
559	도화동	75-19	대	161.6	161.6		인권도시공사					
560	도화동	75-20	대	154.5	154.5		인권도시공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면적면적(㎡)	지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551	도화동	75-21	대	126.1	126.1		인원도시공사				
552	도화동	75-22	대	152.7	152.7		인원도시공사				
553	도화동	75-23	대	171.2	171.2		인원도시공사				
554	도화동	75-24	대	95.1	95.1		인원도시공사				
555	도화동	75-25	도	139.8	139.8		인원광역시				
556	도화동	75-26	대	130.9	130.9		인원도시공사				
557	도화동	75-27	대	153.6	153.6		인원도시공사				
558	도화동	75-28	대	155.2	155.2		인원도시공사				
559	도화동	75-29	대	151.1	151.1		인원도시공사				
570	도화동	75-30	대	153.4	153.4		인원도시공사				
571	도화동	75-31	대	153.2	153.2		인원도시공사				
572	도화동	75-32	도	166.5	166.5		인원광역시				
573	도화동	75-33	대	197.7	197.7		인원도시공사				
574	도화동	75-34	대	157.1	157.1		인원도시공사				
575	도화동	75-35	대	146.8	146.8		인원도시공사				
576	도화동	75-36	대	182.2	182.2		인원도시공사				
577	도화동	75-37	대	176.8	176.8		인원도시공사				
578	도화동	75-38	대	151.6	151.6		인원도시공사				
579	도화동	75-39	대	190.0	190.0		인원도시공사				
580	도화동	75-40	대	1447.8	1447.8		인원도시공사				
581	도화동	75-41	도	138.2	138.2		인원광역시				
582	도화동	75-42	대	244.2	244.2		인원도시공사				
583	도화동	75-43	대	167.3	167.3		인원도시공사				
584	도화동	75-44	대	226.1	226.1		인원도시공사				
585	도화동	75-45	대	212.9	212.9		인원도시공사				
586	도화동	75-46	대	149.4	149.4		인원도시공사				
587	도화동	75-47	대	188.2	188.2		인원도시공사				
588	도화동	75-48	대	193.0	193.0		인원도시공사				
589	도화동	76-1	대	209.0	209.0		인원도시공사				
590	도화동	76-2	대	433.3	433.3		인원도시공사				
591	도화동	76-3	대	79.9	79.9		인원도시공사				
592	도화동	76-4	대	1247.5	1247.5		인원도시공사				
593	도화동	76-5	대	146.2	146.2		인원도시공사				
594	도화동	76-6	대	166.7	166.7		인원도시공사				
595	도화동	76-7	대	306.6	306.6		인원도시공사				
596	도화동	76-8	대	170.9	170.9		인원도시공사				
597	도화동	76-9	대	587.2	587.2		인원도시공사				
598	도화동	76-10	대	208.8	208.8		인원도시공사				
599	도화동	76-11	대	98.0	98.0		인원도시공사				
600	도화동	76-14	대	2315.0	2315.0		인원도시공사				
601	도화동	76-15	대	272.1	272.1		인원도시공사				
602	도화동	76-16	대	244.3	244.3		인원도시공사				
603	도화동	76-17	대	121.8	121.8		인원도시공사				
604	도화동	76-18	대	152.7	152.7		인원도시공사				
605	도화동	76-19	차	826.7	826.7		인원도시공사				
606	도화동	76-20	대	165.2	165.2		인원도시공사				
607	도화동	76-21	도	43.8	43.8		인원도시공사				
608	도화동	76-22	대	305.3	305.3		인원도시공사				
609	도화동	76-23	대	16.0	16.0		인원도시공사				
610	도화동	77-1	획	32.7	32.7		인원도시공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역면적(㎡)	면적면적(㎡)	지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611	도화동	77-2	도	228.3	228.3		인전광역시				
612	도화동	77-3	대	119.8	119.8		인전도시공사				
613	도화동	77-4	황	240.9	240.9		인전도시공사				
614	도화동	77-5	대	281.0	281.0		인전도시공사				
615	도화동	77-7	대	150.9	150.9		인전도시공사				
616	도화동	77-8	대	140.2	140.2		인전도시공사				
617	도화동	77-9	대	422.6	422.6		인전도시공사				
618	도화동	77-11	대	214.8	214.8		인전도시공사				
619	도화동	78-1	대	117.1	117.1		인전도시공사				
620	도화동	78-2	대	64.3	64.3		인전도시공사				
621	도화동	78-3	대	272.8	272.8		인전도시공사				
622	도화동	78-4	도	27.2	27.2		인전광역시				
623	도화동	78-5	대	157.8	157.8		인전도시공사				
624	도화동	78-6	대	113.7	113.7		인전도시공사				
625	도화동	78-7	대	120.5	120.5		인전도시공사				
626	도화동	78-8	대	127.5	127.5		인전도시공사				
627	도화동	78-9	대	420.1	420.1		인전도시공사				
628	도화동	78-10	황	1718.2	1718.2		인전도시공사				
629	도화동	78-11	대	102.4	102.4		인전도시공사				
630	도화동	110-1	황	754.0	754.0		인전도시공사				
631	도화동	110-3	전	69.0	69.0		인전도시공사				
632	도화동	110-4	황	383.0	383.0		인전도시공사				
633	도화동	110-5	대	436.0	436.0		인전도시공사				
634	도화동	110-7	대	60.0	60.0		인전도시공사				
635	도화동	110-8	대	46.0	46.0		인전도시공사				
636	도화동	110-9	황	482.0	482.0		인전도시공사				
637	도화동	110-10	대	8.0	8.0		인전도시공사				
638	도화동	110-11	전	36.0	36.0		인전도시공사				
639	도화동	110-12	전	19.0	19.0		인전도시공사				
640	도화동	110-14	경	76.0	76.0		인전도시공사				
641	도화동	110-15	도	161.0	161.0		인전광역시				
642	도화동	110-16	황	23.0	23.0		인전도시공사				
643	도화동	110-17	도	10.0	10.0		인전광역시				
644	도화동	110-18	도	31.0	31.0		인전광역시				
645	도화동	110-19	대	98.0	98.0		인전도시공사				
646	도화동	110-21	대	102.0	102.0		인전도시공사				
647	도화동	110-22	도	20.0	20.0		인전광역시남구				
648	도화동	110-23	대	44.0	44.0		인전도시공사				
649	도화동	110-24	대	1.0	1.0		인전도시공사				
650	도화동	110-25	대	26.0	26.0		인전도시공사				
651	도화동	110-26	대	15.0	15.0		인전도시공사				
652	도화동	110-27	도	37.0	37.0		인전광역시남구				
653	도화동	110-28	도	1.0	1.0		인전광역시남구				
654	도화동	110-29	도	26.0	26.0		인전광역시남구				
655	도화동	110-30	도	31.0	31.0		인전광역시남구				
656	도화동	110-31	황	1.0	1.0		인전도시공사				
657	도화동	110-32	황	1.0	1.0		인전도시공사				
658	도화동	110-33	도	25.0	25.0		인전광역시남구				
659	도화동	110-34	도	18.0	18.0		인전광역시남구				
660	도화동	110-35	도	25.0	25.0		인전광역시남구				
661	도화동	110-36	대	3.0	3.0		인전도시공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면적면적(㎡)	지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면적면적(㎡)	지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면적면적(㎡)	지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면적면적(㎡)	비고	
662	도화동	110-37	도	112.0	112.0																	
663	도화동	110-38	학	37.0	37.0																	
664	도화동	111-2	대	57.0	57.0																	
665	도화동	111-4	강	137.0	137.0																	
666	도화동	111-5	대	106.0	106.0																	
667	도화동	111-6	대	139.0	139.0																	
668	도화동	111-7	대	56.0	56.0																	
669	도화동	111-8	대	165.0	165.0																	
670	도화동	111-9	학	898.0	898.0																	
671	도화동	111-10	대	26.0	26.0																	
672	도화동	111-12	대	10.0	10.0																	
673	도화동	111-14	대	50.0	50.0																	
674	도화동	111-16	대	83.0	83.0																	
675	도화동	111-17	대	92.0	92.0																	
676	도화동	111-18	대	116.0	116.0																	
677	도화동	111-19	학	298.0	298.0																	
678	도화동	111-20	대	26.0	26.0																	
679	도화동	111-21	대	302.0	302.0																	
680	도화동	111-22	대	226.0	226.0																	
681	도화동	111-23	대	76.0	76.0																	
682	도화동	111-24	대	126.0	126.0																	
683	도화동	111-25	학	82.0	82.0																	
684	도화동	111-26	대	9.0	9.0																	
685	도화동	111-27	전	75.0	75.0																	
686	도화동	111-28	대	101.0	101.0																	
687	도화동	111-29	전	10.0	10.0																	
688	도화동	111-30	대	26.0	26.0																	
689	도화동	111-31	대	76.0	76.0																	
690	도화동	111-32	대	20.0	20.0																	
691	도화동	111-35	대	96.0	96.0																	
692	도화동	111-37	대	426.0	426.0																	
693	도화동	111-40	대	75.0	75.0																	
694	도화동	111-41	대	69.0	69.0																	
695	도화동	111-42	대	76.0	76.0																	
696	도화동	111-43	대	188.0	188.0																	
697	도화동	111-44	학	132.0	132.0																	
698	도화동	111-45	대	109.0	109.0																	
699	도화동	111-46	도	60.0	60.0																	
700	도화동	111-47	도	225.0	225.0																	
701	도화동	111-48	학	63.0	63.0																	
702	도화동	111-49	도	112.0	112.0																	
703	도화동	111-50	도	18.0	18.0																	
704	도화동	111-51	대	58.0	58.0																	
705	도화동	111-52	대	31.0	31.0																	
706	도화동	111-53	대	34.0	34.0																	
707	도화동	111-54	대	40.0	40.0																	
708	도화동	111-55	대	36.0	36.0																	
709	도화동	111-56	도	66.0	66.0																	
710	도화동	111-57	대	10.0	10.0																	
711	도화동	111-58	대	40.0	40.0																	
712	도화동	111-59	도	49.0	49.0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역면적 (㎡)	면적면적 (㎡)	지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713	도화동	111-60	학	4.0	4.0		인원도시공사				
714	도화동	111-61	도	22.0	22.0		인천광역시남구				
715	도화동	111-62	도	69.0	69.0		인천광역시남구				
716	도화동	111-63	대	4.0	4.0		인천도시공사				
717	도화동	111-64	도	63.0	63.0		인천광역시남구				
718	도화동	111-65	대	2.0	2.0		인천도시공사				
719	도화동	111-66	도	164.0	164.0		인천광역시남구				
720	도화동	111-67	대	76.0	76.0		인천도시공사				
721	도화동	111-68	도	55.0	55.0		인천광역시남구				
722	도화동	111-69	학	2.0	2.0		인천도시공사				
723	도화동	111-70	도	31.0	31.0		인천광역시남구				
724	도화동	111-71	전	1.0	1.0		인천도시공사				
725	도화동	111-72	도	8.0	8.0		인천광역시남구				
726	도화동	112	대	20.0	20.0		인천도시공사				
727	도화동	112-1	대	46.0	46.0		인천도시공사				
728	도화동	112-3	대	89.0	89.0		인천도시공사				
729	도화동	112-4	학	248.0	248.0		인천도시공사				
730	도화동	112-6	대	377.0	377.0		인천도시공사				
731	도화동	112-7	대	128.0	128.0		인천도시공사				
732	도화동	112-8	대	29.0	29.0		인천도시공사				
733	도화동	112-9	대	482.0	482.0		인천도시공사				
734	도화동	112-10	학	410.0	410.0		인천도시공사				
735	도화동	112-11	대	182.0	182.0		인천도시공사				
736	도화동	112-12	대	180.0	180.0		인천도시공사				
737	도화동	112-15	대	40.0	40.0		인천도시공사				
738	도화동	112-16	대	221.0	221.0		인천도시공사				
739	도화동	112-17	대	139.0	139.0		인천도시공사				
740	도화동	112-19	학	4422.0	4422.0		인천도시공사				
741	도화동	112-22	대	76.0	76.0		인천도시공사				
742	도화동	112-24	대	135.0	135.0		인천도시공사				
743	도화동	112-25	대	215.0	215.0		인천도시공사				
744	도화동	112-26	대	205.0	205.0		인천도시공사				
745	도화동	112-27	대	172.0	172.0		인천도시공사				
746	도화동	112-28	대	106.0	106.0		인천도시공사				
747	도화동	112-29	대	119.0	119.0		인천도시공사				
748	도화동	112-30	대	106.0	106.0		인천도시공사				
749	도화동	112-31	대	112.0	112.0		인천도시공사				
750	도화동	112-32	대	92.0	92.0		인천도시공사				
751	도화동	112-34	대	142.0	142.0		인천도시공사				
752	도화동	112-35	대	159.0	159.0		인천도시공사				
753	도화동	112-36	대	79.0	79.0		인천도시공사				
754	도화동	112-37	대	132.0	132.0		인천도시공사				
755	도화동	112-39	대	198.0	198.0		인천도시공사				
756	도화동	112-40	대	129.0	129.0		인천도시공사				
757	도화동	112-44	대	64.0	64.0		인천도시공사				
758	도화동	112-45	대	79.0	79.0		인천도시공사				
759	도화동	112-51	학	192.0	192.0		인천도시공사				
760	도화동	112-52	대	1148.0	1148.0		인천도시공사				
761	도화동	112-59	대	76.0	76.0		인천도시공사				
762	도화동	112-62	대	142.0	142.0		인천도시공사				
763	도화동	112-63	대	23.0	23.0		인천도시공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권면적(㎡)	지분	소유지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구분	
764	도화동	112-71	대	129.0	129.0		인원도시공사					
765	도화동	112-75	대	10.0	10.0		인원도시공사					
766	도화동	112-80	대	66.0	66.0		인원도시공사					
767	도화동	112-81	대	46.0	46.0		인원도시공사					
768	도화동	112-82	대	196.0	196.0		인원도시공사					
769	도화동	112-83	확	96.0	96.0		인원도시공사					
770	도화동	112-94	대	132.0	132.0		인원도시공사					
771	도화동	112-85	확	129.0	129.0		인원도시공사					
772	도화동	112-86	대	13.0	13.0		인원도시공사					
773	도화동	112-87	대	152.0	152.0		인원도시공사					
774	도화동	112-88	확	116.0	116.0		인원도시공사					
775	도화동	112-89	대	67.0	67.0		인원도시공사					
776	도화동	112-94	대	175.0	175.0		인원도시공사					
777	도화동	112-95	대	134.0	134.0		인원도시공사					
778	도화동	112-96	대	26.0	26.0		인원도시공사					
779	도화동	112-97	대	689.0	689.0		인원도시공사					
780	도화동	112-98	대	225.0	225.0		인원도시공사					
781	도화동	112-100	대	132.0	132.0		인원도시공사					
782	도화동	112-104	확	2856.0	2856.0		인원도시공사					
783	도화동	112-118	대	76.0	76.0		인원도시공사					
784	도화동	112-120	대	259.0	259.0		인원도시공사					
785	도화동	112-121	대	17.0	17.0		인원도시공사					
786	도화동	112-122	도	27.0	27.0		인원도시공사					
787	도화동	112-123	대	23.0	23.0		인원도시공사					
788	도화동	112-124	대	1.0	1.0		인원도시공사					
789	도화동	112-125	대	101.0	101.0		인원도시공사					
790	도화동	112-126	대	17.0	17.0		인원도시공사					
791	도화동	112-127	대	85.0	85.0		인원도시공사					
792	도화동	112-128	대	54.0	54.0		인원도시공사					
793	도화동	112-129	대	26.0	26.0		인원도시공사					
794	도화동	112-130	대	109.0	109.0		인원도시공사					
795	도화동	112-131	대	109.0	109.0		인원도시공사					
796	도화동	112-132	대	109.0	109.0		인원도시공사					
797	도화동	112-133	대	29.0	29.0		인원도시공사					
798	도화동	112-134	대	41.0	41.0		인원도시공사					
799	도화동	113-1	대	106.0	106.0		인원도시공사					
800	도화동	113-3	대	155.0	155.0		인원도시공사					
801	도화동	113-5	대	119.0	119.0		인원도시공사					
802	도화동	113-6	확	11.0	11.0		인원도시공사					
803	도화동	113-7	확	7.0	7.0		인원도시공사					
804	도화동	113-8	확	178.0	178.0		인원도시공사					
805	도화동	113-10	대	146.0	146.0		인원도시공사					
806	도화동	113-11	대	707.0	707.0		인원도시공사					
807	도화동	113-12	대	132.0	132.0		인원도시공사					
808	도화동	113-13	대	60.0	60.0		인원도시공사					
809	도화동	113-14	대	76.0	76.0		인원도시공사					
810	도화동	113-15	대	92.0	92.0		인원도시공사					
811	도화동	113-16	대	46.0	46.0		인원도시공사					
812	도화동	113-17	도	66.0	66.0		인원도시공사					
813	도화동	113-18	도	60.0	60.0		인원도시공사					
814	도화동	113-19	대	22.0	22.0		인원도시공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역면적(㎡)	면적면적(㎡)	지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815	도화동	113-20	대	92.0	92.0		인원도시공사				
816	도화동	113-22	도	26.0	26.0		인원광역시남구/인원도시공사				
817	도화동	113-23	도	69.0	69.0		인원광역시남구/인원도시공사				
818	도화동	113-24	도	7.0	7.0		인원광역시				
819	도화동	113-25	도	38.0	38.0		인원광역시				
820	도화동	113-26	대	208.0	208.0		인원도시공사				
821	도화동	113-27	대	159.0	159.0		인원도시공사				
822	도화동	113-28	도	45.0	45.0		인원광역시남구				
823	도화동	113-29	도	55.0	55.0		인원광역시남구				
824	도화동	113-30	대	14.0	14.0		인원도시공사				
825	도화동	113-31	도	9.0	9.0		인원광역시남구				
826	도화동	113-32	도	72.0	72.0		인원광역시남구				
827	도화동	113-33	학	62.0	62.0		인원도시공사				
828	도화동	113-34	도	9.0	9.0		인원도시공사				
829	도화동	113-35	대	16.0	16.0		인원도시공사				
830	도화동	113-36	대	67.0	67.0		인원도시공사				
831	도화동	113-37	도	8.0	8.0		인원도시공사				
832	도화동	114-1	대	92.0	92.0		인원도시공사				
833	도화동	114-2	대	75.0	75.0		인원도시공사				
834	도화동	114-3	대	4.0	4.0		인원도시공사				
835	도화동	114-4	대	13.0	13.0		인원도시공사				
836	도화동	114-5	대	25.0	25.0		인원도시공사				
837	도화동	114-7	대	89.0	89.0		인원도시공사				
838	도화동	114-8	대	40.0	40.0		인원도시공사				
839	도화동	114-9	대	105.0	105.0		인원도시공사				
840	도화동	114-10	대	14.0	14.0		인원도시공사				
841	도화동	114-11	대	166.0	166.0		인원도시공사				
842	도화동	114-12	학	10.0	10.0		인원도시공사				
843	도화동	114-14	대	189.0	189.0		인원도시공사				
844	도화동	114-28	학	119.0	119.0		인원도시공사				
845	도화동	114-29	대	53.0	53.0		인원도시공사				
846	도화동	114-34	대	635.0	635.0		인원도시공사				
847	도화동	114-35	대	153.0	153.0		인원도시공사				
848	도화동	114-36	대	20.0	20.0		인원도시공사				
849	도화동	114-37	대	17.0	17.0		인원도시공사				
850	도화동	114-38	대	28.0	28.0		인원도시공사				
851	도화동	114-39	대	8.0	8.0		인원도시공사				
852	도화동	114-40	대	81.0	81.0		인원도시공사				
853	도화동	114-41	대	1.0	1.0		인원도시공사				
854	도화동	114-42	도	26.0	26.0		인원광역시남구				
855	도화동	114-43	대	1.0	1.0		인원도시공사				
856	도화동	117-1	대	3.0	3.0		인원도시공사				
857	도화동	117-2	대	83.0	83.0		인원도시공사				
858	도화동	117-3	대	65.0	65.0		인원도시공사				
859	도화동	117-4	대	83.0	83.0		인원도시공사				
860	도화동	117-5	대	47.0	47.0		인원도시공사				
861	도화동	117-6	도	93.0	93.0		인원광역시				
862	도화동	117-7	대	136.0	136.0		인원도시공사				
863	도화동	117-8	도	37.0	37.0		인원광역시				
864	도화동	117-9	도	85.0	85.0		인원광역시				

인 권 광 역 시 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면적면적(㎡)	지분	소유지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895	도화동	117-10	도	82.0	82.0		인원광역시				
896	도화동	117-11	도	71.0	71.0		인원광역시				
897	도화동	118-1	대	152.0	152.0		인원도시공사				
898	도화동	118-2	대	313.0	313.0		인원도시공사				
899	도화동	118-4	대	63.0	63.0		인원도시공사				
870	도화동	118-7	장	496.0	496.0		인원도시공사				
871	도화동	118-8	대	163.0	163.0		인원도시공사				
872	도화동	118-9	대	168.0	168.0		인원도시공사				
873	도화동	118-10	대	89.0	89.0		인원도시공사				
874	도화동	118-11	대	78.0	78.0		인원도시공사				
875	도화동	118-12	대	2.0	2.0		인원도시공사				
876	도화동	118-13	대	83.0	83.0		인원도시공사				
877	도화동	118-15	대	153.0	153.0		인원도시공사				
878	도화동	118-16	대	91.0	91.0		인원도시공사				
879	도화동	118-17	대	519.0	519.0		인원도시공사				
880	도화동	118-20	대	224.0	224.0		인원도시공사				
881	도화동	118-22	건	126.0	126.0		인원도시공사				
882	도화동	118-24	대	245.0	245.0		인원도시공사				
883	도화동	118-28	대	162.0	162.0		인원도시공사				
884	도화동	118-29	대	56.0	56.0		인원도시공사				
885	도화동	118-30	대	73.0	73.0		인원도시공사				
886	도화동	118-32	대	33.0	33.0		인원도시공사				
887	도화동	118-33	대	45.0	45.0		인원광역시				
888	도화동	118-35	도	2.0	2.0		인원광역시				
889	도화동	118-36	도	8.0	8.0		인원광역시				
890	도화동	118-37	도	124.0	124.0		인원도시공사/인원광역시				
891	도화동	118-38	도	12.0	12.0		인원도시공사/인원광역시				
892	도화동	118-39	대	40.0	40.0		인원도시공사				
893	도화동	118-40	대	4.0	4.0		인원도시공사				
894	도화동	118-41	대	11.0	11.0		인원도시공사				
895	도화동	118-42	대	9.0	9.0		학교법인혜전학원				
896	도화동	122-1	대	143.0	143.0		학교법인혜전학원				
897	도화동	122-8	대	31.0	31.0		학교법인혜전학원				
898	도화동	122-107	대	1.0	1.0		학교법인혜전학원				
899	도화동	122-108	대	37.0	37.0		학교법인혜전학원				
900	도화동	122-108	대	43.0	43.0		학교법인혜전학원				
901	도화동	122-15	대	114.0	114.0		학교법인혜전학원				
902	도화동	122-16	대	152.0	152.0		학교법인혜전학원				
903	도화동	122-17	대	99.0	99.0		학교법인혜전학원				
904	도화동	122-18	대	143.0	143.0		학교법인혜전학원				
905	도화동	122-109	대	49.0	49.0		학교법인혜전학원				
906	도화동	122-110	대	2234.0	2234.0		학교법인혜전학원				
907	도화동	122-111	대	7.0	7.0		학교법인혜전학원				
908	도화동	122-25	도	40.0	40.0		학교법인혜전학원				
909	도화동	122-28	도	92.0	92.0		학교법인혜전학원				
910	도화동	122-30	대	122.0	122.0		학교법인혜전학원				
911	도화동	122-31	대	294.0	294.0		학교법인혜전학원				
912	도화동	122-32	대	142.0	142.0		학교법인혜전학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법면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916	도화동	122-33	학	68.0	68.0		학교법인혜전학원				
917	도화동	122-35	대	189.0	189.0		인천도시공사				
918	도화동	122-36	대	126.0	126.0		인천도시공사				
919	도화동	122-37	학	22.0	22.0		학교법인혜전학원				
920	도화동	122-41	대	183.0	183.0		인천도시공사				
921	도화동	122-42	대	142.0	142.0		인천도시공사				
922	도화동	122-43	대	46.0	46.0		인천도시공사				
923	도화동	122-44	대	46.0	46.0		인천도시공사				
924	도화동	122-45	도	30.0	30.0		인천도시공사				
925	도화동	122-46	대	129.0	129.0		인천도시공사				
926	도화동	122-47	대	132.0	132.0		인천도시공사				
927	도화동	122-48	학	122.0	122.0		인천도시공사				
928	도화동	122-49	대	139.0	139.0		인천도시공사				
929	도화동	122-50	대	145.0	145.0		인천도시공사				
930	도화동	122-51	대	142.0	142.0		인천도시공사				
931	도화동	122-53	대	83.0	83.0		인천도시공사				
932	도화동	122-54	광	27.0	27.0		인천도시공사				
933	도화동	122-55	도	5.0	5.0		인천광역시남구				
934	도화동	122-58	도	3.0	3.0		인천도시공사				
935	도화동	122-59	대	288.0	288.0		인천도시공사				
936	도화동	122-60	도	40.0	40.0		인천도시공사				
937	도화동	122-65	도	50.0	50.0		인천광역시남구				
938	도화동	122-67	대	71.0	71.0		인천도시공사				
939	도화동	122-70	도	23.0	23.0		인천도시공사				
940	도화동	122-71	도	23.0	23.0		인천도시공사				
941	도화동	122-72	도	7.0	7.0		인천도시공사				
942	도화동	122-73	대	263.0	263.0		인천도시공사				
943	도화동	122-74	도	36.0	36.0		인천도시공사				
944	도화동	122-75	도	50.0	50.0		인천광역시남구				
945	도화동	122-76	도	46.0	46.0		인천도시공사				
946	도화동	122-77	도	36.0	36.0		인천도시공사				
947	도화동	122-78	도	36.0	36.0		인천도시공사				
948	도화동	122-79	도	26.0	26.0		인천광역시				
949	도화동	122-86	전	2.0	2.0		인천도시공사				
950	도화동	122-87	대	172.0	172.0		인천도시공사				
951	도화동	122-90	광	15.0	15.0		인천도시공사				
952	도화동	122-91	광	2.0	2.0		인천도시공사				
953	도화동	122-92	도	47.0	47.0		국(국토해양부)				
954	도화동	122-93	학	2.0	2.0		학교법인혜전학원				
955	도화동	122-94	학	1.0	1.0		학교법인혜전학원				
956	도화동	122-95	학	21.0	21.0		학교법인혜전학원				
957	도화동	122-96	학	40.0	40.0		학교법인혜전학원				
958	도화동	122-97	학	43.0	43.0		학교법인혜전학원				
959	도화동	122-98	학	36.0	36.0		학교법인혜전학원				
960	도화동	122-99	학	44.0	44.0		학교법인혜전학원				
961	도화동	122-100	광	33.0	33.0		인천도시공사				
962	도화동	122-101	도	58.0	58.0		인천광역시남구				
963	도화동	122-102	대	7.0	7.0		인천도시공사				
964	도화동	122-103	대	8.0	8.0		인천도시공사				
965	도화동	122-104	도	34.0	34.0		인천도시공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역면적 (㎡)	편입면적 (㎡)	지분	소유자		주소	성명	주소	권리구분	비고
							성명	주소					
966	도화동	122-105	학	13.0	13.0		성명						
967	도화동	122-106	대	11.0	11.0		학교법인예전학원						
968	도화동	123-1	학	79.0	79.0		인천도시공사						
969	도화동	123-5	학	70.0	70.0		인천도시공사/학교법인예전학원						
970	도화동	123-2	학	237.0	237.0		인천도시공사/학교법인예전학원						
971	도화동	123-3	학	84.0	84.0		학교법인예전학원						
972	도화동	123-4	학	54.0	54.0		학교법인예전학원						
973	도화동	126-8	대	7.0	7.0		인천도시공사						
974	도화동	126-9	대	43.0	43.0		인천도시공사						
975	도화동	126-10	학	35.0	35.0		인천도시공사						
976	도화동	126-13	학	21.0	21.0		인천도시공사						
977	도화동	126-14	대	86.0	86.0		인천도시공사						
978	도화동	126-15	대	12.0	12.0		인천도시공사/인천광역시						
979	도화동	126-16	대	82.0	82.0		인천도시공사						
980	도화동	126-17	대	7.0	7.0		인천도시공사						
981	도화동	126-18	대	20.0	20.0		인천도시공사						
982	도화동	126-19	학	14.0	14.0		인천도시공사						
983	도화동	126-20	대	10.0	10.0		인천도시공사						
984	도화동	135-1	대	10.0	10.0		인천도시공사						
985	도화동	135-5	대	212.0	212.0		인천도시공사						
986	도화동	135-6	대	10.0	10.0		인천도시공사						
987	도화동	135-8	대	23.0	23.0		인천도시공사						
988	도화동	135-10	대	36.0	36.0		인천도시공사						
989	도화동	135-11	대	53.0	53.0		인천도시공사						
990	도화동	135-12	대	241.0	241.0		인천도시공사						
991	도화동	135-13	대	13.0	13.0		인천도시공사						
992	도화동	135-14	대	182.0	182.0		인천도시공사						
993	도화동	135-15	대	36.0	36.0		인천도시공사						
994	도화동	138-1	대	160.0	160.0		인천도시공사						
995	도화동	138-2	대	181.0	181.0		인천도시공사						
996	도화동	138-4	대	9.0	9.0		인천도시공사						
997	도화동	138-7	대	178.0	178.0		인천도시공사						
998	도화동	138-8	대	761.0	761.0		인천도시공사						
999	도화동	138-9	대	251.0	251.0		인천도시공사						
1000	도화동	138-10	대	238.0	238.0		인천도시공사						
1001	도화동	138-11	대	245.0	245.0		인천도시공사						
1002	도화동	138-12	대	251.0	251.0		인천도시공사						
1003	도화동	138-13	대	231.0	231.0		인천도시공사						
1004	도화동	138-14	대	288.0	288.0		인천도시공사						
1005	도화동	138-17	대	182.0	182.0		인천도시공사						
1006	도화동	138-18	대	230.0	230.0		인천도시공사						
1007	도화동	138-19	대	212.0	212.0		인천도시공사						
1008	도화동	138-20	대	211.0	211.0		인천도시공사						
1009	도화동	138-21	대	218.0	218.0		인천도시공사						
1010	도화동	138-22	대	215.0	215.0		인천도시공사						
1011	도화동	138-23	대	205.0	205.0		인천도시공사						
1012	도화동	138-24	대	205.0	205.0		인천도시공사						
1013	도화동	138-25	대	182.0	182.0		인천도시공사						
1014	도화동	138-26	대	161.0	161.0		인천도시공사						
1015	도화동	138-27	대	11.0	11.0		인천도시공사						
1016	도화동	138-28	대	162.0	162.0		인천도시공사						

인 권 광 역 시 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면적면적(㎡)	지분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인	권리구분	
1017	도화동	139-30	대	20.0	20.0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인	권리구분	비고	
1018	도화동	139-31	대	19.0	19.0		인천도시공사							
1019	도화동	139-32	대	45.0	45.0		인천도시공사							
1020	도화동	139-33	대	22.0	22.0		인천도시공사							
1021	도화동	139-34	대	1.0	1.0		인천도시공사							
1022	도화동	139-35	대	29.0	29.0		인천도시공사							
1023	도화동	139-36	대	10.0	10.0		인천도시공사							
1024	도화동	139-37	대	21.0	21.0		인천도시공사							
1025	도화동	139-38	대	2.0	2.0		인천도시공사							
1026	도화동	139-39	대	13.0	13.0		인천도시공사							
1027	도화동	138-40	대	5.0	5.0		인천도시공사							
1028	도화동	138-41	도	23.0	23.0		인천도시공사							
1029	도화동	138-42	대	18.0	18.0		인천도시공사							
1030	도화동	139	건	33.0	33.0		인천도시공사							
1031	도화동	140-1	대	122.0	122.0		인천도시공사							
1032	도화동	140-2	대	84.0	84.0		인천도시공사							
1033	도화동	140-3	대	15.0	15.0		인천도시공사							
1034	도화동	140-4	대	185.0	185.0		인천도시공사							
1035	도화동	140-5	학	191.0	191.0		인천도시공사/학교법인해전학원							
1036	도화동	140-9	학	397.0	397.0		인천도시공사/학교법인해전학원							
1037	도화동	140-6	대	11.0	11.0		인천도시공사							
1038	도화동	140-7	대	4.0	4.0		인천도시공사							
1039	도화동	141-1	학	304.0	304.0		학교법인해전학원							
1040	도화동	141-2	학	143.0	143.0		학교법인해전학원							
1041	도화동	141-3	학	502.0	502.0		학교법인해전학원							
1042	도화동	141-5	학	43.0	43.0		학교법인해전학원							
1043	도화동	141-6	학	191.0	191.0		인천도시공사/학교법인해전학원							
1044	도화동	141-20	학	62.0	62.0		인천도시공사/학교법인해전학원							
1045	도화동	141-7	학	13.0	13.0		학교법인해전학원							
1046	도화동	141-13	학	89.0	89.0		학교법인해전학원							
1047	도화동	141-14	학	79.0	79.0		학교법인해전학원							
1048	도화동	141-16	학	44.0	44.0		학교법인해전학원							
1049	도화동	141-18	학	44.0	44.0		학교법인해전학원							
1050	도화동	141-19	학	27.0	27.0		인천도시공사/학교법인해전학원							
1051	도화동	141-21	학	67.0	67.0		인천도시공사/학교법인해전학원							
1052	도화동	142-1	학	142.0	142.0		학교법인해전학원							
1053	도화동	142-3	학	129.0	129.0		학교법인해전학원							
1054	도화동	142-4	학	30.0	30.0		학교법인해전학원							
1055	도화동	142-6	학	53.0	53.0		학교법인해전학원							
1056	도화동	142-7	학	248.0	248.0		학교법인해전학원							
1057	도화동	142-8	학	109.0	109.0		학교법인해전학원							
1058	도화동	142-9	학	149.0	149.0		학교법인해전학원							
1059	도화동	142-10	학	122.0	122.0		학교법인해전학원							
1060	도화동	142-11	학	215.0	215.0		학교법인해전학원							
1061	도화동	142-12	학	40.0	40.0		학교법인해전학원							
1062	도화동	142-13	학	96.0	96.0		학교법인해전학원							
1063	도화동	142-14	학	16.0	16.0		학교법인해전학원							
1064	도화동	142-15	학	116.0	116.0		학교법인해전학원							
1065	도화동	142-16	학	10.0	10.0		학교법인해전학원							
1066	도화동	142-17	학	16.0	16.0		학교법인해전학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면적면적(㎡)	지분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인	권리구분
1067	도화동	142-21	학	79.0	79.0								
1068	도화동	142-22	학	149.0	149.0								
1069	도화동	142-23	학	73.0	73.0								
1070	도화동	142-24	학	185.0	185.0								
1071	도화동	143-1	학	24.0	24.0								
1072	도화동	143-2	학	206.0	206.0								
1073	도화동	143-3	학	101.0	101.0								
1074	도화동	143-4	학	30.0	30.0								
1075	도화동	143-6	학	71.0	71.0								
1076	도화동	143-7	학	612.0	612.0								
1077	도화동	143-15	학	184.0	184.0								
1078	도화동	143-16	학	218.0	218.0								
1079	도화동	143-17	학	81.0	81.0								
1080	도화동	143-18	학	233.0	233.0								
1081	도화동	143-19	학	317.0	317.0								
1082	도화동	143-20	학	53.0	53.0								
1083	도화동	144-5	학	287.0	287.0								
1084	도화동	144-10	학	136.0	136.0								
1085	도화동	144-13	학	2.0	2.0								
1086	도화동	148-21	학	10.0	10.0								
1087	도화동	151-1	학	192.0	192.0								
1088	도화동	151-2	학	142.0	142.0								
1089	도화동	151-3	학	99.0	99.0								
1090	도화동	151-4	학	112.0	112.0								
1091	도화동	152	학	564.0	564.0								
1092	도화동	152-1	학	18.0	18.0								
1093	도화동	153-1	학	78.0	78.0								
1094	도화동	153-3	학	54.0	54.0								
1095	도화동	153-2	학	12.0	12.0								
1096	도화동	153-4	학	106.0	106.0								
1097	도화동	154-1	학	758.0	758.0								
1098	도화동	154-6	학	637.0	637.0								
1099	도화동	154-2	대	152.0	152.0								
1100	도화동	154-3	대	225.0	225.0								
1101	도화동	155-1	대	103.0	103.0								
1102	도화동	155-2	대	20.0	20.0								
1103	도화동	155-3	대	258.0	258.0								
1104	도화동	155-4	대	22.0	22.0								
1105	도화동	156-1	대	248.0	248.0								
1106	도화동	156-2	학	3332.0	3332.0								
1107	도화동	157-1	대	145.0	145.0								
1108	도화동	157-2	대	421.0	421.0								
1109	도화동	157-3	대	149.0	149.0								
1110	도화동	157-4	대	225.0	225.0								
1111	도화동	157-5	대	172.0	172.0								
1112	도화동	157-6	대	165.0	165.0								
1113	도화동	157-7	대	112.0	112.0								
1114	도화동	157-8	대	10.0	10.0								
1115	도화동	157-9	대	16.0	16.0								
1116	도화동	157-10	대	13.0	13.0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권입면적(㎡)	지분	소유자		주소	현명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117	도화동	158-1	대	175.0	175.0			인천도시공사					
1118	도화동	158-2	대	3.0	3.0			인천도시공사					
1119	도화동	158-3	학	487.0	487.0			인천도시공사					
1120	도화동	158-7	대	244.0	244.0			인천도시공사					
1121	도화동	158-10	광	259.0	259.0			인천도시공사					
1122	도화동	158-11	대	226.0	226.0			인천도시공사					
1123	도화동	158-13	학	62.0	62.0			인천도시공사					
1124	도화동	158-14	대	5.0	5.0			인천도시공사					
1125	도화동	158-15	광	12.0	12.0			인천도시공사					
1126	도화동	158-16	대	37.0	37.0			인천도시공사					
1127	도화동	159	대	272.0	272.0			인천도시공사					
1128	도화동	159-1	대	69.0	69.0			인천도시공사					
1129	도화동	159-2	대	29.0	29.0			인천도시공사					
1130	도화동	160-2	대	122.0	122.0			인천도시공사					
1131	도화동	160-3	대	132.0	132.0			인천도시공사					
1132	도화동	161-1	대	223.0	223.0			인천도시공사					
1133	도화동	161-2	대	165.0	165.0			인천도시공사					
1134	도화동	161-4	대	108.0	108.0			인천도시공사					
1135	도화동	161-6	대	155.0	155.0			인천도시공사					
1136	도화동	161-7	대	149.0	149.0			인천도시공사					
1137	도화동	161-8	대	99.0	99.0			인천도시공사					
1138	도화동	161-9	대	54.0	54.0			인천도시공사					
1139	도화동	161-10	대	43.0	43.0			인천도시공사					
1140	도화동	161-11	대	13.0	13.0			인천도시공사					
1141	도화동	161-12	대	8.0	8.0			인천도시공사					
1142	도화동	161-13	대	27.0	27.0			인천도시공사					
1143	도화동	161-14	대	1.0	1.0			인천도시공사					
1144	도화동	161-15	대	14.0	14.0			인천도시공사					
1145	도화동	163-1	대	92.0	92.0			인천도시공사					
1146	도화동	163-2	대	126.0	126.0			인천도시공사					
1147	도화동	163-3	대	56.0	56.0			인천도시공사					
1148	도화동	163-6	대	142.0	142.0			인천도시공사					
1149	도화동	163-7	대	96.0	96.0			인천도시공사					
1150	도화동	163-8	대	96.0	96.0			인천도시공사					
1151	도화동	164-1	대	191.0	191.0			인천도시공사					
1152	도화동	164-2	대	96.0	96.0			인천도시공사					
1153	도화동	164-5	대	106.0	106.0			인천도시공사					
1154	도화동	164-6	대	34.0	34.0			인천도시공사					
1155	도화동	165-1	대	56.0	56.0			인천도시공사					
1156	도화동	165-2	대	116.0	116.0			인천도시공사					
1157	도화동	165-3	학	202.0	202.0			인천도시공사					
1158	도화동	165-4	대	96.0	96.0			인천도시공사					
1159	도화동	165-5	대	76.0	76.0			인천도시공사					
1160	도화동	165-6	대	162.0	162.0			인천도시공사					
1161	도화동	165-1	학	440.0	440.0			인천도시공사/학교법인해전학원					
1162	도화동	165-4	학	1.0	1.0			인천도시공사/학교법인해전학원					
1163	도화동	165-12	학	44.0	44.0			인천도시공사/학교법인해전학원					
1164	도화동	166-6	대	247.0	247.0			인천도시공사					
1165	도화동	166-7	도	23.0	23.0			인천도시공사					
1166	도화동	166-8	대	272.0	272.0			인천도시공사					
1167	도화동	166-9	대	572.0	572.0			인천도시공사					
1168	도화동	166-10	대	220.0	220.0			인천도시공사					
1169	도화동	166-11	도	52.0	52.0			인천도시공사					
1170	도화동	167-1	광	390.0	390.0			인천도시공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역면적 (㎡)	면적면적 (㎡)	지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구분	
1171	도화동	167-2	학	387.0	387.0		인원도시공사					
1172	도화동	167-3	잡	8.0	8.0		인원도시공사					
1173	도화동	167-4	잡	31.0	31.0		인원도시공사					
1174	도화동	167-5	잡	4.0	4.0		인원도시공사					
1175	도화동	168-1	학	608.0	608.0		인원도시공사/학교법인예전학원					
1176	도화동	168-2	학	3026.0	3026.0		인원도시공사/학교법인예전학원					
1177	도화동	169-1	학	621.0	621.0		인원도시공사/학교법인예전학원					
1178	도화동	169-2	학	162.0	162.0		인원도시공사/학교법인예전학원					
1179	도화동	171	학	1140.0	1140.0		인원도시공사/학교법인예전학원					
1180	도화동	171-1	학	6880.0	6880.0		학교법인예전학원					
1181	도화동	174-1	학	1001.0	1001.0		학교법인예전학원					
1182	도화동	174-2	학	324.0	324.0		학교법인예전학원					
1183	도화동	174-5	학	2735.0	2735.0		학교법인예전학원					
1184	도화동	176-6	학	16.0	16.0		학교법인예전학원					
1185	도화동	177-28	학	23.0	23.0		학교법인예전학원					
1186	도화동	177-62	학	238.0	238.0		학교법인예전학원					
1187	도화동	177-83	학	1.0	1.0		학교법인예전학원					
1188	도화동	180-22	학	486.0	486.0		인원도시공사					
1189	도화동	180-25	학	99.0	99.0		인원도시공사					
1190	도화동	181-3	학	20.0	20.0		인원도시공사					
1191	도화동	182-2	건	126.0	126.0		인원도시공사					
1192	도화동	182-6	학	11.0	11.0		인원도시공사					
1193	도화동	182-11	학	3306.0	3306.0		인원도시공사					
1194	도화동	182-12	학	314.0	314.0		인원도시공사					
1195	도화동	182-13	학	254.0	254.0		인원도시공사					
1196	도화동	182-14	학	393.0	393.0		인원도시공사					
1197	도화동	182-15	학	53.0	53.0		인원도시공사					
1198	도화동	182-21	학	56.0	56.0		인원도시공사					
1199	도화동	182-22	학	20.0	20.0		인원도시공사					
1200	도화동	182-23	학	74.0	74.0		인원도시공사					
1201	도화동	182-24	학	44.0	44.0		인원도시공사					
1202	도화동	182-25	학	1236.0	1236.0		인원도시공사					
1203	도화동	183-2	학	304.0	304.0		인원도시공사					
1204	도화동	188-5	건	357.0	357.0		인원도시공사					
1205	도화동	189	학	337.0	337.0		인원도시공사					
1206	도화동	190	학	1054.0	1054.0		인원도시공사					
1207	도화동	191-1	학	5398.0	5398.0		인원도시공사					
1208	도화동	191-2	학	659.0	659.0		인원도시공사					
1209	도화동	191-4	학	142.0	142.0		인원도시공사					
1210	도화동	192	학	178.0	178.0		인원도시공사					
1211	도화동	193-3	학	56.0	56.0		인원도시공사					
1212	도화동	193-10	학	9256.0	9256.0		인원도시공사					
1213	도화동	193-11	학	708.0	708.0		인원도시공사					
1214	도화동	193-13	학	1.0	1.0		인원도시공사					
1215	도화동	193-14	학	1804.0	1804.0		인원도시공사/인원광역시					
1216	도화동	193-15	학	37764.0	37764.0		인원도시공사/인원광역시					
1217	도화동	193-16	학	153.0	153.0		인원도시공사/인원광역시					
1218	도화동	194	학	602.0	602.0		인원도시공사					
1219	도화동	195-1	학	522.0	522.0		인원도시공사					
1220	도화동	195-2	학	608.0	608.0		인원도시공사					
1221	도화동	196-1	학	1200.0	1200.0		인원도시공사					
1222	도화동	196-3	학	18888.0	18888.0		인원도시공사					
1223	도화동	197-1	학	324.0	324.0		인원도시공사					
1224	도화동	197-2	학	79.0	79.0		인원도시공사					
1225	도화동	198-1	학	225.0	225.0		인원도시공사					
1226	도화동	198-2	학	60.0	60.0		인원도시공사					

인 권 광 역 시 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역면적(㎡)	반입면적(㎡)	소유자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구분	비고	
1227	도화동	199	학	344.0	344.0		인원도시공사						
1228	도화동	200	학	136.0	136.0		인원도시공사						
1229	도화동	201	학	826.0	826.0		인원도시공사						
1230	도화동	203-3	학	37.0	37.0		인원도시공사						
1231	도화동	206-2	학	68274.0	68274.0		인원도시공사						
1232	도화동	217-1	학	2142.0	2142.0		인원도시공사						
1233	도화동	217-4	장	33.0	33.0		인원도시공사						
1234	도화동	225-1	대	199.0	199.0		인원도시공사						
1235	도화동	225-4	대	175.0	175.0		인원도시공사						
1236	도화동	225-5	대	162.0	162.0		인원도시공사						
1237	도화동	225-6	대	155.0	155.0		인원도시공사						
1238	도화동	225-7	대	139.0	139.0		인원도시공사						
1239	도화동	225-8	대	145.0	145.0		인원도시공사						
1240	도화동	225-9	대	149.0	149.0		인원도시공사						
1241	도화동	225-10	도	195.0	195.0		인원광역시						
1242	도화동	225-11	대	189.0	189.0		인원도시공사						
1243	도화동	225-12	대	182.0	182.0		인원도시공사						
1244	도화동	225-13	대	165.0	165.0		인원도시공사						
1245	도화동	225-14	대	149.0	149.0		인원도시공사						
1246	도화동	225-15	대	126.0	126.0		인원도시공사						
1247	도화동	225-17	대	215.0	215.0		인원도시공사						
1248	도화동	225-18	대	189.0	189.0		인원도시공사						
1249	도화동	225-19	대	209.0	209.0		인원도시공사						
1250	도화동	252-3	도	7368.9	7368.9		인원광역시						
1251	도화동	254	도	233.3	233.3		인원광역시						
1252	도화동	255-1	도	9.6	9.6		인원광역시						
1253	도화동	255-2	도	1002.8	1002.8		인원광역시						
1254	도화동	255-3	도	25396.3	25396.3		인원도시공사/학교법인해연학원						
1255	도화동	256	학	313.0	313.0		학교법인해연학원						
1256	도화동	256-1	학	2.1	2.1		학교법인해연학원						
1257	도화동	257	학	218.0	218.0		인원광역시남구						
1258	도화동	258	도	998.5	998.5		인원광역시						
1259	도화동	259	도	4218.7	4218.7		인원광역시						
1260	도화동	260	학	3519.2	3519.2		인원도시공사						
1261	도화동	261	도	4259.0	4259.0		인원광역시						
1262	도화동	265	학	957.2	957.2		인원도시공사						
1263	도화동	265-1	도	2278.3	2278.3		인원광역시남구						
1264	도화동	266	도	592.2	592.2		인원광역시						
1265	도화동	267	도	994.0	994.0		인원광역시						
1266	도화동	269	도	23.1	23.1		인원광역시						
1267	도화동	269	도	3007.7	3007.7		인원광역시						
1268	도화동	270	도	649.9	649.9		인원광역시						
1269	도화동	271-1	도	77.6	77.6		인원광역시						
1270	도화동	551-11	학	307.0	307.0		인원도시공사						
1271	도화동	551-12	도	704.0	704.0		국(국토해양부)						
1272	도화동	551-13	도	166.0	166.0		국(국토해양부)						
1273	도화동	551-19	도	1108.0	1108.0		국(국토해양부)						
1274	도화동	551-20	도	112.0	112.0		국(국토해양부)						
1275	도화동	551-21	도	506.0	506.0		국(국토해양부)						
1276	도화동	551-22	도	278.0	278.0		국(국토해양부)						
1277	도화동	551-23	도	3116.0	3116.0		국(국토해양부)						
1278	도화동	551-24	도	649.0	649.0		국(국토해양부)						
1279	도화동	673	도	53.0	53.0		국(국토해양부)						
1280	도화동	674	구	654.0	654.0		국(국토해양부)						
1281	도화동	787	주	788.8	788.8		인원도시공사						
1282	도화동	787-1	대	697.3	697.3		인원도시공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역면적 (㎡)	법정면적 (㎡)	지분	소유자	주소	성명	주소	관계인	권리구분	비고
1283	도화동	788	대	397.7	397.7		인천도시공사						
1284	도화동	788-1	대	389.1	389.1		인천도시공사						
1285	도화동	788-2	대	379.8	379.8		인천도시공사						
1286	도화동	788-3	대	344.8	344.8		인천도시공사						
1287	도화동	789	대	631.8	631.8		인천도시공사						
1288	도화동	794	경	41.3	41.3		인천도시공사						
1289	도화동	796	대	322.6	322.6		인천도시공사						
1290	도화동	797	대	1773.9	1773.9		인천도시공사						
1291	도화동	798	대	687.9	687.9		인천도시공사						
1292	도화동	799	대	342.1	342.1		인천도시공사						
1293	도화동	800	대	4096.5	4096.5		인천도시공사						
1294	도화동	802	경	1208.9	1208.9		인천도시공사						
1295	도화동	803	대	235.0	235.0		인천도시공사						
1296	도화동	804	대	1432.4	1432.4		인천도시공사						
1297	도화동	805	대	1144.8	1144.8		인천광역시 남구						
1298	도화동	806-1	도	350.4	350.4		인천도시공사						
1299	도화동	806-2	학	38821.4	38821.4		인천도시공사						
1300	도화동	806-3	구	199.3	199.3		인천광역시 남구						
1301	도화동	807-1	도	55.9	55.9		인천도시공사						
1302	도화동	807-2	대	551.7	551.7		인천도시공사						
1303	도화동	832	학	6404.6	6404.6		인천도시공사						
1304	도화동	833	학	6056.2	6056.2		인천도시공사						
1305	도화동	834	학	8196.0	8196.0		인천도시공사						
1306	도화동	835-1	학	11054.2	11054.2		인천도시공사						
1307	도화동	835-2	구	139.2	139.2		인천광역시남구						
1308	도화동	836-1	학	2177.2	2177.2		인천도시공사						
1309	도화동	836-2	구	64.5	64.5		인천광역시남구						
1310	도화동	837	학	4265.1	4265.1		인천도시공사						
1311	도화동	838	학	4474.7	4474.7		인천도시공사						
1312	도화동	839-1	대	248.5	248.5		인천도시공사						
1313	도화동	839-2	대	235.2	235.2		인천도시공사						
1314	도화동	839-3	도	83.2	83.2		인천광역시						
1315	도화동	839-4	대	236.4	236.4		인천도시공사						
1316	도화동	839-5	대	248.5	248.5		인천도시공사						
1317	도화동	839-6	대	236.4	236.4		인천도시공사						
1318	도화동	839-7	도	83.2	83.2		인천광역시						
1319	도화동	839-8	대	239.5	239.5		인천도시공사						
1320	도화동	844	대	355.4	355.4		인천도시공사						
1321	도화동	845	도	424.4	424.4		인천도시공사						
1322	도화동	846-1	대	408.6	408.6		인천도시공사						
1323	도화동	846-2	대	207.6	207.6		인천도시공사						
1324	도화동	847	대	677.4	677.4		인천도시공사						
1325	도화동	848	대	261.8	261.8		인천도시공사						
1326	도화동	849	대	546.8	546.8		인천도시공사						
1327	도화동	850	경	796.4	796.4		인천도시공사						
1328	도화동	851	대	249.1	249.1		인천도시공사						
1329	도화동	851-1	대	419.2	419.2		인천도시공사						
1330	도화동	851-2	대	605.7	605.7		인천도시공사						
1331	도화동	851-3	대	265.2	265.2		인천도시공사						
1332	도화동	871-1	도	1273.9	1273.9		인천광역시						
1333	도화동	872	대	2287.2	2287.2		인천도시공사						
1334	도화동	873	대	94.5	94.5		인천도시공사						
1335	도화동	873-1	대	188.4	188.4		인천도시공사						
1336	도화동	874	대	250.3	250.3		인천도시공사						
1337	도화동	874-3	도	5575.7	5575.7		인천광역시						
1338	도화동	874-4	도	4680.6	4680.6		인천광역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관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분	성명	주소	성명	
1339	도화동	974-5	도	1623.2	1623.2		인천광역시			
1340	도화동	975-1	도	2337.0	2337.0		인천광역시			
1341	도화동	981-94	도	347.7	347.7		인천광역시			
1342	도화동	산28-3	임	99.0	99.0		인천도시공사			
1343	도화동	산28-4	임	71.0	71.0		인천도시공사			
1344	도화동	산28-5	임	397.0	397.0		인천도시공사			
1345	도화동	산28-6	임	99.0	99.0		인천도시공사			
1346	도화동	산31-2	전	496.0	496.0		인천도시공사			
1347	도화동	산31-4	전	126.0	126.0		인천도시공사			
1348	도화동	산31-5	임	53.0	53.0		인천도시공사			
1349	도화동	산31-19	임	592.0	592.0		인천도시공사			
1350	도화동	산31-20	임	965.0	965.0		인천도시공사			
계	1350필			892,227.8	892,227.8					

[붙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

1. 도시개발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경	변경후		
합 계		881,954.3	증)21.1	881,975.4	100.0	
주거 지역	소 계	782,208.0	증)19.1	782,227.1	88.7	
	제2종일반주거지역	702,394.6	감)0.4	702,394.2	79.6	
	준주거지역	79,813.4	증)19.5	79,832.9	9.1	
상업 지역	소 계	64,818.8	증)3.7	64,822.5	7.3	
	일반상업지역	64,818.8	증)3.7	64,822.5	7.3	
녹지 지역	소 계	34,927.5	감)1.7	34,925.8	4.0	
	자연녹지지역	34,927.5	감)1.7	34,925.8	4.0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도면 표시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m ²)	용 적 륜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경			
-	-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02,394.2	-	확정측량 결과 반영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79,832.9	-	확정측량 결과 반영
		일반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64,822.5	-	확정측량 결과 반영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34,925.8	-	확정측량 결과 반영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해당사항 없음

다. 도시개발사업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

■ 도시개발사업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도화 도시개발구역	미추홀구 도화동 43-7번지 일원	미추홀구 도화동 1004번지 일원	881,954.3	증)21.1	881,975.4	

■ 도시개발사업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치	면 적 (m ²)	변경사유
변경	1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004번지 일원	면적변경 : 881,954.3m ² → 881,975.4m ² 증)21.1m ²	확정측량 결과 반영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m ²)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도화 지구단 위계 계획구역	미추홀구 도화동 43-7번지 일원	미추홀구 도화동 1004번지 일원	881,954.3	증)21.1	881,975.4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치	면 적 (m ²)	변경사유
변경	1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004번지 일원	면적변경 : 881,954.3m ² → 881,975.4m ² 증)21.1m ²	확정측량 결과 반영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

○ 교통시설

가) 도로(변경)

■ 도로 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합계	30 (30)	21,574 (7,833)	507,357.4 (132,569.8)	3 (3)	512 (512)	11,527.5 (11,527.5)	14 (14)	13,241 (3,809)	323,628.3 (57,383.3)	13 (13)	7,821 (3,512.0)	172,201.6 (63,659.0)
대로	8 (8)	18,333 (4,691)	462,803.3 (89,203.7)	-	-	-	5 (5)	12,199 (2,767)	314,391.0 (48,146.0)	3 (3)	6,134 (1,924)	148,412.3 (41,057.7)
중로	11 (11)	2,200 (2,101)	35,766.6 (34,578.6)	2 (2)	486 (486)	11,253.3 (11,253.3)	1 (1)	51 (51)	931.3 (931.3)	8 (8)	1,663 (1,564)	23,582.0 (22,394.0)
소로	11 (11)	1,041 (1,041)	8,787.5 (8,787.5)	1 (1)	26 (26)	274.2 (274.2)	8 (8)	991 (991)	8,306.0 (8,306.0)	2 (2)	24 (24)	207.3 (207.3)

주: ()는 구역내 연장 및 면적임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 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 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2	1	30~40	주간선도로	2,000 (737)	대 2-3	광 2-4	일반도로	도화 도시개발 구역	건고45 (71.1.29)	
변경	대로	2	1	30 (30~40)	주간선도로	2,000 (737)	대 2-3	광 2-4	일반도로	-	건고45 (71.1.29)	
기정	대로	2	3	30~38	주간선도로	1,500 (462)	광 3-9	대 2-32	일반도로	도화 도시개발 구역	건고54 (70.2.9)	
변경	대로	2	3	30 (30~38)	주간선도로	1,500 (462)	광 3-9	대 2-32	일반도로	서화 초교	건고54 (70.2.9)	
기정	대로	2	32	30~38	주간선도로	8,100 (609)	대 3-1	부천시 경계	일반도로	가좌IC	건고54 (70.2.9)	
변경	대로	2	32	30 (30~38)	주간선도로	8,081 (609)	대 3-1	부천시 경계	일반도로	가좌IC	건고54 (70.2.9)	
기정	대로	2	109	30~33	보조도로	341	대 2-3	대 2-32	일반도로	-	인고 2009-385 (09.12.14)	
변경	대로	2	109	30 (30~33)	보조도로	341	대 2-3	대 2-32	일반도로	-	인고 2009-385 (09.12.14)	
기정	대로	2	92	29~35	집산도로	618	대 2-3	대3-9	일반도로	-	인고 2009-385 (09.12.14)	
변경	대로	2	92	29 (29~35)	집산도로	618	대 2-3	대3-9	일반도로	-	인고 2009-385 (09.12.14)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	25~36	보조 간선	4,921 (711)	29호 광장	대 2-5	일반 도로	-	건고54 (70.2.9)	
변경	대로	3	1	25 (25~36)	보조 간선	4,921 (711)	29호 광장	대 2-5	일반 도로	-	건고54 (70.2.9)	
기정	대로	3	6	25.5	집산 도로	115	대 2-32	대 3-9	일반 도로	-	인고 2009-385 (09.12.14)	
기정	대로	3	9	25.5	집산 도로	1,098	대 2-3	대 3-1	일반 도로	-	인고 2009-385 (09.12.14)	
변경	대로	3	9	25.5	집산 도로	1,098	대 2-3	대 3-1	일반 도로	-	인고 2009-385 (09.12.14)	
기정	중로	1	144	22.5	집산 도로	309	대 3-9	대 2-92	일반 도로	-	인고 2009-385 (09.12.14)	
기정	중로	1	도화 -a	22.5	집산 도로	177	대 2-1	중 3-317	일반 도로	-	인고 2009-385 (09.12.14)	
변경	중로	1	488	22.5	집산 도로	177	대 2-1	중 3-317	일반 도로	-	인고 2009-385 (09.12.14)	
기정	중로	2	800	15	집산 도로	51	중3-318	대 2-3	일반 도로	-	인고 2009-385 (09.12.14)	
기정	중로	3	240	12	국지 도로	122 (23)	중2-800	중 3-5	일반 도로	-	인고 2009-385 (09.12.14)	
기정	중로	3	317	13-20	집산 도로	505	대 2-1	중 3-318	일반 도로	-	인고 2009-385 (09.12.14)	
변경	중로	3	317	13 (13~20)	집산 도로	505	대 2-1	중 3-318	일반 도로	-	인고 2009-385 (09.12.14)	
기정	중로	3	318	12	국지 도로	129	소1-108	중 3-317	일반 도로	-	인고 2009-385 (09.12.14)	
기정	중로	3	319	12	집산 도로	62	소2-74	중 1-477	일반 도로	-	인고 2009-385 (09.12.14)	
기정	중로	3	243	13	집산 도로	211	대 2-3	중 2-799	일반 도로	-	인고 2009-385 (09.12.14)	
기정	중로	3	244	14.5	집산 도로	430	중3- 도화-a	대 2-92	일반 도로	-	인고 2009-385 (09.12.14)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 (m)								
기정	중로	3	도화 -a	14	특수 도로	141	대 2-3	중3-244	보행자 전용도로	-	인고 2015-320 (15.11.30)	
변경	중로	3	343	14	특수 도로	141	대 2-3	중3-244	보행자 전용도로	-	인고 2015-320 (15.11.30)	
기정	중로	3	도화 -b	14	집산 도로	63	소 2-74	대 3-9	일반 도로	-	인고 2015-320 (15.11.30)	
변경	중로	3	344	14	집산 도로	63	소 2-74	대 3-9	일반 도로	-	인고 2015-320 (15.11.30)	
기정	소로	1	도화 -a	11	집산 도로	26	소 2-73	대 2-92	일반 도로	-	인고 2015-320 (15.11.30)	
변경	소로	1	114	11	집산 도로	26	소 2-73	대 2-92	일반 도로	-	인고 2015-320 (15.11.30)	
기정	소로	2	72	8	국지 도로	211	대 3-9	중 1-144	일반 도로	-	인고 2009-385 (09.12.14)	
기정	소로	2	73	8	국지 도로	178	중 1-144	소 2- 도화-b	일반 도로	-	인고 2015-320 (15.11.30)	
기정	소로	2	74	8	국지 도로	270	대 2-92	중 3- 도화-b	일반 도로	-	인고 2009-385 (09.12.14)	
기정	소로	2	75	8	특수 도로	26	대 2-92	소 2-73	보행자 전용도로	-	인고 2009-385 (09.12.14)	
기정	소로	2	76	8	특수 도로	26	대 2-92	소 2-72	보행자 전용도로	-	인고 2009-385 (09.12.14)	
기정	소로	2	429	8	국지 도로	87	중 3-31	중 3-31	일반 도로	-	인고 2009-385 (09.12.14)	
기정	소로	2	도화 -a	8	국지 도로	108	소 3- 도화-a	중 3-318	일반 도로	-	인고 2015-320 (15.11.30)	
변경	소로	2	434	8	국지 도로	96	소 3-714	중 3-318	일반 도로	-	인고 2015-320 (15.11.30)	
기정	소로	2	도화 -b	9.5	국지 도로	99	소 2-73	연결 녹지3	일반 도로	-	인고 2015-320 (15.11.30)	
변경	소로	2	435	9.5	국지 도로	99	소 2-73	연결 녹지3	일반 도로	-	인고 2015-320 (15.11.30)	
기정	소로	3	도화 -a	6	특수 도로	6	중 3-243	소 2- 도화-a	보행자 전용도로	-	인고 2015-320 (15.11.30)	
변경	소로	3	714	6	특수 도로	18	중 3-243	소 2-434	보행자 전용도로	-	인고 2015-320 (15.11.30)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 (m)								
기정	소로	3	도화 -b	6	특수 도로	6	대 2-32	학 4	보행자 전용도로	-	인고 2015-320 (15.11.30)	
변경	소로	3	715	6	특수 도로	6	대 2-32	학 4	보행자 전용도로	-	인고 2015-320 (15.11.30)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대로2-1	대로2-1	폭원 : 30m~40m → 30m(30m~40m)	대표폭원과 변화폭원 동시 기입 반영
대로2-3	대로2-3	폭원 : 30m~38m → 30m(30m~38m)	대표폭원과 변화폭원 동시 기입 반영
대로2-32	대로2-32	폭원 : 30m~38m → 30m(30m~38m)	대표폭원과 변화폭원 동시 기입 반영
대로2-109	대로2-109	폭원 : 30m~33m → 30m(30m~33m)	대표폭원과 변화폭원 동시 기입 반영
대로2-92	대로2-92	폭원 : 29m~35m → 29m(29m~35m)	대표폭원과 변화폭원 동시 기입 반영
대로3-1	대로3-1	폭원 : 25m~36m → 25m(25m~36m)	대표폭원과 변화폭원 동시 기입 반영
대로3-9	대로3-9	버스베이 위치조정에 따른 도로 선형 변경	특별계획구역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반영
중로1-도화-a	중로1-488	중로1-도화-a → 중로1-488	도로 노선번호 부여에 따른 변경
중로3-317	중로3-317	폭원 : 13m~20m → 13m(13m~20m)	대표폭원과 변화폭원 동시 기입 반영
중로3-도화-a	중로3-343	중로3-도화-a → 중로3-343	도로 노선번호 부여에 따른 변경
중로3-도화-b	중로3-344	중로3-도화-b → 중로3-344	도로 노선번호 부여에 따른 변경
소로1-도화-a	소로1-114	소로1-도화-a → 소로1-114	도로 노선번호 부여에 따른 변경
소로2-도화-a	소로2-434	소로2-도화-a → 소로2-434 연장축소 : 108m → 96m	도로 노선번호 부여 및 보행자전용도로 (소로3-도화-a)의 연장변경에 따른 변경
소로2-도화-b	소로2-435	소로2-도화-b → 소로2-435	도로 노선번호 부여에 따른 변경
소로3-도화-a	소로3-714	소로3-도화-a → 소로3-714 연장확대 : 6m → 18m	도로 노선번호 부여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반영
소로3-도화-b	소로3-715	소로3-도화-b → 소로3-715 도로선형 변경	도로 노선번호 부여 및 도로 개설 현황을 반영

나) 주차장(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	6,885.0	감)1.0	6,884.0	-	
변경	1	주차장	도화동 844번지 일원	도화동 991번지	873.2	감)1.2	872.0	인고2013-111 (13.7.15)	
변경	2	주차장	도화동 43-12번지 일원	도화동 1006-1번지	938.4	-	938.4	인고2013-111 (13.7.15)	
변경	3	주차장	도화동 140-1번지 일원	도화동 998-1번지	1,669.3	-	1,669.3	인고2015-320 (15.11.30)	
변경	4	주차장	도화동 163-2번지 일원	도화동 999-1번지	2,000.0	증)0.2	2,000.2	인고2013-111 (13.7.15)	
변경	5	주차장	도화동 835-1번지 일원	도화동 986-2번지	1,404.1	-	1,404.1	인고2015-320 (15.11.30)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1	주차장	위치 주소 및 면적 변경(감 1.2)	확정측량 결과 반영
2	주차장	위치 주소 변경	확정측량 결과 반영
3	주차장	위치 주소 변경	확정측량 결과 반영
4	주차장	위치 주소 및 면적 변경(증 0.2)	확정측량 결과 반영
5	주차장	위치 주소 변경	확정측량 결과 반영

○ 공간시설

가) 광장(변경)

■ 광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	-	4,512.9	감)0.8	4,512.1	-	
변경	1	광장	쑥골 광장	근린 광장	도화동 67-8번지 일원	도화동 1012번지	4,512.9	감)0.8	4,512.1	인고2013-111 (13.7.15)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1	쑥골광장	시설명, 위치주소 및 면적 변경(감 0.8)	확정측량 결과 반영

나) 공원(변경)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	-	58,532.2	감)108.4	58,423.8	-	
변경	1	공원	배말 근린공원	근린공원	도화동 26-11번지 일원	도화동 994-1번지	14,746.2	증)3.3	14,749.5	-	
변경	2	공원	화동 근린공원	근린공원	도화동 43-3번지 일원	도화동 1007-3번지	20,181.3	감)5.0	20,176.3	인고2013-111 (13.7.15)	
변경	1	공원	궁현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도화동 797번지 일원	도화동 987-3번지	3,441.1	증)0.2	3,441.3	인고2013-111 (13.7.15)	
변경	2	공원	서화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도화동 64-1번지 일원	도화동 1003-2번지	5,921.5	감)107.8	5,813.7	인고2013-111 (13.7.15)	
변경	3	공원	송림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도화동 806-2번지 일원	도화동 988번지	3,644.1	증)0.3	3,644.4	인고2015-320 (15.11.30)	
변경	1	공원	염전공원	문화공원	도화동 806-2번지 일원	도화동 986-3번지	10,598.0	증)0.6	10,598.6	인고2013-111 (13.7.15)	저류시설 (3,992m ²) 중복결정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1	배말근린공원	시설명, 위치 주소 및 면적 변경(증 3.3)	확정측량 결과 반영
2	화동근린공원	시설명, 위치 주소 및 면적 변경(감 5.0)	확정측량 결과 반영
1	궁현어린이공원	시설명, 위치 주소 및 면적 변경(증 0.2)	확정측량 결과 반영
2	서화어린이공원	시설명, 위치 주소 및 면적 변경(감107.8)	확정측량 결과 반영
3	송림어린이공원	시설명, 위치 주소 및 면적 변경(증 0.3)	확정측량 결과 반영
1	염전공원	시설명, 위치 주소 및 면적 변경(증 0.6)	확정측량 결과 반영

다) 녹지(변경)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	-	34,900.5	증)9.3	34,909.8	-	
변경	1	녹지	완충 녹지	도화동 33-10번지 일원	도화동 993-2, 993-3번지	2,005.1	증)2.9	2,008.0	인고2015-320 (15.11.30)	
변경	2	녹지	완충 녹지	도화동 832번지 일원	도화동 985-5, 985-9번지	2,372.2	감)19.0	2,353.2	인고2013-111 (13.7.15)	
변경	3	녹지	완충 녹지	도화동 806-2번지 일원	도화동 987-1번지	618.6	증)0.1	618.7	인고2013-111 (13.7.15)	
변경	4	녹지	완충 녹지	도화동 800번지 일원	도화동 987-2번지	1,579.3	-	1,579.3	인고2013-111 (13.7.15)	
변경	5	녹지	완충 녹지	도화동 49-1 번지 일원	도화동 1008-1, 1010-1, 1010-3번지	8,016.0	증)1.8	8,017.8	인고2013-111 (13.7.15)	
변경	6	녹지	완충 녹지	도화동 838번지 일원	도화동 985-6, 985-7, 985-8번지	2,251.5	-	2,251.5	인고2015-320 (15.11.30)	
변경	1	녹지	연결 녹지	도화동 45-1번지 일원	도화동 1003-3번지	1,764.6	증)6.4	1,771.0	인고2013-111 (13.7.15)	
변경	2	녹지	연결 녹지	도화동 43-7번지 일원	도화동 1004-1번지	7,496.1	감)12.6	7,483.5	인고2013-111 (13.7.15)	
변경	3	녹지	연결 녹지	도화동 62-15 번지 일원	도화동 1009-1번지	4,176.9	증)3.0	4,179.9	인고2013-111 (13.7.15)	
변경	4	녹지	연결 녹지	도화동 113-11번 지 일원	도화동 1007-4번지	4,164.3	증)27.4	4,191.7	인고2013-111 (13.7.15)	
변경	1	녹지	경관 녹지	도화동 47-29번지 일원	도화동 1003-1번지	455.9	감)0.7	455.2	인고2013-111 (13.7.15)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1	완충녹지	위치 주소 및 면적 변경(증 2.9)	확정측량 결과 반영
2	완충녹지	위치 주소 및 면적 변경(감 19.0)	확정측량 결과 반영
3	완충녹지	위치 주소 및 면적 변경(증 0.1)	확정측량 결과 반영
4	완충녹지	위치 주소 변경	확정측량 결과 반영
5	완충녹지	위치 주소 및 면적 변경(증 1.8)	확정측량 결과 반영
6	완충녹지	위치 주소 변경	확정측량 결과 반영
1	연결녹지	위치 주소 및 면적 변경(증 6.4)	확정측량 결과 반영
2	연결녹지	위치 주소 및 면적 변경(감 12.6)	확정측량 결과 반영
3	연결녹지	위치 주소 및 면적 변경(증 3.0)	확정측량 결과 반영
4	연결녹지	위치 주소 및 면적 변경(증 27.4)	확정측량 결과 반영
1	경관녹지	위치 주소 및 면적 변경(감 0.7)	확정측량 결과 반영

라) 공공공지(신설)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	-	증)197.0	197.0	-	
신설	1	공공공지	-	도화동 996번지	-	증)197.0	197.0	-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1	공공공지	신규결정(면적 : 197.0m ²)	비점오염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주민의 일시적 휴식 공간 확보를 위하여 신설

○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학교(변경)

■ 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	-	325,150.1	증)3.4	325,153.5	-	
변경	1	학교	대학	도화동 38-3번지 일원	도화동 995번지	221,489.0	감)190.2	221,298.8	'02.5.10	인천대 (존치)
변경	2	학교	대학	도화동 174-5번지 일원	도화동 174-5번지 일원	57,500.0	-	57,500.0	인고2012-238 (12.09.10)	청운대 (존치)
변경	3	학교	초등학교	도화동 47-30번지 일원	도화동 1003번지	18,932.5	증)193.0	19,125.5	인교위 8 (84.2.2)	서화초교 (존치)
변경	4	학교	고등학교	도화동 43-24번지 일원	도화동 1010번지	15,269.0	증)0.4	15,269.4	인고2009-385 (09.12.14)	비즈니스고교
변경	5	학교	유치원	도화동 44-2번지 일원	도화동 1005-1번지	969.4	증)0.1	969.5	인고2013-111 (13.7.15)	
변경	6	학교	유치원	도화동 43-7번지 일원	도화동 1007-1번지	990.0	-	990.0	인고2013-111 (13.7.15)	
변경	7	학교	특수학교	도화동 26-11번지 일원	도화동 994번지	10,000.2	증)0.1	10,000.3	인고2015-320 (15.11.30)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학교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1	인천대	위치 주소 및 면적 변경(감 190.2)	확정측량 결과 반영
2	청운대	위치 주소 변경	확정측량 결과 반영
3	서화초교	위치 주소 및 면적 변경(증 193.0)	확정측량 결과 반영
4	비즈니스고교	위치 주소 및 면적 변경(증 0.4)	확정측량 결과 반영
5	유치원	위치 주소 및 면적 변경(증 0.1)	확정측량 결과 반영
6	유치원	위치 주소 변경	확정측량 결과 반영
7	특수학교	위치 주소 및 면적 변경(증 0.1)	확정측량 결과 반영

나) 공공청사(변경)

■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	-	32,606.5	증)9.4	32,615.9	-	
변경	1	공공청사	복합청사	도화동 805번지 일원	도화동 992-3번지	1,174.7	-	1,174.7	인고2009-385 (09.12.14)	쑥골어린이 도서관 (존치)
변경	2	공공청사	주민센터	도화동 64-7번지 일원	도화동 1011-1번지	1,131.3	증)0.1	1,131.4	인고2009-385 (09.12.14)	도화2,3동 주민센터
변경	3	공공청사	복합청사	도화동 77-7번지 일원	도화동 1000번지	9,000.0	-	9,000.0	인고2012-8 (12.1.16)	행정타운 및 JST
변경	4	공공청사	합동청사	도화동 76-4번지 일원	도화동 1001번지	20,000.2	증)9.2	20,009.4	인고2013-173 (13.11.4)	인천지방 합동청사
변경	5	공공청사	지구대	도화동 156-1번지 일원	도화동 997-6번지	1,300.3	증)0.1	1,300.4	인고2015-320 (15.11.30)	도화 지구대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1	공공청사	위치 주소 변경	확정측량 결과 반영
2	공공청사	위치 주소 및 면적 변경(증 0.1)	확정측량 결과 반영
3	공공청사	위치 주소 변경	확정측량 결과 반영
4	공공청사	위치 주소 및 면적 변경(증 9.2)	확정측량 결과 반영
5	공공청사	위치 주소 및 면적 변경(증 0.1)	확정측량 결과 반영

○ 방재시설(변경)

가) 우수지

■ 저류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	-	3,992	-	3,992	-	
변경	1	우수지	저류 시설	도화동 806-2번지 일원	도화동 986-3번지	3,992	-	3,992	인고2009-385 (09.12.14)	문화공원1 (3,992m ²)과 중복결정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1	우수지	위치 주소 변경	확정측량 결과 반영

마.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문(변경)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번호		위치		면적(m ²)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1	41,877.0	41,866.4	①	①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833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85-1번지	13,985.1	13,987.8	물류·유통시설
				②	②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834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85-2번지	7,264.3	7,265.8	물류·유통시설
				③	③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835-1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85-3번지	8,992.7	8,995.9	물류·유통시설
				④	④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837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85-4번지	7,011.2	7,012.2	물류·유통시설
				⑤	⑤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835-1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85-5번지, 985-9번지	2,372.2	2,353.2	완충녹지
				⑥	⑥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872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85-6번지	923.4	926.8	완충녹지
				⑦	⑦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837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85-7번지	875.2	871.7	완충녹지
				⑧	⑧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836-1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85-8번지	452.9	453.0	완충녹지
-	2	36,406.5	36,408.3	①	①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806-2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86-3번지	10,598.0	10,598.6	문화공원 (저류시설과 중복결정)
				②	②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806-2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87-1번지	618.6	618.7	완충녹지
				③	③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806-2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87번지	16,774.1	16,774.7	공동주택용지
				④	④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798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87-2번지	1,579.3	1,579.3	완충녹지
				⑤	⑤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788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87-3번지	3,441.1	3,441.3	어린이공원
				⑥	⑥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787-1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87-4번지	1,079.1	1,079.2	종교시설
				⑦	⑦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806-2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86-1번지	912.2	912.4	주유소
				⑧	⑧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806-2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86-2번지	1,404.1	1,404.1	주차장
-	3	1,826.4	1,832.6	①	①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806-2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90-1번지	334.6	340.9	단독주택용지
				②	②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806-2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90-2번지	340.9	340.8	단독주택용지
				③	③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806-2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90-3번지	301.3	301.3	단독주택용지
				④	④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806-2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90-4번지	299.9	299.9	단독주택용지
				⑤	⑤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806-2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90-5번지	279.0	279.0	단독주택용지
				⑥	⑥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806-2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90-6번지	270.7	270.7	단독주택용지
-	4	2,575.2	2,575.2	①	①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806-2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89-1번지	295.2	295.2	단독주택용지
				②	②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806-2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89-2번지	301.5	301.5	단독주택용지
				③	③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806-2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89-3번지	322.3	322.3	단독주택용지
				④	④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806-2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89-4번지	257.0	257.0	단독주택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번호		위치		면적(m ²)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4	2,575.2	2,575.2	⑤	⑤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806-2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89-5번지	248.2	248.2	단독주택용지
				⑥	⑥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806-2번지 일원	인천광 미추홀구 도화동 989-6번지	261.9	261.9	단독주택용지
				⑦	⑦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851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89-7번지	303.5	303.5	단독주택용지
				⑧	⑧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806-2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89-8번지	290.4	290.4	단독주택용지
				⑨	⑨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806-2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89-9번지	295.2	295.2	단독주택용지
-	5	873.2	872.0	①	①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851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91번지	873.2	872.0	주차장
-	6	6,180.5	6,180.6	①	①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846-1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92-1번지	991.5	991.5	근린생활시설
				②	②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851-2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92-7번지	641.0	641.0	근린생활시설
				③	③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850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92-6번지	660.5	660.5	근린생활시설
				④	④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849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92-5번지	658.1	658.1	근린생활시설
				⑤	⑤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847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92-2번지	959.8	959.8	근린생활시설
				⑥	⑥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805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92-3번지	1,174.7	1,174.7	공공청사 (숙골어린이 도서관)
				⑦	⑦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804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92-4번지	1,094.9	1,095.0	근린생활시설
-	7	92,148.8	92,165.4	①	①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49-7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008번지	18,378.2	18,378.3	공동주택용지 (공공임대)
				②	②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60-1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009번지	46,308.8	46,320.0	공동주택용지
				③	③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43-21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008-1번지	6,681.6	6,683.3	완충녹지
				④	④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43-7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009-1번지	4,176.9	4,179.9	연결녹지
				⑤	⑤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43-24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010번지	15,269.0	15,269.4	학교 (인천비즈니스 고교)
				⑥	⑥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62-17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010-1번지	662.1	676.5	완충녹지
				⑦	⑦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63-2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010-3번지	672.2	658.0	완충녹지
-	8	94,139.5	94,168.8	①	①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56-2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99번지	3,742.9	3,743.0	업무시설
				②	②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61-1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99-1번지	2,000.0	2,000.2	주차장
				③	③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217-1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000번지	9,000.0	9,000.0	공공청사 (행정타운및 JT)
				④	④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76-4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001번지	20,000.2	20,009.4	공공청사 (인천지방 합동청사)
				⑤	⑤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72-21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002번지	16,406.8	16,409.9	상업시설 (주거복합)
				⑥	⑥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255-1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012번지	4,512.9	4,512.1	근린광장 (쑥골광장)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적(m ²)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8	94,139.5	94,168.8	㉓	㉓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67-8번지 일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1011번지	36,555.3	36,570.2	상업시설 (주거복합)
				㉔	㉔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63-11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011-1번지	1,131.3	1,131.4	공공청사 (도화2,3동주민센터)
				㉕	㉕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63-17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011-2번지	790.1	792.6	종교시설
-	9	57,500.0	57,500.0	㉖	㉖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74-1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74-5번지 일원	57,500.0	57,500.0	학교 (청운대:준치)
-	10	221,489.0	221,495.8	㉗	㉗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96-3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95번지	221,489.0	221,298.8	학교 (인천대)
				-	㉘	-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96번지	-	197.0	공공공지(신설)
-	11	7,728.3	7,728.7	㉙	㉙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68-1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97-1번지	660.7	660.8	근린생활시설
				㉚	㉚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66-1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97-2번지	646.1	646.1	근린생활시설
				㉛	㉛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65-2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97-3번지	646.1	646.1	근린생활시설
				㉜	㉜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55-1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97-4번지	646.1	646.1	근린생활시설
				㉝	㉝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57-4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97-5번지	1,172.6	1,172.7	근린생활시설
				㉞	㉞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67-2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97-10번지	657.5	657.5	근린생활시설
				㉟	㉟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67-1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97-9번지	645.6	645.6	근린생활시설
				㊱	㊱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66-10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97-8번지	646.5	646.5	근린생활시설
				㊲	㊲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65-6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97-7번지	706.8	706.9	근린생활시설
				㊳	㊳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56-1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97-6번지	1,300.3	1,300.4	공공청사 (도화지구대)
-	12	8,098.2	8,098.5	㊴	㊴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39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98-1번지	1,669.3	1,669.3	주차장
				㊵	㊵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22-36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98-2번지	2,084.9	2,085.1	근린생활시설
				㊶	㊶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37-36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98-3번지	1,222.2	1,222.2	근린생활시설
				㊷	㊷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38-1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98-6번지	835.9	835.9	근린생활시설
				㊸	㊸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22-59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98-5번지	838.4	838.5	근린생활시설
				㊹	㊹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37-14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98-4번지	1,447.5	1,447.5	근린생활시설
-	13	1,877.2	1,877.4	㊺	㊺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18-7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006-6번지	625.0	625.2	근린생활시설
				㊻	㊻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18-24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006-7번지	625.0	625.0	근린생활시설
				㊼	㊼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18-16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006-8번지	627.2	627.2	근린생활시설
-	14	2,863.4	2,863.4	㊽	㊽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43-11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006-1번지	938.4	938.4	주차장
				㊾	㊾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42-1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006-2번지	650.0	650.0	근린생활시설
				㊿	㊿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42-1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006-3번지	650.0	650.0	근린생활시설
				㋀	㋀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18-1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006-4번지	625.0	625.0	근린생활시설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적(m ²)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15	46,921.4	46,943.9	①	①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43-15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007번지	21,090.0	21,090.1	공동주택용지
				②	②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43-7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007-1번지	990.0	990.0	유치원
				③	③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64-1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007-3번지	20,181.3	20,176.3	근린공원
				④	④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12-9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007-4번지	4,164.3	4,191.7	연결녹지
				⑤	⑤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43-7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007-2번지	495.8	495.8	노유자시설
-	16	1,516.7	1,516.7	①	①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43-10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005-5번지	762.7	762.7	근린생활시설
				②	②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43-10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005-6번지	754.0	754.0	근린생활시설
-	17	2,469.8	2,470.1	①	①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44-2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005-1번지	969.4	969.5	유치원
				②	②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44-4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005-2번지	750.2	750.3	근린생활시설
				③	③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43-8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005-3번지	750.2	750.3	근린생활시설
-	18	73,434.5	73,513.3	①	①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47-21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003번지	18,932.5	19,125.5	학교 (서화초)
				②	②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47-30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003-2번지	5,921.5	5,813.7	어린이공원
				③	③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43-7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004-1번지	7,496.1	7,483.5	연결녹지
				④	④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45-1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004번지	38,863.9	38,864.4	공동주택용지
				⑤	⑤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45-6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003-3번지	1,764.6	1,771.0	연결녹지
				⑥	⑥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43-7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003-1번지	455.9	455.2	경관녹지
-	19	45,677.2	45,684.1	①	①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23-16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93번지	18,925.8	18,926.3	공동주택용지 (국민임대)
				②	②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35-3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94-1번지	14,746.2	14,749.5	근린공원
				③	③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38-20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94번지	10,000.2	10,000.3	학교 (특수학교)
				④	④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33-15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93-2번지, 993-3번지	2,005.1	2,008.0	완충녹지
-	20	3,644.1	3,644.2	①	①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806-2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88번지	3,644.1	3,644.4	어린이공원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변경 내용	변경 사유
1 - ①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85-1번지	위치 주소 및 면적 변경(증 2.7)	• 확정측량 결과 반영
1 - ②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85-2번지	위치 주소 및 면적 변경(증 1.5)	• 확정측량 결과 반영
1 - ③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85-3번지	위치 주소 및 면적 변경(증 3.2)	• 확정측량 결과 반영
1 - ④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85-4번지	위치 주소 및 면적 변경(증 1.0)	• 확정측량 결과 반영
1 - ⑤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85-5번지, 985-9번지	위치 주소 및 면적 변경(감 19.0)	• 확정측량 결과 반영
1 - ⑥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85-6번지	위치 주소 및 면적 변경(증 3.4)	• 확정측량 결과 반영
1 - ⑦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85-7번지	위치 주소 및 면적 변경(감 3.5)	• 확정측량 결과 반영
1 - ⑧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85-8번지	위치 주소 및 면적 변경(증 0.1)	• 확정측량 결과 반영
2 - ①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86-3번지	위치 주소 및 면적 변경(증 0.6)	• 확정측량 결과 반영
2 - ②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87-1번지	위치 주소 및 면적 변경(증 0.1)	• 확정측량 결과 반영
2 - ③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87번지	위치 주소 및 면적 변경(증 0.6)	• 확정측량 결과 반영
2 - ④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87-2번지	위치 주소 변경	• 확정측량 결과 반영
2 - ⑤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87-3번지	위치 주소 및 면적 변경(증 0.2)	• 확정측량 결과 반영
2 - ⑥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87-4번지	위치 주소 및 면적 변경(증 0.1)	• 확정측량 결과 반영
2 - ⑦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86-1번지	위치 주소 및 면적 변경(증 0.2)	• 확정측량 결과 반영
2 - ⑧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86-2번지	위치 주소 변경	• 확정측량 결과 반영
3 - ①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90-1번지	위치 주소 및 면적 변경(증 6.3)	• 확정측량 결과 반영
3 - ②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90-2번지	위치 주소 및 면적 변경(감 0.1)	• 확정측량 결과 반영
3 - ③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90-3번지	위치 주소 변경	• 확정측량 결과 반영
3 - ④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90-4번지	위치 주소 변경	• 확정측량 결과 반영
3 - ⑤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90-5번지	위치 주소 변경	• 확정측량 결과 반영
3 - ⑥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90-6번지	위치 주소 변경	• 확정측량 결과 반영
4 - ①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89-1번지	위치 주소 변경	• 확정측량 결과 반영
4 - ②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89-2번지	위치 주소 변경	• 확정측량 결과 반영
4 - ③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89-3번지	위치 주소 변경	• 확정측량 결과 반영
4 - ④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89-4번지	위치 주소 변경	• 확정측량 결과 반영
4 - ⑤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89-5번지	위치 주소 변경	• 확정측량 결과 반영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변경 내용	변경 사유
4 - 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989-6번지	위치 주소 변경	• 확정측량 결과 반영
4 - ⑦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989-7번지	위치 주소 변경	• 확정측량 결과 반영
4 - ⑧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989-8번지	위치 주소 변경	• 확정측량 결과 반영
4 - 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989-9번지	위치 주소 변경	• 확정측량 결과 반영
5 -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991번지	위치 주소 및 면적 변경(감 1.2)	• 확정측량 결과 반영
6 -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992-1번지	위치 주소 변경	• 확정측량 결과 반영
6 - ②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992-7번지	위치 주소 변경	• 확정측량 결과 반영
6 - ③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992-6번지	위치 주소 변경	• 확정측량 결과 반영
6 - ④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992-5번지	위치 주소 변경	• 확정측량 결과 반영
6 - 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992-2번지	위치 주소 변경	• 확정측량 결과 반영
6 - 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992-3번지	위치 주소 변경	• 확정측량 결과 반영
6 - ⑦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992-4번지	위치 주소 및 면적 변경(증 0.1)	• 확정측량 결과 반영
7 -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1008번지	위치 주소 및 면적 변경(증 0.1)	• 확정측량 결과 반영
7 - ②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1009번지	위치 주소 및 면적 변경(증 11.2)	• 확정측량 결과 반영
7 - ③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1008-1번지	위치 주소 및 면적 변경(증 1.7)	• 확정측량 결과 반영
7 - ④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1009-1번지	위치 주소 및 면적 변경(증 3.0)	• 확정측량 결과 반영
7 - 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1010번지	위치 주소 및 면적 변경(증 0.4)	• 확정측량 결과 반영
7 - 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1010-1번지	위치 주소 및 면적 변경(증 14.4)	• 확정측량 결과 반영 • 도로(소로3-도화-b) 선형 변경에 따른 형상 변경
7 - ⑦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1010-3번지	위치 주소 및 면적 변경(감 14.2)	• 확정측량 결과 반영 • 도로(소로3-도화-b) 선형 변경에 따른 형상 변경
8 -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999번지	위치 주소 및 면적 변경(증 0.1)	• 확정측량 결과 반영
8 - ②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999-1번지	위치 주소 및 면적 변경(증 0.2)	• 확정측량 결과 반영
8 - ③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1000번지	위치 주소 변경	• 확정측량 결과 반영
8 - ④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1001번지	위치 주소 및 면적 변경(증 9.2)	• 확정측량 결과 반영
8 - 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1002번지	위치 주소 및 면적 변경(증 3.1)	• 확정측량 결과 반영
8 - 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1012번지	위치 주소 및 면적 변경(감 0.8)	• 확정측량 결과 반영
8 - ⑦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1011번지	위치 주소 및 면적 변경(증 14.9)	• 확정측량 결과 반영
8 - 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1011-1번지	위치 주소 및 면적 변경(증 0.1)	• 확정측량 결과 반영
8 - 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1011-2번지	위치 주소 및 면적 변경(증 2.5)	• 확정측량 결과 반영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변경 내용	변경 사유
9 - ①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74-5번지 일원	위치 주소 변경	• 확정측량 결과 반영
10 - ①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95번지	위치 주소 및 면적 변경(감 190.2)	• 확정측량 결과 반영
10 - ②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96번지	신규결정(면적 : 197.0m ²)	• 비점오염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주민의 일시적 휴식 공간 확보를 위하여 신설
11 - ①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97-1번지	위치 주소 및 면적 변경(증 0.1)	• 확정측량 결과 반영
11 - ②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97-2번지	위치 주소 변경	• 확정측량 결과 반영
11 - ③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97-3번지	위치 주소 변경	• 확정측량 결과 반영
11 - ④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97-4번지	위치 주소 변경	• 확정측량 결과 반영
11 - ⑤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97-5번지	위치 주소 및 면적 변경(증 0.1)	• 확정측량 결과 반영
11 - ⑥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97-10번지	위치 주소 변경	• 확정측량 결과 반영
11 - ⑦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97-9번지	위치 주소 변경	• 확정측량 결과 반영
11 - ⑧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97-8번지	위치 주소 변경	• 확정측량 결과 반영
11 - ⑨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97-7번지	위치 주소 및 면적 변경(증 0.1)	• 확정측량 결과 반영
11 - ⑩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97-6번지	위치 주소 및 면적 변경(증 0.1)	• 확정측량 결과 반영
12 - ①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98-1번지	위치 주소 변경	• 확정측량 결과 반영
12 - ③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98-2번지	위치 주소 및 면적 변경(증 0.2)	• 확정측량 결과 반영
12 - ④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98-3번지	위치 주소 변경	• 확정측량 결과 반영
12 - ⑤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98-6번지	위치 주소 변경	• 확정측량 결과 반영
12 - ⑥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98-5번지	위치 주소 및 면적 변경(증 0.1)	• 확정측량 결과 반영
12 - ⑧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98-4번지	위치 주소 변경	• 확정측량 결과 반영
13 - ①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006-6번지	위치 주소 및 면적 변경(증 0.2)	• 확정측량 결과 반영
13 - ②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006-7번지	위치 주소 변경	• 확정측량 결과 반영
13 - ③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006-8번지	위치 주소 변경	• 확정측량 결과 반영
14 - ①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006-1번지	위치 주소 변경	• 확정측량 결과 반영
14 - ②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006-2번지	위치 주소 변경	• 확정측량 결과 반영
14 - ③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006-3번지	위치 주소 변경	• 확정측량 결과 반영
14 - ④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006-4번지	위치 주소 변경	• 확정측량 결과 반영
15 - ①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007번지	위치 주소 및 면적 변경(증 0.1)	• 확정측량 결과 반영
15 - ②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007-1번지	위치 주소 변경	• 확정측량 결과 반영
15 - ③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007-3번지	위치 주소 및 면적 변경(감 5.0)	• 확정측량 결과 반영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변경 내용	변경 사유
15 - ④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007-4번지	위치 주소 및 면적 변경(증 27.4)	• 확정측량 결과 반영 • 도로(대로3-9) 선형 변경에 따른 형상 변경
15 - ⑤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007-2번지	위치 주소 변경	• 확정측량 결과 반영
16 - ①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005-5번지	위치 주소 변경	• 확정측량 결과 반영
16 - ②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005-6번지	위치 주소 변경	• 확정측량 결과 반영
17 - ①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005-1번지	위치 주소 및 면적 변경(증 0.1)	• 확정측량 결과 반영
17 - ②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005-2번지	위치 주소 및 면적 변경(증 0.1)	• 확정측량 결과 반영
17 - ③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005-3번지	위치 주소 및 면적 변경(증 0.1)	• 확정측량 결과 반영
18 - ①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003번지	위치 주소 및 면적 변경(증 193.0)	• 확정측량 결과 반영
18 - ②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003-2번지	위치 주소 및 면적 변경(감 107.8)	• 확정측량 결과 반영
18 - ③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004-1번지	위치 주소 및 면적 변경(감 12.6)	• 확정측량 결과 반영
18 - ④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004번지	위치 주소 및 면적 변경(증 0.5)	• 확정측량 결과 반영
18 - ⑤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003-3번지	위치 주소 및 면적 변경(증 6.4)	• 확정측량 결과 반영
18 - ⑥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003-1번지	위치 주소 및 면적 변경(감 0.7)	• 확정측량 결과 반영
19 - ①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93번지	위치 주소 및 면적 변경(증 0.5)	• 확정측량 결과 반영
19 - ②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94-1번지	위치 주소 및 면적 변경(증 3.3)	• 확정측량 결과 반영
19 - ③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94번지	위치 주소 및 면적 변경(증 0.1)	• 확정측량 결과 반영
19 - ④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93-2번지, 993-3번지	위치 주소 및 면적 변경(증 2.9)	• 확정측량 결과 반영
20 - ①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88번지	위치 주소 및 면적 변경(증 0.3)	• 확정측량 결과 반영

○ 건축물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변경 없음)

가) 건축물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① 공동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가구 번호	획지 번호					
-	2	③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건 폐 율		20% 이하		
			용적률		기정	180% 이하	
					변경	250% 이하	
			높 이		30층 이하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변에 접한 공동주택은 소음에 의한 영향이 저감될 수 있도록 배치계획 수립 •단지의 개방감 확보와 각 세대 간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한 주동의 배치를 하여야 하며(개방감, 프라이버시 확보가 가능한 배치 계획일 경우 제외), 주동의 향은 채광·일조·통풍을 최대한 고려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주택의 입면은 색채, 창호의 배열 및 형태, 발코니, 마감재료 등을 다양화하여 지상부(1~5층구간내), 중간부, 상층부(최상층 1~5층 구간 내)를 구분한 입면변화 권장 •필로티 조성 시, 필로티 구조는 휴식공간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시각적 개방감 확보 및 오픈스페이스의 연결 권장 •공동주택의 지붕은 블록별로 통일성을 고려하고, 주변 경관에 특징 및 특성을 고려하며 주동입면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어린이 공원 및 문화공원에서의 조망을 고려하여 건축물 배치 및 형태 계획 •(기정)도시형 생활주택과 인접한 공동주택이 급격한 경관변화로 인한 이질적 느낌이 들지 않도록 배치와 건축형태 고려 •(변경)단독주택지와 인접한 공동주택이 급격한 경관변화로 인한 이질적 느낌이 들지 않도록 배치와 건축형태 고려 •(신설)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비공간 확보 		
			색 채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을 따름		
			건 축 선		-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가구 번호	획지 번호			
-	7	①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건 폐 율	2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높 이	30층 이하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변에 접한 공동주택은 소음에 의한 영향이 저감될 수 있도록 배치계획 수립 •단지의 개방감 확보와 각 세대 간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한 주동의 배치를 하여야 하며(개방감, 프라이버시 확보가 가능한 배치 계획일 경우 제외), 주동의 향은 채광·일조·통풍을 최대한 고려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주택의 입면은 색채, 창호의 배열 및 형태, 발코니, 마감재료 등을 다양화하여 지상부(1~5층구간내), 중간부, 상층부(최상층 1~5층 구간 내)를 구분한 입면변화 권장 •필로티 조성 시, 필로티 구조는 휴식공간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시각적 개방감 확보 및 오픈스페이스의 연결 권장 •공동주택의 지붕은 블록별로 통일성을 고려하고, 주변 경관에 특징 및 특성을 고려하며 주동입면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조망통제점(인천교삼거리, 동구구민운동장)에서의 시물레이션 분석을 통해 공동주택의 스카이라인 및 입면부 지붕형태 등 검토 공동주택 심의·자문 시 시물레이션 기준점으로 활용) •도로선형에 의해 시각적 민감지역이 형성되는 구간은 답상형 배치나 랜드마크 등으로 설정하여 건축물 입면을 특화할 수 있도록 한다. •Ⅶ-②와 이질적인 느낌이 들지 않도록 형태적 공간적 맥락 형성 •(신설)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비공간 확보 	
			색 채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을 따름	
			건 축 선	-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가구 번호	획지 번호			
-	7	②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건 폐 율	2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높 이	30층 이하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변에 접한 공동주택은 소음에 의한 영향이 저감될 수 있도록 배치계획 수립 •단지의 개방감 확보와 각 세대 간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한 주동의 배치를 하여야 하며(개방감, 프라이버시 확보가 가능한 배치 계획일 경우 제외), 주동의 향은 채광·일조·통풍을 최대한 고려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주택의 입면은 색채, 창호의 배열 및 형태, 발코니, 마감재료 등을 다양화하여 지상부(1~5층구간내), 중간부, 상층부(최상층 1~5층 구간내)를 구분한 입면 변화 권장 •필로티 조성 시, 필로티 구조는 휴식공간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시각적 개방감 확보 및 오픈스페이스의 연결 권장 •공동주택의 지붕은 블록별로 통일성을 고려하고, 주변 경관에 특징 및 특성을 고려하며 주동입면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조망통제점(인천교삼거리, 동구구민운동장)에서의 시물레이션 분석을 통해 공동주택의 스카이라인 및 입면부 지붕형태 등 검토 공동주택 심의·자문 시 시물레이션 기준점으로 활용) •도로선형에 의해 시각적 민감지역이 형성되는 구간은 탑상형 배치나 랜드마크 등으로 설정하여 건축물 입면을 특화할 수 있도록 한다. •Ⅶ-①와 이질적인 느낌이 들지 않도록 형태적 공간적 맥락 형성 •(신설)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비공간 확보 	
			색 채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을 따름	
			건 축 선	-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가구 번호	획지 번호			
-	15	①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건 폐 율	20% 이하	
			용 적 률	230% 이하	
			높 이	30층 이하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변에 접한 공동주택은 소음에 의한 영향이 저감될 수 있도록 배치계획 수립 •단지의 개방감 확보와 각 세대 간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한 주동의 배치를 하여야 하며(개방감, 프라이버시 확보가 가능한 배치 계획일 경우 제외), 주동의 향은 채광·일조·통풍을 최대한 고려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주택의 입면은 색채, 창호의 배열 및 형태, 발코니, 마감재료 등을 다양화하여 지상부(1~5층구간내), 중간부, 상층부(최상층 1~5층 구간 내)를 구분한 입면변화 권장 •필로티 조성 시, 필로티 구조는 휴식공간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시각적 개방감 확보 및 오픈스페이스의 연결 권장 •공동주택의 지붕은 블록별로 통일성을 고려하고, 주변 경관에 특징 및 특성을 고려하며 주동입면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연결녹지와 인접한 공동주택은 필로티 구조를 통해 보행자와의 연계성 고려 •공원, 학교와 인접한 곳은 위압적 경관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치 및 건축물 형태 계획 •(신설)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비공간 확보 	
			색 채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을 따름	
			건 축 선	-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가구 번호	획지 번호			
-	18	4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건 폐 율	2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높 이	30층 이하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변에 접한 공동주택은 소음에 의한 영향이 저감될 수 있도록 배치계획 수립 •단지의 개방감 확보와 각 세대 간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한 주동의 배치를 하여야 하며(개방감, 프라이버시 확보가 가능한 배치 계획일 경우 제외), 주동의 향은 채광·일조·통풍을 최대한 고려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주택의 입면은 색채, 창호의 배열 및 형태, 발코니, 마감재료 등을 다양화하여 지상부(1~5층구간내), 중간부, 상층부(최상층 1~5층 구간 내)를 구분한 입면변화 권장 •필로티 조성 시, 필로티 구조는 휴식공간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시각적 개방감 확보 및 오픈스페이스의 연결 권장 •공동주택의 지붕은 블록별로 통일성을 고려하고, 주변 경관에 특징 및 특성을 고려하며 주동입면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연결녹지와 인접한 공동주택은 필로티 구조를 통해 보행자와의 연계성 고려 •공원, 학교와 인접한 곳은 위압적 경관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치 및 건축물 형태 계획 •(신설)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비공간 확보 	
			색 채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을 따름	
건 축 선	-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가구 번호	획지 번호			
-	19	①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건 폐 율	20% 이하	
			용 적 륜	180% 이하	
			높 이	30층 이하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변에 접한 공동주택은 소음에 의한 영향이 저감될 수 있도록 배치계획 수립 •단지의 개방감 확보와 각 세대 간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한 주동의 배치를 하여야 하며(개방감, 프라이버시 확보가 가능한 배치 계획일 경우 제외), 주동의 향은 채광·일조·통풍을 최대한 고려 •숙골로, 학교시설 등 보행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공간에 생활편의시설을 배치하여 단지 내의 주민 이용 및 단지외부의 이용도 가능하도록 하여 단지의 폐쇄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배치 •학교와 인접한 곳은 위압적 경관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쇄적인 단지형 배치 지양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주택의 입면은 색채, 창호의 배열 및 형태, 발코니, 마감재료 등을 다양화하여 지상부(1~5층구간내), 중간부, 상층부(최상층 1~5층 구간내)를 구분한 입면 변화 권장 •필로티 조성 시, 필로티 구조는 휴식공간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시각적 개방감 확보 및 오픈스페이스의 연결 권장 •공동주택의 지붕은 블록별로 통일성을 고려하고, 주변 경관에 특징 및 특성을 고려하며 주동입면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조망통계점(송림삼거리)에서의 시물레이션 분석을 통해 공동주택의 스카이라인 및 입면부 지붕형태 등 검토 (공동주택 심의·자문 시 시물레이션 기준점으로 활용)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비공간 확보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을 따름 	
			건 축 선	-	

② 단독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가구 번호	획지 번호			
-	3	1 2 3 4 5 6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독주택(필지당 5가구 이하에 한함, 다중주택 제외) •점포주택(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바목 내지 하목) •지하층은 주거용도 불허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150% 이하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층 이하(1층을 필로티 계획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4층 가능)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라이버시 침해나 밀폐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향과 위치를 다양화하여 배치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주택이라 함은 건물의 일부를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으로서, 근린생활시설 용도로의 사용은 1층과 지하층에 한한다. -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총 연면적(지하포함)의 40%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다. •부속시설(물탱크, 냉난방시설)의 외부 노출은 금지하고, 냉난방시설의 실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설계에 포함 •담장 : 1.0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지붕 및 옥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 평지붕은 옥상녹화시 허용 - 경사지붕의 구배는 세로 : 가로 비율이 1 : 1 ~ 1 : 3 이 되도록 한다. - 단독주택용지의 점포주택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될 경우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광고돌출물, 철탑 등) 높이는 4.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벽면과 지붕의 재료 및 색채는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하되,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 및 형광색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단, 자연재료 및 벽돌, 석재 타일 등 자체색은 그대로 적용한다.) •외장재는 목재, 벽돌 등 자연친화형 재료를 권장하며 재료 본연의 색채와 소재감을 그대로 적용한다. 	
			건 축 선	-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가구 번호	획지 번호			
-	4	1 2 3 4 5 6 7 8 9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독주택(필지당 5가구 이하에 한함, 다중주택 제외) •점포주택(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바목 내지 하목) •지하층은 주거용도 불허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륜		150% 이하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층 이하(1층을 필로티 계획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4층 가능)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라이버시 침해나 밀폐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향과 위치를 다양화하여 배치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주택이라 함은 건물의 일부를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으로서, 근린생활시설 용도로의 사용은 1층과 지하층에 한한다. -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총 연면적(지하포함)의 40%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다. •부속시설(물탱크, 냉난방시설)의 외부 노출은 금지하고, 냉난방시설의 실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설계에 포함 •담장 : 1.0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지붕 및 옥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 평지붕은 옥상녹화시 허용 - 경사지붕의 구배는 세로 : 가로의 비율이 1:1 ~ 1:3 이 되도록 한다. - 단독주택용지의 점포주택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될 경우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광고돌출물, 철탑 등) 높이는 4.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벽면과 지붕의 재료 및 색채는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하되,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 및 형광색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단, 자연재료 및 벽돌, 석재 타일 등 자재색은 그대로 적용한다.) •외장재는 목재, 벽돌 등 자연친화형 재료를 권장하며 재료 본연의 색채와 소재감을 그대로 적용한다.
			건 축 선		-

③ 상업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가구 번호	획지 번호			
-	8	[5] [7]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9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38조의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에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90% 미만인 것,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장의사 제외),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소,격리병원,장례식장 제외),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건 폐 율	40% 이하(주거복합)	
			용 적 률	440% 이하(주거복합)	
			높 이	75층 이하(주거복합)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라이버시 침해나 밀폐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향과 위치를 다양화하여 배치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화구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징적인 건축물 디자인 형태를 고려하도록 한다. •대형건축물 형성을 고려하여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 등 건축물 층수 및 건축물 배치동에 따라 다양한 입면을 구성하여 휴먼스케일에 맞도록 한다. •도화오거리 결절부 공간을 고려하여 각 가로와 시각회랑축에서의 조망을 고려한 건축물 형태 및 입면을 계획하도록 한다. •광장과 인접한 상업시설은 개방적인 형태로 조성하여 광장과 적극적인 소통이 가능하도록 한다. •조망통제점(숙골고가교)에서의 시물레이션 분석을 통해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축물 외관 검토(공동주택 심의·자문 시 시물레이션 기준점으로 활용)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비공간 확보 	
			색 채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을 따름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별표2>를 따름	
			건 축 선	-	

④ 학교용지

■ 기타학교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획지번호			
-	7	⑤	용도	허용	•고등학교이하 각 급 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한 학교 및 그 부대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률	200% 이하	
			높 이	7층 이하	
			배 치	•대규모 하나의 건물보다 휴먼스케일을 고려하여 기능을 반영한 단위별 건물을 권장하고 건물을 연계하여 일체감 확보	
			형 태	•건축물 증축, 신축, 리모델링 시 개별적 건축물 형태는 지양하며 맥락성 있는 건축물 외관을 형성하여 전체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공간으로 조성 •권위적 형태의 좌우 대칭형 및 장방형 건축물 형태 지양	
			색 채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를 따름	
			건 축 선	-	
			-	18	①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률	200% 이하				
높 이	7층 이하				
배 치	•대규모 하나의 건물보다 휴먼스케일을 고려하여 기능을 반영한 단위별 건물을 권장하고 건물을 연계하여 일체감 확보				
형 태	•건축물 증축, 신축, 리모델링 시 개별적 건축물 형태는 지양하며 맥락성있는 건축물 외관을 형성하여 전체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공간으로 조성 •권위적 형태의 좌우 대칭형 및 장방형 건축물 형태 지양				
색 채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를 따름				
건 축 선	-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획진번호			
-	15	②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의한 보육시설 및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을 제외)으로서 건물연면적의 30%이하 범위 내(유치원을 건축하고 남은 면적)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률	200% 이하	
			높 이	7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를 따름 	
건 축 선	-				
-	17	①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의한 보육시설 및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을 제외)으로서 건물연면적의 30%이하 범위 내(유치원을 건축하고 남은 면적)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률	200% 이하	
			높 이	7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를 따름 	
건 축 선	-				

■ 특수학교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가구 번호	획지 번호			
-	19	③	용도	허용	•고등학교이하 각 급 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한 학교 및 그 부대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률		200% 이하
			높 이		7층 이하
			배 치		•대규모 하나의 건물보다 휴먼스케일을 고려하여 기능을 반영한 단위별 건물을 권장하고 건물을 연계하여 일체감 확보
			형 태		•개별적 건축물 형태는 지양하며 맥락성있는 건축물 외관을 형성하여 전체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공간으로 조성 •권위적 형태의 좌우 대칭형 및 장방형 건축물 형태 지양
			색 채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를 따름
			건 축 선		-

■ 인천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가구 번호	획지 번호			
-	10	①	용도	허용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대학), 업무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관람집회시설, 제1·2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률		200% 이하
			높 이		20층 이하
			배 치		•대규모 하나의 건물보다 휴먼스케일을 고려하여 기능을 반영한 단위별 건물을 권장하고 건물을 연계하여 일체감 확보
			형 태		•추후 개발 시 건축물의 역사성, 건축적 가치, 장소적 가치 등을 평가하여 보존 요소 등에 대해 검토 •건축물 증축, 신축, 리모델링 시 개별적 건축물 형태는 지양하며 맥락성 있는 건축물 외관을 형성하여 전체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공간으로 조성 •권위적 형태의 좌우 대칭형 및 장방형 건축물 형태 지양
			색 채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를 따름
			건 축 선		-

■ 청운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가구 번호	획지 번호			
-	9	①	용도	허용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대학), 업무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관람집회시설, 제1·2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30% 이하	
			용 적 른	200% 이하	
			높 이	12층 이하	
			배 치	•대규모 하나의 건물보다 휴먼스케일을 고려하여 기능을 반영한 단위별 건물을 권장하고 건물을 연계하여 일체감 확보	
			형 태	•건축물 증축, 신축, 리모델링 시 개별적 건축물 형태는 지양하며 맥락성 있는 건축물 외관을 형성하여 전체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공간으로 조성 •권위적 형태의 좌우 대칭형 및 장방형 건축물 형태 지양	
			색 채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을 따름	
			건 축 선	-	

⑤ 노유자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가구 번호	획지 번호			
-	15	⑤	용도	허용	•노유자시설중 아동관련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른	200% 이하	
			높 이	7층 이하	
			배 치	-	
			형 태	•권위적 형태의 좌우 대칭형 및 장방형 건축물 형태 지양	
			색 채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를 따름	
건 축 선	-				

⑥ 공공청사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가구 번호	획지 번호			
-	6	[6]	용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시설, 11호 노유자시설, 14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륜	200% 이하	
			높 이	7층 이하	
			배 치	-	
			형 태	●지역성과 공공적 가치를 지닌, 복합 커뮤니티 공간 조성 ●민원실과 휴게공간을 저층부에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도모 ●출입구에 과도한 광고 게시물 부착과 시설물 배치, 위압적인 캐노피나 계단식 출입구 지양	
			색 채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을 따름	
			건 축 선	-	
-	8	[3] [4]	용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4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및 일반업무시설, 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륜	500% 이하	
			높 이	15층 이하	
			배 치	-	
			형 태	●지역성과 공공적 가치를 지닌, 복합 커뮤니티 공간 조성 ●민원실과 휴게공간을 저층부에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도모 ●출입구에 과도한 광고 게시물 부착과 시설물 배치, 위압적인 캐노피나 계단식 출입구 지양	
			색 채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을 따름	
			건 축 선	-	
-	8	[9]	용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4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륜	200% 이하	
			높 이	7층 이하	
			배 치	-	
			형 태	●지역성과 공공적 가치를 지닌, 복합 커뮤니티 공간 조성 ●민원실과 휴게공간을 저층부에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도모 ●출입구에 과도한 광고 게시물 부착과 시설물 배치, 위압적인 캐노피나 계단식 출입구 지양	
			색 채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을 따름	
			건 축 선	-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가구 번호	획지 번호			
-	11	10	용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지구대시설, 14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률	200% 이하	
			높 이	7층 이하	
			배 치	-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성과 공공적 가치를 지닌 공간 조성 •민원실과 휴게공간을 저층부에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도모 •출입구에 과도한 광고 게시물 부착과 시설물 배치, 위압적인 캐노피나 계단식 출입구 지양 	
			색 채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을 따름	
			건 축 선	-	

⑦ 업무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가구 번호	획지 번호			
-	8	1	용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4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및 일반업무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률	500% 이하	
			높 이	15층 이하	
			배 치	-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성과 공공적 가치를 지닌, 복합 커뮤니티 공간 조성 •민원실과 휴게공간을 저층부에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도모 •출입구에 과도한 광고 게시물 부착과 시설물 배치, 위압적인 캐노피나 계단식 출입구 지양 	
			색 채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을 따름	
			건 축 선	-	

⑧ 주차장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 번호	획지 번호				
-	5	①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전용건물일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해 건축물 연면적 중 주차장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함. 다만, 주차장외 타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1,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한 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4항에서 규정하는 다음시설로서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30%미만에 한한다 관리사무소·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주차전용 건축물 설치시 지구단위 운영지침을 적용한다
				불허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륵	200% 이하		
			높 이	7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	8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륵	200% 이하					
높 이	7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 번호	획지 번호				
-	14	①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전용건물일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해 건축물 연면적 중 주차장 비율이 95%이상이어야함. 다만, 주차장의 타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1,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한 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4항에서 규정하는 다음시설로서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30%미만에 한한다 관리사무소·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주차전용 건축물 설치시 지구단위 운영지침을 적용한다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륵	200% 이하		
			높 이	7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	2	⑧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륵	200% 이하					
높 이	7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 번호	획지 번호				
-	12	①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전용건물일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해 건축물 연면적 중 주차장 비율이 95%이상이어야 함. 다만, 주차장의 타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1,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한 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4항에서 규정하는 다음시설로서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30%미만에 한한다 관리사무소·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주차전용 건축물 설치시 지구단위 운영지침을 적용한다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률	200% 이하		
			높 이	7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⑨ 저류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가구 번호	획지 번호			
-	2	①	용도	허용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118조의 우수지 중 저류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률	200% 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⑩ 기타용지

■ 근린생활시설 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가구 번호	획지 번호			
-	6	①~ ⑤⑦	용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담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높 이	7층 이하	
			배 치	•인접 건축물과 건축선을 조화롭게 계획하여 연속성 있는 정연한 가로경관 형성	
			형 태	•인접 건축물과 맥락성 있는 경관을 형성하도록 외관 형성 •저층부는 외벽면 투시율은 50%이상으로 하여 개방적이고 정돈된 입면 구성 •차양시설 설치 시 동일 건물 내 설치 위치, 모양, 색채 등이 통일감 형성	
			색 채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을 따름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별표2>를 따름	
			건 축 선	-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가구 번호	획지 번호			
-	11	① ~ ⑨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높 이	7층 이하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접 건축물과 건축선을 조화롭게 계획하여 연속성 있는 정연한 가로경관 형성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접 건축물과 맥락성 있는 경관을 형성하도록 외관 형성 ●저층부는 외벽면 투시율은 50%이상으로 하여 개방적이고 정돈된 입면 구성 ●차양시설 설치 시 동일 건물 내 설치 위치, 모양, 색채 등이 통일감 형성 ●보행자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테라스, 아케이드 등 개방적이고 특색 있는 외부공간 형성 권장 	
			색 채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을 따름	
			옥외광고물 건축 선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별표2>를 따름 -	
			-	12	③ ~ ⑧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높 이	7층 이하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접 건축물과 건축선을 조화롭게 계획하여 연속성 있는 정연한 가로경관 형성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접 건축물과 맥락성 있는 경관을 형성하도록 외관 형성 ●저층부는 외벽면 투시율은 50%이상으로 하여 개방적이고 정돈된 입면 구성 ●차양시설 설치 시 동일 건물 내 설치 위치, 모양, 색채 등이 통일감 형성 ●보행자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테라스, 아케이드 등 개방적이고 특색 있는 외부공간 형성 권장 				
색 채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을 따름				
옥외광고물 건축 선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별표2>를 따름 -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가구 번호	획지 번호			
-	13	① ~ ③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륜	250% 이하	
			높 이	7층 이하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접 건축물과 건축선을 조화롭게 계획하여 연속성 있는 정연한 가로경관 형성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접 건축물과 맥락성 있는 경관을 형성하도록 외관 형성 •저층부는 외벽면 투시율은 50%이상으로 하여 개방적이고 정돈된 입면 구성 •차양시설 설치 시 동일 건물 내 설치 위치, 모양, 색채 등이 통일감 형성 •보행자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테라스, 아케이드 등 개방적이고 특색 있는 외부공간 형성 권장 	
			색 채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을 따름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별표2>를 따름	
			건 축 선	-	
-	14	② ~ ④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륜	250% 이하	
			높 이	7층 이하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접 건축물과 건축선을 조화롭게 계획하여 연속성 있는 정연한 가로경관 형성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접 건축물과 맥락성 있는 경관을 형성하도록 외관 형성 •저층부는 외벽면 투시율은 50%이상으로 하여 개방적이고 정돈된 입면 구성 •차양시설 설치 시 동일 건물 내 설치 위치, 모양, 색채 등이 통일감 형성 •보행자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테라스, 아케이드 등 개방적이고 특색 있는 외부공간 형성 권장 	
			색 채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을 따름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별표2>를 따름	
			건 축 선	-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가구 번호	획지 번호			
-	16	① ②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륜	250% 이하	
			높 이	7층 이하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접 건축물과 건축선을 조화롭게 계획하여 연속성 있는 정연한 가로경관 형성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접 건축물과 맥락성 있는 경관을 형성하도록 외관 형성 ●저층부는 외벽면 투시율은 50%이상으로 하여 개방적이고 정돈된 입면 구성 ●차양시설 설치 시 동일 건물 내 설치 위치, 모양, 색채 등이 통일감 형성 ●보행자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테라스, 아케이드 등 개방적이고 특색 있는 외부공간 형성 권장 	
			색 채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을 따름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별표2>를 따름	
			건 축 선	-	
-	17	② ③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륜	250% 이하	
			높 이	7층 이하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접 건축물과 건축선을 조화롭게 계획하여 연속성 있는 정연한 가로경관 형성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접 건축물과 맥락성 있는 경관을 형성하도록 외관 형성 ●저층부는 외벽면 투시율은 50%이상으로 하여 개방적이고 정돈된 입면 구성 ●차양시설 설치 시 동일 건물 내 설치 위치, 모양, 색채 등이 통일감 형성 ●보행자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테라스, 아케이드 등 개방적이고 특색 있는 외부공간 형성 권장 	
			색 채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을 따름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별표2>를 따름	
			건 축 선	-	

■ 종교 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가구 번호	획지 번호			
-	2	[6]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제실,사당,봉안당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중 가목의 종교집회장 및 그 부속용도(목회자 숙소, 주차시설 등)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률	200% 이하	
			높 이	7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	8	[10]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제실,사당,봉안당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중 가목의 종교집회장 및 그 부속용도(목회자 숙소, 주차시설 등)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률	200% 이하	
			높 이	7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 주유소 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가구 번호	획지 번호			
-	2	[7]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및 그 부대시설(부대시설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 중 가목의 소매점,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목의 수리점) 단, 소방기준에 관한 규칙 제239조 제1항에 의거한 주유취급소의 부대시설은 허용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률	200% 이하	
			높 이	7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 물류유통시설 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가구 번호	획지 번호			
-	1	① ② ③ ④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게임제공업소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검사장, 매매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산업시설 •지식산업센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의한 제조업 (환경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첨단기술산업, 첨단업종, 도시형공장임),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그리고 지원시설이 복합된 집합건축물이며 동법 시행령 제4조의6의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집회장(마권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제외) ☑ 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교육원, 직업훈련소, 연구소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제외) ☑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소, 골프연습장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분별한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제한하기 위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부분 비율은 지상건축연면적의 30% 이하이며, 지상 2층 이하에 설치할 수 있음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륜	500% 이하	
			높 이	20층 이하	
			배 치	-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스형 매스를 지양하고 시각적 분절을 통하여 저층부는 휴먼스케일에 가까운 건축물 볼륨감 형성 •주변 여건을 반영하여 가로 및 건물 저층부 계획 •건축물 외벽의 재료와 색상은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및 벽면의 분절 등 입체적인 형태의 시각적 분절 유도 	
			색 채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을 따름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별표2>를 따름	
			건 축 선	-	

○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서(변경 없음)

가)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① 공동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가구 번호	획지 번호				
-	2	③	대지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내 공지의 조성 : 대지내 공지는 양호한 녹지와 연계하여 친환경적 단지를 조성 •진입부 공간 형성 시 과도한 디자인의 진입문주 설치는 지양하며 인접한 녹지 및 보도와 연계하여 공개공지 개념의 휴게공간 형태로 조성 		
			동선	차량 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출입 불허 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로 3-243호선변의 차량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보행 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내에 보행자를 위한 주보행통로(자전거도로 겸용)를 조성하고 동선의 원만한 소통을 위하여 주동의 필로티 및 부대복리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함 •단지내 주도로와 연결하여 보행통로를 함께 조성 •단지내 횡단보도는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를 일체화한 평단형 과속방지턱으로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함 •인접한 근린공원 및 학교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보행진출입로 형성
			주차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은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면수 확보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담장 또는 울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에 면한 담장 : 투시형 담장으로 블록 내부가 보일 수 있도록 하거나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2m 이하로 설치 • 보행자도로 및 공원·녹지에 면한 담장 : 생울타리로 하며, 높이는 1.2m 이하로 설치(단, 단지내 안전 및 보안을 위해 조경수목 및 낮은 담장 등으로 경계 구분)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가구 번호	획지 번호		
-	7	① ②	<p>대지내 공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내 공지 조성 : 대지내 공지는 양호한 녹지와 연계하여 친환경적 단지를 조성 •진입부 공간 형성 시 과도한 디자인의 진입문주 설치 지양하며 인접한 녹지 및 보도와 연계하여 공개공지 개념의 휴게공간 형태로 조성 	
			<p>차량 동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p>출입 불허 구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대로 3-9호선변의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p>동선</p> <p>보행 동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내에 보행자를 위한 주보행통로(자전거도로 겸용)를 조성하고 동선의 원만한 소통을 위하여 부대복리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함 •단지내 주도로와 연결하여 보행통로를 함께 조성 •단지내 횡단보도는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를 일체화한 평탄형 과속방지턱으로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함 •인접한 근린공원 및 학교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보행진출입로 형성 	
			<p>주차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은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면수 확보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p>담장 또는 울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에 면한 담장 : 투시형 담장으로 블록 내부가 보일 수 있도록 하거나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2m 이하로 설치 •보행자도로 및 공원·녹지에 면한 담장 : 생울타리로 하며, 높이는 1.2m 이하로 설치(단, 단지내 안전 및 보안을 위해 조경수목 및 낮은 담장 등으로 경계 구분)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방음벽이 설치될 경우 보도, 완충녹지, 공동주택 내 공공조경 및 차폐조경 공간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쾌적한 보행환경 및 가로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함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가구 번호	획지 번호		
-	15	①	<p>대지내 공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내 공지의 조성 : 대지내 공지는 양호한 녹지와 연계하여 친환경적 단지를 조성 •진입부 공간 형성 시 과도한 디자인의 진입문주 설치는 지양하며 인접한 녹지 및 보도와 연계하여 공개공지 개념의 휴게공간 형태로 조성 •연결녹지와 인접한 공동주택 내 공공조경에 식재되는 가로수는 이용자의 보행흐름을 유도하고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화목류 또는 교목이면서 수형, 그늘이 좋은 수종 식재 권장 	
			<p>차량 동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p>출입 불허 구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로 1-144호선변의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p>동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내에 보행자를 위한 주보행통로(자전거도로 겸용)를 조성하고 동선의 원만한 소통을 위하여 주동의 필로티 및 부대복리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함 •단지내 주도로와 연결하여 보행통로를 함께 조성 •단지내 횡단보도는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를 일체화한 평탄형 과속방지턱으로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함 •인접한 근린공원 및 학교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보행진출입로 형성 	
			<p>주차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은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면수 확보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p>담장 또는 울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에 면한 담장 : 투시형 담장으로 블록 내부가 보일 수 있도록 하거나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2m 이하로 설치 •보행자도로 및 공원·녹지에 면한 담장 : 생울타리로 하며, 높이는 1.2m 이하로 설치(단, 단지내 안전 및 보안을 위해 조경수목 및 낮은 담장 등으로 경계 구분)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가구 번호	획지 번호		
-	18	④	<p>대지내 공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내 공지의 조성 : 대지내 공지는 양호한 녹지와 연계하여 친환경적 단지를 조성 •진입부 공간 형성 시 과도한 디자인의 진입문주 설치하는 지양하며 인접한 녹지 및 보도와 연계하여 공개공지 개념의 휴게공간 형태로 조성 •연결녹지와 인접한 공동주택 내 공공조경에 식재되는 가로수는 이용자의 보행흐름을 유도하고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화목류 또는 교목이면서 수형, 그늘이 좋은 수종 식재 권장 	
			<p>차량 동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p>출입 불허 구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로 1-144호선변의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p>동선</p> <p>보행 동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내에 보행자를 위한 주보행통로(자전거도로 겸용)를 조성하고 동선의 원만한 소통을 위하여 부대복리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함 •단지내 주도로와 연결하여 보행통로를 함께 조성 •단지내 횡단보도는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를 일체화한 평탄형 과속방지턱으로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함 •인접한 근린공원 및 학교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보행진출입로 형성 	
			<p>주차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은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면수 확보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p>담장 또는 울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에 면한 담장 : 투시형 담장으로 블록 내부가 보일 수 있도록 하거나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2m 이하로 설치 •보행자도로 및 공원·녹지에 면한 담장 : 생울타리로 하며, 높이는 1.2m 이하로 설치(단, 단지내 안전 및 보안을 위해 조경수목 및 낮은 담장 등으로 경계 구분)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가구 번호	획지 번호		
-	19	①	<p>대지내 공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내 공지 조성 : 대지내 공지는 양호한 녹지와 연계하여 친환경적 단지를 조성 •진입부 공간 형성 시 과도한 디자인의 진입문주 설치하는 지양하며 인접한 녹지 및 보도와 연계하여 공개공지 개념의 휴게공간 형태로 조성 	
			<p>차량 동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p>출입 불허 구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대로 2-3호선변의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p>동선</p> <p>보행 동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내에 보행자를 위한 주보행통로(자전거도로 겸용)를 조성하고 동선의 원만한 소통을 위하여 주동의 필로티 및 부대복리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함 •단지내 주도로와 연결하여 보행통로를 함께 조성 •단지내 횡단보도는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를 일체화한 평탄형 과속방지턱으로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함 •인접한 근린공원 및 학교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보행진출입로 형성 	
			<p>주차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은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면수 확보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p>담장 또는 울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에 면한 담장 : 투시형 담장으로 블록 내부가 보일 수 있도록 하거나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2m 이하로 설치 •보행자도로 및 공원·녹지에 면한 담장 : 생울타리로 하며, 높이는 1.2m 이하로 설치(단, 단지내 안전 및 보안을 위해 조경수목 및 낮은 담장 등으로 경계 구분) 	

② 단독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가구 번호	획지 번호			
-	3	1~6	대지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독주택용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공조경 공간으로 조성한다. - 이면도로변의 건축한계선에는 교목 또는 관목(초화류)를 이용하여 식재공간으로 조성한다. •단독 및 점포주택용지의 건축한계선에는 일정면적 이상에 대하여 관목(초화류)을 이용하여 식재공간 또는 화분으로 조성한다. •조경기준은 인천시 건축조례에 정한 바에 따른다.
	4	1~9	동선	차량 동선	
			주차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지내로의 차량출입구는 차량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단독주택용지내 도로계획시 구역 외부 진입도로 등 주변도로와 연계하여 계획한다. •주거용도의 주차대수는 '1세대당 1대이상'과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이상을 설치한다. 단, 주거용도 이외의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이상을 설치한다. •주차장의 설치는 '주차장법' 및 '인천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에 따른다.

③ 상업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가구 번호	획지 번호				
-	8	5 7	대지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내 공지 조성 : 대지내 공지는 양호한 녹지와 연계하여 친환경적 단지를 조성 •인접한 공공청사와 공지가 2m 이상 발생할 경우 조경 또는 보행통로 형태로 조성하며, 2m 미만일 경우에는 공지가 창고화되어 불량한 경관을 형성하지 않도록 차폐한다. •보도와 인접한 부지는 공개공지 및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여 보행 및 휴게공간으로 활용 	
			동선	차량 동선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출입 불허 구간		•단지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대로 3-6호선, 3-9호선변의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보행 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내에 보행자를 위한 주보행통로(자전거도로 겸용)를 조성하고 동선의 원만한 소통을 위하여 편의시설과의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함 •보행의 불편함이 없는 동선체계 구축 •근린광장과의 연계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
		주차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은 법정 주차대수의 110%이상으로 계획 •지상에는 가능한 한 비상용·장애인 외의 주차장 설치를 지양하고 휴게공간, 조경 및 녹지 공간으로 계획 			

④ 학교용지

■ 기타학교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가구 번호	획지 번호				
-	8	⑤	대지내 공지	•단지내 공지 조성 : 대지내 공지는 양호한 녹지와 연계하여 조성	고등학교	
			동선	차량 동선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출입 불허 구간		•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담장 또는 울타리	•도로와 면한 단지의 경계부는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권장사항)					
-	18	①	대지내 공지	•단지내 공지 조성 : 대지내 공지는 양호한 녹지와 연계하여 조성	초등학교	
			동선	차량 동선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출입 불허 구간		•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담장 또는 울타리	•도로와 면한 단지의 경계부는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권장사항)					
-	15	②	대지내 공지	•단지내 공지 조성 : 대지내 공지는 양호한 녹지와 연계하여 조성	유치원	
			동선	차량 동선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출입 불허 구간		•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담장 또는 울타리	•도로와 면한 단지의 경계부는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권장사항)					
-	17	①	대지내 공지	•단지내 공지 조성 : 대지내 공지는 양호한 녹지와 연계하여 조성	유치원	
			동선	차량 동선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출입 불허 구간		•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담장 또는 울타리	•도로와 면한 단지의 경계부는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권장사항)					
-	19	③	대지내 공지	•(신설)단지내 공지 조성 : 대지내 공지는 양호한 녹지와 연계하여 조성	특수학교	
			동선	차량 동선		•(신설)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출입 불허 구간		•(신설)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담장 또는 울타리	•(신설)도로와 면한 단지의 경계부는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권장사항)					

■ 인천대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가구 번호	획지 번호				
-	10	①	대지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내 공지 조성 : 대지내 공지는 양호한 녹지와 연계하여 조성 •인천대학교 내 운동장 주변의 녹지공간 등은 보전대상으로 설정(권장사항) •보행자 도로와 접하거나 진입부와 인접한 외부공간은 쉼터 등의 휴게공간을 설치하여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권장사항) 		
			동선	차량 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출입 불허 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보행 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내에 보행자를 위한 주보행통로(자전거도로 겸용)를 조성 •단지내 주도로와 연결하여 보행통로를 함께 조성 •단지내 횡단보도는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를 일체화한 평탄형 과속방지턱으로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함 •건축물과 연계된 외부공간 조성 시 녹지 및 광장 형태로 조성하여 각 건축물 간을 연결하는 보행 녹지축이 형성되도록 권장
			주차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은 법정주차대수의 110%이상으로 확보 		
담장 또는 울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와 면한 단지의 경계부는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권장사항) •위압적 형태의 담장은 지양하며 공간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경계부 공간 조성(권장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고등학교와 인접한 공간은 하나의 공간처럼 개방적인 열린공간으로 조성 -근린생활시설과 인접한 공간은 보행활동을 고려한 가로형태의 경계부 조성 -안전상 명확한 경계부가 필요한 경우 식재·펜스 등을 통한 경계부 형성 					

■ 청운대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가구 번호	획지 번호														
-	9	①	<table border="1"> <tr> <td>대지 내 공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내 공지 조성 : 대지내 공지는 양호한 녹지와 연계하여 조성 •보행자 도로와 접하거나 진입부와 인접한 외부공간은 쉼터 등의 휴게공간을 설치하여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권장사항) </td> </tr> <tr> <td rowspan="3">동선</td> <td>차량 동선</td> <td>•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td> </tr> <tr> <td>출입 불허 구간</td> <td>•단지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td> </tr> <tr> <td>보행 동선</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내에 보행자를 위한 주보행통로를 조성 •단지내 주도로와 연결하여 보행통로를 함께 조성 •단지내 횡단보도는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를 일체화한 평탄형 과속방지턱으로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함 •건축물과 연계된 외부공간 조성 시 녹지 및 광장 형태로 조성하여 각 건축물 간을 연결하는 보행 녹지축이 형성되도록 권장 </td> </tr> <tr> <td colspan="2">담장 또는 울타리</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와 면한 단지의 경계부는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권장사항) •위압적 형태의 담장은 지양하며 공간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경계부 공간 조성(권장사항) -근린생활시설과 인접한 공간은 보행활동을 고려한 가로형태의 경계부 조성 -안전상 명확한 경계부가 필요한 경우 식재·펜스 등을 통한 경계부 형성 </td> </tr> </table>	대지 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내 공지 조성 : 대지내 공지는 양호한 녹지와 연계하여 조성 •보행자 도로와 접하거나 진입부와 인접한 외부공간은 쉼터 등의 휴게공간을 설치하여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권장사항) 	동선	차량 동선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출입 불허 구간	•단지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보행 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내에 보행자를 위한 주보행통로를 조성 •단지내 주도로와 연결하여 보행통로를 함께 조성 •단지내 횡단보도는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를 일체화한 평탄형 과속방지턱으로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함 •건축물과 연계된 외부공간 조성 시 녹지 및 광장 형태로 조성하여 각 건축물 간을 연결하는 보행 녹지축이 형성되도록 권장 	담장 또는 울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와 면한 단지의 경계부는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권장사항) •위압적 형태의 담장은 지양하며 공간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경계부 공간 조성(권장사항) -근린생활시설과 인접한 공간은 보행활동을 고려한 가로형태의 경계부 조성 -안전상 명확한 경계부가 필요한 경우 식재·펜스 등을 통한 경계부 형성 	
대지 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내 공지 조성 : 대지내 공지는 양호한 녹지와 연계하여 조성 •보행자 도로와 접하거나 진입부와 인접한 외부공간은 쉼터 등의 휴게공간을 설치하여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권장사항) 															
동선	차량 동선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출입 불허 구간	•단지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보행 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내에 보행자를 위한 주보행통로를 조성 •단지내 주도로와 연결하여 보행통로를 함께 조성 •단지내 횡단보도는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를 일체화한 평탄형 과속방지턱으로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함 •건축물과 연계된 외부공간 조성 시 녹지 및 광장 형태로 조성하여 각 건축물 간을 연결하는 보행 녹지축이 형성되도록 권장 														
담장 또는 울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와 면한 단지의 경계부는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권장사항) •위압적 형태의 담장은 지양하며 공간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경계부 공간 조성(권장사항) -근린생활시설과 인접한 공간은 보행활동을 고려한 가로형태의 경계부 조성 -안전상 명확한 경계부가 필요한 경우 식재·펜스 등을 통한 경계부 형성 														

⑤ 노유자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가구 번호	획지 번호												
-	15	⑤	<table border="1"> <tr> <td>대지내 공지</td> <td>•단지내 공지 조성 : 대지내 공지는 양호한 녹지와 연계하여 조성</td> </tr> <tr> <td rowspan="2">동선</td> <td>차량 동선</td> <td>•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td> </tr> <tr> <td>출입 불허 구간</td> <td>•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td> </tr> <tr> <td colspan="2">담장 또는 울타리</td> <td>•도로와 면한 단지의 경계부는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권장사항)</td> </tr> </table>	대지내 공지	•단지내 공지 조성 : 대지내 공지는 양호한 녹지와 연계하여 조성	동선	차량 동선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출입 불허 구간	•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담장 또는 울타리		•도로와 면한 단지의 경계부는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권장사항)	
대지내 공지	•단지내 공지 조성 : 대지내 공지는 양호한 녹지와 연계하여 조성													
동선	차량 동선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출입 불허 구간	•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담장 또는 울타리		•도로와 면한 단지의 경계부는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권장사항)												

⑥ 공공청사용지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가구 번호	획지 번호			
-	6	⑥	대지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내 공지 조성 : 대지내 공지는 양호한 녹지와 연계하여 조성 •보행자도로변으로 공개공지 및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여 보행 및 휴게공간으로 활용 	
			동선	차량 동선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출입 불허 구간	•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담장 또는 울타리	•도로와 면한 단지의 경계부는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권장사항)				
-	8	③ ④ ⑨	대지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내 공지 조성 : 대지내 공지는 양호한 녹지와 연계하여 조성 •보행자도로변으로 공개공지 및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여 보행 및 휴게공간으로 활용 	
			동선	차량 동선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출입 불허 구간	•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담장 또는 울타리	•도로와 면한 단지의 경계부는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권장사항)				
-	11	⑩	대지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내 공지 조성 : 대지내 공지는 양호한 녹지와 연계하여 조성 •보행자도로변으로 공개공지 및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여 보행 및 휴게공간으로 활용 	
			동선	차량 동선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출입 불허 구간	•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담장 또는 울타리	•도로와 면한 단지의 경계부는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권장사항)				

⑦ 업무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가구 번호	획지 번호								
-	8	①	<table border="1"> <tr> <td>대지내 공지</td> <td>•단지내 공지 조성 : 대지내 공지는 양호한 녹지와 연계하여 조성 •보행자도로변으로 공개공지 및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여 보행 및 휴게공간으로 활용</td> </tr> <tr> <td>동선 차량 동선 출입 불허 구간</td> <td>•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td> </tr> <tr> <td>담장 또는 울타리</td> <td>•도로와 면한 단지의 경계부는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권장사항)</td> </tr> </table>	대지내 공지	•단지내 공지 조성 : 대지내 공지는 양호한 녹지와 연계하여 조성 •보행자도로변으로 공개공지 및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여 보행 및 휴게공간으로 활용	동선 차량 동선 출입 불허 구간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담장 또는 울타리	•도로와 면한 단지의 경계부는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권장사항)	
대지내 공지	•단지내 공지 조성 : 대지내 공지는 양호한 녹지와 연계하여 조성 •보행자도로변으로 공개공지 및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여 보행 및 휴게공간으로 활용									
동선 차량 동선 출입 불허 구간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담장 또는 울타리	•도로와 면한 단지의 경계부는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권장사항)									

⑧ 주차장용지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가구 번호	획지 번호								
-	2	⑧	<table border="1"> <tr> <td>대지내 공지</td> <td>•단지내 공지 조성 : 대지내 공지는 양호한 녹지와 연계하여 조성</td> </tr> <tr> <td>동선 차량 동선 출입 불허 구간</td> <td>•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td> </tr> <tr> <td>담장 또는 울타리</td> <td>•조경시설이나 펜스 등을 활용한 차단막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 및 미관을 고려한 경계부 경관을 형성</td> </tr> </table>	대지내 공지	•단지내 공지 조성 : 대지내 공지는 양호한 녹지와 연계하여 조성	동선 차량 동선 출입 불허 구간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담장 또는 울타리	•조경시설이나 펜스 등을 활용한 차단막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 및 미관을 고려한 경계부 경관을 형성	
대지내 공지	•단지내 공지 조성 : 대지내 공지는 양호한 녹지와 연계하여 조성									
동선 차량 동선 출입 불허 구간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담장 또는 울타리	•조경시설이나 펜스 등을 활용한 차단막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 및 미관을 고려한 경계부 경관을 형성									
-	12	①	<table border="1"> <tr> <td>대지내 공지</td> <td>•단지내 공지 조성 : 대지내 공지는 양호한 녹지와 연계하여 조성</td> </tr> <tr> <td>동선 차량 동선 출입 불허 구간</td> <td>•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td> </tr> <tr> <td>담장 또는 울타리</td> <td>•조경시설이나 펜스 등을 활용한 차단막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 및 미관을 고려한 경계부 경관을 형성</td> </tr> </table>	대지내 공지	•단지내 공지 조성 : 대지내 공지는 양호한 녹지와 연계하여 조성	동선 차량 동선 출입 불허 구간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담장 또는 울타리	•조경시설이나 펜스 등을 활용한 차단막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 및 미관을 고려한 경계부 경관을 형성	
대지내 공지	•단지내 공지 조성 : 대지내 공지는 양호한 녹지와 연계하여 조성									
동선 차량 동선 출입 불허 구간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담장 또는 울타리	•조경시설이나 펜스 등을 활용한 차단막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 및 미관을 고려한 경계부 경관을 형성									
-	5	①	<table border="1"> <tr> <td>대지내 공지</td> <td>•단지내 공지 조성 : 대지내 공지는 양호한 녹지와 연계하여 조성</td> </tr> <tr> <td>동선 차량 동선 출입 불허 구간</td> <td>•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td> </tr> <tr> <td>담장 또는 울타리</td> <td>•조경시설이나 펜스 등을 활용한 차단막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 및 미관을 고려한 경계부 경관을 형성</td> </tr> </table>	대지내 공지	•단지내 공지 조성 : 대지내 공지는 양호한 녹지와 연계하여 조성	동선 차량 동선 출입 불허 구간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담장 또는 울타리	•조경시설이나 펜스 등을 활용한 차단막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 및 미관을 고려한 경계부 경관을 형성	
대지내 공지	•단지내 공지 조성 : 대지내 공지는 양호한 녹지와 연계하여 조성									
동선 차량 동선 출입 불허 구간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담장 또는 울타리	•조경시설이나 펜스 등을 활용한 차단막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 및 미관을 고려한 경계부 경관을 형성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가구 번호	획지 번호			
-	8	②	대지내 공지	•단지내 공지 조성 : 대지내 공지는 양호한 녹지와 연계하여 조성	
			동선	차량 동선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출입 불허 구간	•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담장 또는 울타리	•조정시설이나 펜스 등을 활용한 차단막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 및 미관을 고려한 경계부 경관을 형성				
-	14	①	대지내 공지	•단지내 공지 조성 : 대지내 공지는 양호한 녹지와 연계하여 조성	
			동선	차량 동선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출입 불허 구간	•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담장 또는 울타리	•조정시설이나 펜스 등을 활용한 차단막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 및 미관을 고려한 경계부 경관을 형성				

⑨ 기타용지

■ 종교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가구 번호	획지 번호			
-	2	⑥	대지내 공지	•단지내 공지 조성 : 대지내 공지는 양호한 녹지와 연계하여 조성	
			동선	차량 동선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출입 불허 구간	•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담장 또는 울타리	•도로와 면한 단지의 경계부는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권장사항)				
-	8	⑩	대지내 공지	•단지내 공지 조성 : 대지내 공지는 양호한 녹지와 연계하여 조성	
			동선	차량 동선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출입 불허 구간	•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담장 또는 울타리	•도로와 면한 단지의 경계부는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권장사항)				

■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가구 번호	획지 번호			
-	6	①~⑤ ⑦	대지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면공지는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포장하고, 보행 시 지장이 되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함 •보행공간이 보도와 전면공지를 포함하여 3m이상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테라스의 설치나 녹지 조성을 허용함 •인접 건축물과 측면 이격공지가 2m 이상 발생할 경우 조경 또는 보행통로 형태로 조성하며, 2m 미만일 경우에는 측면공지가 창고화되어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차폐하도록 함 	
			동선	차량 동선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출입 불허 구간	•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주차시설	•주차장은 법정 주차대수의 110%이상으로 계획	
-	11	① ~ ⑨	대지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면공지는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포장하고, 보행 시 지장이 되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함 •보행공간이 보도와 전면공지를 포함하여 3m이상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테라스의 설치나 녹지 조성을 허용함 •인접 건축물과 측면 이격공지가 2m 이상 발생할 경우 조경 또는 보행통로 형태로 조성하며, 2m 미만일 경우에는 측면공지가 창고화되어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차폐하도록 함 	
			동선	차량 동선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출입 불허 구간	•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주차시설	•주차장은 법정 주차대수의 110%이상으로 계획	
-	12	③ ~ ⑧	대지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면공지는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포장하고, 보행 시 지장이 되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함 •보행공간이 보도와 전면공지를 포함하여 3m이상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테라스의 설치나 녹지 조성을 허용함 •인접 건축물과 측면 이격공지가 2m 이상 발생할 경우 조경 또는 보행통로 형태로 조성하며, 2m 미만일 경우에는 측면공지가 창고화되어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차폐하도록 함 	
			동선	차량 동선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출입 불허 구간	•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주차시설	•주차장은 법정 주차대수의 110%이상으로 계획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가구 번호	획지 번호			
-	13	① ~ ③	대지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면공지는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포장하고, 보행 시 지장이 되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함 •보행공간이 보도와 전면공지를 포함하여 3m이상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테라스의 설치나 녹지 조성을 허용함 •인접 건축물과 측면 이격공지가 2m 이상 발생할 경우 조경 또는 보행통로 형태로 조성하며, 2m 미만일 경우에는 측면공지가 창고화되어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차폐하도록 함 	
			동선	차량 동선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출입 불허 구간	•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주차시설	•주차장은 법정 주차대수의 110%이상으로 계획	
-	14	② ~ ④	대지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면공지는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포장하고, 보행 시 지장이 되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함 •보행공간이 보도와 전면공지를 포함하여 3m이상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테라스의 설치나 녹지 조성을 허용함 •인접 건축물과 측면 이격공지가 2m 이상 발생할 경우 조경 또는 보행통로 형태로 조성하며, 2m 미만일 경우에는 측면공지가 창고화되어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차폐하도록 함 	
			동선	차량 동선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출입 불허 구간	•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주차시설	•주차장은 법정 주차대수의 110%이상으로 계획	
-	16	① ②	대지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면공지는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포장하고, 보행 시 지장이 되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함 •보행공간이 보도와 전면공지를 포함하여 3m이상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테라스의 설치나 녹지 조성을 허용함 •인접 건축물과 측면 이격공지가 2m 이상 발생할 경우 조경 또는 보행통로 형태로 조성하며, 2m 미만일 경우에는 측면공지가 창고화되어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차폐하도록 함 	
			동선	차량 동선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출입 불허 구간	•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주차시설	•주차장은 법정 주차대수의 110%이상으로 계획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가구 번호	획지 번호			
-	17	② ③	대지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면공지는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포장하고, 보행 시 지장이 되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함 •보행공간이 보도와 전면공지를 포함하여 3m이상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테라스의 설치나 녹지 조성을 허용함 •인접 건축물과 측면 이격공지가 2m 이상 발생할 경우 조경 또는 보행통로 형태로 조성하며, 2m 미만일 경우에는 측면공지가 창고화되어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차폐하도록 함 	
			동선	차량 동선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출입 불허 구간	•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주차시설	•주차장은 법정 주차대수의 110%이상으로 계획	

■ 물류·유통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가구 번호	획지 번호			
-	1	① ~ ④	대지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내 공지 조성 : 대지내 공지는 양호한 녹지와 연계하여 조성 •200㎡이상의 공지는 전체면적의 30%이상을 친환경적이면서 투수성 있는 바닥재 사용 권장 	
			동선	차량 동선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출입 불허 구간	•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차량 출입	•(신설)차량의 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한다. 다만 부지여건상 공동주차출입구로 조성하도록 계획된 필지는 2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주차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은 법정 주차대수의 110%이상으로 계획 •주차장은 건축물 측면이나 후면부에 설치하고 도로와 면하는 경우 식재로 차폐하여 도로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함 	
담장 또는 울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와 면한 단지의 경계부는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권장사항) •보도가 접하지 않는 경계부에는 완충 식재공간을 확보하고, 보행자 동선이 발생하는 곳은 모퉁이 공간의 공지를 쌈지공원 형태로 조성을 권장함 				

■ 주유소용지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가구 번호	획지 번호			
-	2	7	동선 차량 동선 출입 불허 구간 담장 또는 울타리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차량 진 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도로와 면한 단지의 경계부는 1m이하의 생울타 리로 조성(권장사항)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 개제 생략

○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변경)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도화 특별계획구역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255번지 일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012번지 일원	57,475.0	증) 17.2	57,492.2	

○ 기부채납에 관한 계획(변경)

- 기부채납 면적 : 250,912.7m²
- 모든 기반시설은 조성후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함
- 저류지는 문화공원과 중복결정

가) 기부채납에 관한 계획

구분	사업 대상지	합계	도로	광장	공원	녹지	공공 공지	학교	공공 청사	저류지	비고	
면적 (m ²)	기정	881,954.3	230,652.7	132,707.1	4,512.9	58,532.2	34,900.5	-	-	-	(3,992)	저류지는 공원과 중복결정
	변경	881,975.4	250,912.7	132,569.8	4,512.1	58,423.8	34,909.8	197.0	19,125.5	1,174.7	(3,992)	
기부채납 비율(%)	100.0	28.4	15.0	0.5	6.6	4.0	0.02	2.2	0.1	(0.4)		

[붙임] 공공시설의 귀속 등에 관한 사항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토지등의 조서 총괄

가. 시행자 귀속분 총괄

< 기 정 >

구 분	계	도로	구거	주차장
필 지 수	146 (9)	137 (7)	6	3 (2)
면적 (㎡)	85,360.5	82,836.4	1,987.0	537.1

※ (): 공동소유 필지수

< 변 경 >

구 분	계	도로	구거	주차장	학교	대지
필 지 수	130 (5)	122 (3)	4	2 (2)	1	1
면적 (㎡)	101,530.0	80,063.8	1,057.0	330.6	18,933.8	1,144.8

※ (): 공동소유 필지수

나. 국가(지자체) 귀속분 총괄

< 기 정 >

구 분	계	도로	공원	녹지	광장
면적(㎡)	230,652.6	132,707.0	58,532.2	34,900.5	4,512.9

< 변 경 >

구 분	계	도로	공원	녹지	공공공지	광장	학교	공공청사
면적(㎡)	250,912.7	132,569.8	58,423.8	34,909.8	197.0	4,512.1	19,125.5	1,174.7

2.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가. 시행할 자 : (기정)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변경) 인천도시공사

나. 시행 방법 :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

다. 공공시설의 귀속 :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에게 무상귀속

3.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변경없음)

· 인천광역시장, 미추홀구청장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

1) 소유관청별 토지조서 총괄

< 기 정 >

(단위:필지,m²)

구분	합 계		국 (국토교통부)		국 (기획재정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교육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계	146 (9)	85,360.5	6	7,393.0	4	524.0	91 (5)	72,098.2	6 (6)	229.5	39 (3)	5,115.8
도	137 (7)	82,836.4	5	6,739.0	4	524.0	88 (4)	70,987.6	5 (5)	23.0	35 (2)	4,562.8
구	6	1,987.0	1	654.0	-	-	2	930.0	-	-	3	403.0
차	3 (2)	537.1	-	-	-	-	1 (1)	180.6	1 (1)	206.5	1 (1)	150.0

※ 1. (): 공동소유 필지수

2. 공유지분 9필지(60-11도, 60-12차, 76-19차, 113-22도, 113-23도, 113-37도, 118-38도, 122-58도, 122-70도)

< 변 경 >

(단위:필지,m²)

구분	합 계		국 (국토교통부)		국 (기획재정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교육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계	130 (5)	101,530.0	11	7,393.0	-	-	78 (2)	68,942.6	1	18,933.8	40 (3)	6,260.6
도	122 (3)	80,063.8	10	6,739.0	-	-	77 (1)	68,762.0	-	-	35 (2)	4,562.8
구	4	1,057.0	1	654.0	-	-	-	-	-	-	3	403.0
차	2 (2)	330.6	-	-	-	-	1 (1)	180.6	-	-	1 (1)	150.0
학	1	18,933.8	-	-	-	-	-	-	1	18,933.8	-	-
대	1	1,144.8	-	-	-	-	-	-	-	-	1	1,144.8

※ 1. (): 공동소유 필지수

2. 공유지분 5필지{60-12차(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중복)}, 118-38도, 113-22도, 113-23도}

2) 소유관청별 토지조서

가) 국토교통부

< 기 정 >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지분별면 적 (㎡)	비 고
		구분	본번	부번					
	계					7,393.0	7,393.0	7,393.0	
1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22	92	도	47.0	47.0	47.0	
2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651	12	도	704.0	704.0	704.0	
3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651	13	도	166.0	166.0	166.0	
4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673		도	53.0	53.0	53.0	
5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674		구	654.0	654.0	654.0	
6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651	19	도	5,769.0	5,769.0	5,769.0	도화동 651-12에서 분할

< 변 경 >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지분별면적 (㎡)	비 고
		구분	본번	부번					
	계					7,393.0	7,393.0	7,393.0	
1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22	92	도	47.0	47.0	47.0	
2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651	12	도	704.0	704.0	704.0	
3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651	13	도	166.0	166.0	166.0	
4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673		도	53.0	53.0	53.0	
5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674		구	654.0	654.0	654.0	
6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651	19	도	1,108.0	1,108.0	1,108.0	
7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651	20	도	112.0	112.0	112.0	
8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651	21	도	506.0	506.0	506.0	
9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651	22	도	278.0	278.0	278.0	
10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651	23	도	3,116.0	3,116.0	3,116.0	
11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651	24	도	649.0	649.0	649.0	

나) 기획재정부

< 기 정 >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지분별면 적 (㎡)	비 고
		구분	본번	부번					
	계					524.0	524.0	524.0	
1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23	1	도	149.0	149.0	149.0	
2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23	2	도	237.0	237.0	237.0	
3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23	3	도	84.0	84.0	84.0	
4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23	4	도	54.0	54.0	54.0	

< 변 경 >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지분별면 적 (㎡)	비 고
		구분	본번	부번					
	-	해		당		없	음	-	

다) 인천광역시

< 기 정 >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지분별면 적 (㎡)	비 고
		구분	본번	부번					
	계					200,805.1	73,101.4	72,098.1	
1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33	9	도	82.7	82.7	82.7	
2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33	17	도	69.7	69.7	69.7	
3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37	5	도	121.0	121.0	121.0	
4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37	19	도	162.4	162.4	162.4	
5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37	27	도	42.9	42.9	42.9	
6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37	29	도	13.2	13.2	13.2	
7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37	34	도	6.3	6.3	6.3	
8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42	8	도	53.7	53.7	53.7	
9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44	6	도	31.5	31.5	31.5	
10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44	16	도	8.9	8.9	8.9	
11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45	19	도	51.1	51.1	51.1	
12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45	25	도	34.1	34.1	34.1	
13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46	11	도	106.0	106.0	106.0	
14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47	5	도	141.1	141.1	141.1	
15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47	17	도	220.4	220.4	220.4	
16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47	29	도	287.9	287.9	287.9	
17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59	5	도	75.6	75.6	75.6	
18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59	11	도	120.5	120.5	120.5	
19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60	11	도	209.3	209.3	69.3	인천시:69.3 공사:140.0
20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60	12	차	872.8	872.8	180.6	인천시:180.6 미추홀구청:150.0 공사:542.2
21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61	2	도	227.1	227.1	227.1	
22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61	18	도	51.3	51.3	51.3	
23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62	5	도	114.6	114.6	114.6	
24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63	6	도	57.6	57.6	57.6	
25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64	6	도	149.6	149.6	149.6	
26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66	8	도	116.7	116.7	116.7	
27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71	3	도	65.4	65.4	65.4	
28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71	8	도	46.6	46.6	46.6	
29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71	17	도	29.2	29.2	29.2	
30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72	7	도	164.7	164.7	164.7	
31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73	7	도	469.1	469.1	469.1	
32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74	7	도	37.9	37.9	37.9	
33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74	14	도	37.0	37.0	37.0	
34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74	25	도	52.0	52.0	52.0	
35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75	2	도	336.7	336.7	336.7	
36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75	3	도	88.4	88.4	88.4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지분별면 적 (㎡)	비 고
		구분	본번	부번					
37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75	11	도	48.4	48.4	48.4	
38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75	25	도	139.8	139.8	139.8	
39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75	32	도	166.5	166.5	166.5	
40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75	41	도	138.2	138.2	138.2	
41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77	2	도	228.3	228.3	228.3	
42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78	4	도	27.2	27.2	27.2	
43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0	15	도	161.0	161.0	161.0	
44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0	17	도	10.0	10.0	10.0	
45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0	18	도	31.0	31.0	31.0	
46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1	46	도	60.0	60.0	60.0	
47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1	47	도	225.0	225.0	225.0	
48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1	49	도	112.0	112.0	112.0	
49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1	50	도	18.0	18.0	18.0	
50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3	17	도	66.0	66.0	66.0	
51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3	18	도	60.0	60.0	60.0	
52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3	22	도	26.0	26.0	7.5	인천시:7.5 미추홀구청:2.6 공사:15.9(교육감:4.0)
53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3	23	도	69.0	69.0	19.9	인천시:19.9 미추홀구청:6.8 공사:42.3(교육감:10.6)
54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3	24	도	7.0	7.0	7.0	
55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3	25	도	38.0	38.0	38.0	
56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7	6	도	93.0	93.0	93.0	
57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7	8	도	37.0	37.0	37.0	
58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7	9	도	85.0	85.0	85.0	
59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7	10	도	82.0	82.0	82.0	
60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7	11	도	71.0	71.0	71.0	
61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8	35	도	45.0	45.0	45.0	
62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8	36	도	2.0	2.0	2.0	
63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8	37	도	8.0	8.0	8.0	
64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8	38	도	124.0	124.0	20.5	인천시:20.5 사유지:103.5
65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22	28	도	92.0	92.0	92.0	
66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22	79	도	26.0	26.0	26.0	
67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225	10	도	195.0	195.0	195.0	
68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252		도	23,381.5	7,314.3	7,314.3	
69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254		도	233.3	233.3	233.3	
70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255		도	36,872.8	26,321.8	26,321.8	
71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257		도	218.0	218.0	218.0	
72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259		도	4,218.7	4,218.7	4,218.7	
73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261		도	4,258.0	4,258.0	4,258.0	
74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266		도	582.2	582.2	582.2	
75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267		도	984.0	984.0	984.0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지분별면 적 (㎡)	비 고
		구분	본번	부번					
76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268		도	23.1	23.1	23.1	
77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269		도	3,007.7	3,007.7	3,007.7	
78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270		도	649.9	649.9	649.9	
79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271		도	29,566.9	56.7	56.7	
80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806	1	도	350.4	350.4	350.4	
81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807	1	도	55.9	55.9	55.9	
82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838	3	도	83.2	83.2	83.2	
83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838	7	도	83.2	83.2	83.2	
84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845		도	424.4	424.4	424.4	
85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871		도	2,243.6	1,259.0	1,259.0	
86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974		도	6,805.3	5,531.7	5,531.7	
87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974	1	도	13,402.3	5,249.9	5,249.9	
88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974	2	도	3,852.9	1,566.8	1,566.8	
89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975		도	2,927.9	2,345.0	2,345.0	
90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981	1	도	58,403.5	107.8	107.8	
91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26	41	구	469.0	469.0	469.0	
92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26	80	구	461.0	461.0	461.0	

※ 공유지분 5필지(60-11도, 60-12차, 113-22도, 113-23도, 118-38도)

< 변경 >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지분별면 적 (㎡)	비 고
		구분	본번	부번					
	계					69,738.3	69,738.3	68,942.6	
1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33	17	도	69.7	69.7	69.7	
2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37	5	도	121.0	121.0	121.0	
3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37	27	도	42.9	42.9	42.9	
4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37	29	도	13.2	13.2	13.2	
5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37	34	도	6.3	6.3	6.3	
6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42	8	도	53.7	53.7	53.7	
7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44	6	도	31.5	31.5	31.5	
8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44	16	도	8.9	8.9	8.9	
9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45	19	도	51.1	51.1	51.1	
10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45	25	도	34.1	34.1	34.1	
11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46	11	도	106.0	106.0	106.0	
12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47	17	도	220.4	220.4	220.4	
13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47	29	도	287.9	287.9	287.9	
14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59	5	도	75.6	75.6	75.6	
15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59	11	도	120.5	120.5	120.5	
16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60	12	차	872.8	872.8	180.6	인천시:180.6 미추홀구청:150.0 공사:542.2
17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61	2	도	227.1	227.1	227.1	
18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61	18	도	51.3	51.3	51.3	
19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63	6	도	57.6	57.6	57.6	
20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71	3	도	65.4	65.4	65.4	
21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71	8	도	46.6	46.6	46.6	
22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71	17	도	29.2	29.2	29.2	
23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72	7	도	164.7	164.7	164.7	
24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73	7	도	469.1	469.1	469.1	
25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74	7	도	37.9	37.9	37.9	
26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74	14	도	37.0	37.0	37.0	
27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74	25	도	52.0	52.0	52.0	
28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75	2	도	336.7	336.7	336.7	
29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75	3	도	88.4	88.4	88.4	
30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75	11	도	48.4	48.4	48.4	
31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75	25	도	139.8	139.8	139.8	
32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75	32	도	166.5	166.5	166.5	
33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75	41	도	138.2	138.2	138.2	
34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77	2	도	228.3	228.3	228.3	
35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78	4	도	27.2	27.2	27.2	
36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0	15	도	161.0	161.0	161.0	
37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0	17	도	10.0	10.0	10.0	
38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0	18	도	31.0	31.0	31.0	
39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1	46	도	60.0	60.0	60.0	
40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1	47	도	225.0	225.0	225.0	
41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1	49	도	112.0	112.0	112.0	
42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1	50	도	18.0	18.0	18.0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지분별면 적 (㎡)	비 고
		구분	본번	부번					
43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3	17	도	66.0	66.0	66.0	
44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3	18	도	60.0	60.0	60.0	
45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3	24	도	7.0	7.0	7.0	
46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3	25	도	38.0	38.0	38.0	
47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7	6	도	93.0	93.0	93.0	
48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7	8	도	37.0	37.0	37.0	
49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7	9	도	85.0	85.0	85.0	
50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7	10	도	82.0	82.0	82.0	
51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7	11	도	71.0	71.0	71.0	
52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8	35	도	45.0	45.0	45.0	
53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8	36	도	2.0	2.0	2.0	
54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8	37	도	8.0	8.0	8.0	
55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8	38	도	124.0	124.0	20.5	인천시:20.5 사유지:103.5
56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22	28	도	92.0	92.0	92.0	
57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22	79	도	26.0	26.0	26.0	
58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225	10	도	195.0	195.0	195.0	
59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252	3	도	7,368.9	7,368.9	7,368.9	
60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255	1	도	9.6	9.6	9.6	
61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255	2	도	1,002.8	1,002.8	1,002.8	
62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255	3	도	25,396.3	25,396.3	25,396.3	
63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259		도	4,218.7	4,218.7	4,218.7	
64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261		도	4,258.0	4,258.0	4,258.0	
65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266		도	582.2	582.2	582.2	
66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267		도	984.0	984.0	984.0	
67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268		도	23.1	23.1	23.1	
68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269		도	3,007.7	3,007.7	3,007.7	
69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270		도	649.9	649.9	649.9	
70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271	1	도	77.6	77.6	77.6	
71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838	3	도	83.2	83.2	83.2	
72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838	7	도	83.2	83.2	83.2	
73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871	1	도	1,273.9	1,273.9	1,273.9	
74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974	3	도	5,575.7	5,575.7	5,575.7	
75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974	4	도	4,660.6	4,660.6	4,660.6	
76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974	5	도	1,623.2	1,623.2	1,623.2	
77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975	1	도	2,337.0	2,337.0	2,337.0	
78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981	84	도	347.7	347.7	347.7	

※ 공유지분 2필지(60-12차, 118-38도)

라) 인천광역시 교육감

< 기 정 >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지분별면 적 (㎡)	비 고
		구분	본번	부번					
	계					955.7	955.7	229.5	
1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3	22	도	26.0	26.0	4.0	교육감:4.0 인천시:7.5 미추홀구청:2.6 공사:11.9
2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3	23	도	69.0	69.0	10.6	교육감:10.6 인천시:19.9 미추홀구청:6.8 공사:31.7
3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3	37	도	8.0	8.0	2.0	교육감:2.0 공사:6.0
4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22	58	도	3.0	3.0	0.7	교육감:0.7 공사:2.3
5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22	70	도	23.0	23.0	5.7	교육감:5.7 공사:17.3
6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76	19	차	826.7	826.7	206.5	교육감:206.5 공사:620.2

※ 공유지분 6필지(113-22도, 113-23도, 113-37도, 122-58도, 122-70도, 76-19차)

< 변 경 >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지분별면 적 (㎡)	비 고
		구분	본번	부번					
	계					18,933.8	18,933.8	18,933.8	
1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47	30	학	18,933.8	18,933.8	18,933.8	서화초등학교

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 기 정 >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지분별면 적 (㎡)	비 고
		구분	본번	부번					
	계					5,924.2	5,924.2	5,115.8	
1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33	31	도	74.6	74.6	74.6	
2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37	33	도	60.0	60.0	60.0	
3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60	12	차	872.8	872.8	150.0	인천사:180.5, 미추홀구청:150.0 공사:542.2
4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0	22	도	20.0	20.0	20.0	
5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0	27	도	37.0	37.0	37.0	
6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0	28	도	1.0	1.0	1.0	
7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0	29	도	26.0	26.0	26.0	
8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0	30	도	31.0	31.0	31.0	
9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0	33	도	25.0	25.0	25.0	
10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0	34	도	18.0	18.0	18.0	
11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0	35	도	25.0	25.0	25.0	
12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0	37	도	112.0	112.0	112.0	
13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1	59	도	49.0	49.0	49.0	
14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1	61	도	22.0	22.0	22.0	
15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1	62	도	69.0	69.0	69.0	
16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1	64	도	63.0	63.0	63.0	
17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1	66	도	164.0	164.0	164.0	
18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1	68	도	55.0	55.0	55.0	
19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1	70	도	31.0	31.0	31.0	
20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1	72	도	8.0	8.0	8.0	
21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2	122	도	27.0	27.0	27.0	
22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3	22	도	26.0	26.0	2.6	인천시:7.5 미추홀구청:2.6 공사:15.9(교육청:4.0)
23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3	23	도	69.0	69.0	6.8	인천시:19.9 미추홀구청:6.8 공사:42.3(교육청:10.6)
24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3	28	도	45.0	45.0	45.0	
25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3	29	도	55.0	55.0	55.0	
26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3	31	도	9.0	9.0	9.0	
27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3	32	도	72.0	72.0	72.0	
28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3	34	도	9.0	9.0	9.0	
29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4	42	도	26.0	26.0	26.0	
30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22	25	도	40.0	40.0	40.0	
31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22	55	도	5.0	5.0	5.0	
32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22	65	도	50.0	50.0	50.0	
33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22	101	도	58.0	58.0	58.0	
34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258		도	938.5	938.5	938.5	
35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265	1	도	2,278.3	2,278.3	2,278.3	
36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806	3	구	199.3	199.3	199.3	
37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835	2	구	139.2	139.2	139.2	
38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836	2	구	64.5	64.5	64.5	
39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22	75	도	50.0	50.0	50.0	

※ 공유지분 3필지(60-12차, 113-22도, 113-23도)

< 변경 >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지분별면 적 (㎡)	비 고
		구분	본번	부번					
	계					7,069.0	7,069.0	6,260.6	
1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33	31	도	74.6	74.6	74.6	
2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37	33	도	60.0	60.0	60.0	
3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60	12	차	872.8	872.8	150.0	인천시:180.5 미추홀구청:150.0, 공사:542.2
4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0	22	도	20.0	20.0	20.0	
5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0	27	도	37.0	37.0	37.0	
6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0	28	도	1.0	1.0	1.0	
7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0	29	도	26.0	26.0	26.0	
8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0	30	도	31.0	31.0	31.0	
9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0	33	도	25.0	25.0	25.0	
10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0	34	도	18.0	18.0	18.0	
11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0	35	도	25.0	25.0	25.0	
12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0	37	도	112.0	112.0	112.0	
13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1	59	도	49.0	49.0	49.0	
14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1	61	도	22.0	22.0	22.0	
15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1	62	도	69.0	69.0	69.0	
16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1	64	도	63.0	63.0	63.0	
17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1	66	도	164.0	164.0	164.0	
18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1	68	도	55.0	55.0	55.0	
19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1	70	도	31.0	31.0	31.0	
20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1	72	도	8.0	8.0	8.0	
21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2	122	도	27.0	27.0	27.0	
22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3	22	도	26.0	26.0	2.6	미추홀구청:2.6 공사:23.4
23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3	23	도	69.0	69.0	6.8	미추홀구청:6.8 공사:62.2
24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3	28	도	45.0	45.0	45.0	
25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3	29	도	55.0	55.0	55.0	
26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3	31	도	9.0	9.0	9.0	
27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3	32	도	72.0	72.0	72.0	
28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3	34	도	9.0	9.0	9.0	
29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14	42	도	26.0	26.0	26.0	
30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22	25	도	40.0	40.0	40.0	
31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22	55	도	5.0	5.0	5.0	
32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22	65	도	50.0	50.0	50.0	
33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22	75	도	50.0	50.0	50.0	
34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122	101	도	58.0	58.0	58.0	
35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258		도	938.5	938.5	938.5	
36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265	1	도	2,278.3	2,278.3	2,278.3	
37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806	3	구	199.3	199.3	199.3	
38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835	2	구	139.2	139.2	139.2	
39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836	2	구	64.5	64.5	64.5	
40	미추홀구 도화동	일반	805		대	1,144.8	1,144.8	1,144.8	쑥골어린이도서관

※ 공유지분 3필지(60-12차, 113-22도, 113-23도)

나. 국가(지자체) 귀속분

1) 도로(변경)

구분	류별	폭원(m)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m ²)	비고
계		-	30	7,833	132,569.8	
일반도로	대로	소계	-	8	4,691	89,203.7
		2류	30~38	5	2,767	48,146.0
		3류	25~36	3	1,924	41,057.7
	중로	소계	-	11	2,101	34,578.6
		1류	22.5	2	486	11,253.3
		2류	15	1	51	931.3
		3류	12~15	8	1,564	22,394.0
	소로	소계	-	11	1,041	8,787.5
		1류	10~12	1	26	274.2
		2류	8~10	8	991	8,306.0
		3류	6~8	2	24	207.3

2) 공 원(변경)

연번	시설명	세분	면적(m ²)	비고
계	-	-	58,423.8	-
1	배말 근린공원	근린공원	14,749.5	-
2	화동 근린공원	근린공원	20,176.3	-
3	궁현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3,441.3	-
4	서화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5,813.7	-
5	송림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3,644.4	
6	염전공원	문화공원	10,598.6	저류시설 중복결정

3) 녹지(변경)

연번	시설명	세분	면적(m ²)	비고
계	-	-	34,909.8	-
1	녹지	완충녹지	2,008.0	-
2	녹지	완충녹지	2,353.2	-
3	녹지	완충녹지	618.7	-
4	녹지	완충녹지	1,579.3	-
5	녹지	완충녹지	8,017.8	-
6	녹지	완충녹지	2,251.5	-
7	녹지	연결녹지	1,771.0	-
8	녹지	연결녹지	7,483.5	-
9	녹지	연결녹지	4,179.9	-
10	녹지	연결녹지	4,191.7	-
11	녹지	경관녹지	455.2	-

4) 공공공지(변경)

연번	시설명	세분	면적(m ²)	비고
계	-	-	197.0	-
1	공공공지	공공공지	197.0	-

5) 광장(변경)

연번	시설명	세분	위치	면적 (m ²)	비고
계	-	-	-	4,512.1	-
1	쑥골광장	근린광장	도화동 1012번지	4,512.1	-

6) 학교(변경)

연번	시설명	세분	위치	면적(m ²)	비고
계	-	-	-	19,125.5	-
1	학교	초등학교	도화동 1003번지	19,125.5	서화초등학교 존치

7) 공공청사(변경)

연번	시설명	세분	위치	면적 (m ²)	비고
계	-	-	-	1,174.7	-
1	공공청사		도화동 992-3번지	1,174.7	쑥골어린이도서관 존치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가. 시설종류 및 내용

구분	계	도로	구거	주차장
필 지 수	146 (9)	137 (7)	6	3 (2)
면적 (m ²)	85,360.5	82,836.4	1,987.0	537.1

※공동소유() 필지수 포함

나. 이용상태

- 도 : 통행을 위한 도로로 이용
- 구 : 농수로로 이용
- 차 : 주차장으로 이용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 기 정 >

구 분	면 적 (㎡)	비고
계	230,652.6	-
도 로	132,707.0	대로 8개소, 중로 11개소, 소로 11개소
공 원	58,532.2	근린 2개소, 어린이 3개소, 문화 1개소
녹 지	34,900.5	연결 4개소, 완충 6개소, 경관 1개소
광 장	4,512.9	근린광장 1개소

< 변 경 >

구 분	면 적 (㎡)	비고
계	250,912.7	-
도 로	132,569.8	대로 8개소, 중로 11개소, 소로 11개소
공 원	58,423.8	근린 2개소, 어린이 3개소, 문화 1개소
녹 지	34,909.8	연결 4개소, 완충 6개소, 경관 1개소
공공공지	197.0	공공공지 1개소
광 장	4,512.1	근린광장 1개소
학 교	19,125.5	초등학교 1개소
공공청사	1,174.7	어린이도서관 1개소

나. 시설이용계획

1) 도로

- 간선도로 : 지역간도로 및 지구내 진입을 위한 도로로 이용
- 기타도로 : 간선도로와의 연결, 각 획지로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공공의 안녕을 위한 시설로 이용

2) 공원

- 근린공원 : 입주민 및 주변지역민들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 활동 공간 제공
- 어린이공원 :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활동 공간 제공

3) 녹지 및 공공공지

- 사업지구내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보호 및 안전성 도모를 위해 이용

4) 광장

- 지역주민들이 한데 모이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

<별표 1>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

용지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가구 번호	획지 번호	
공동 주택 용지	-	공통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조색은 YR-Y 계열과 밝은 톤 사용 •보조색은 주조색과 동일색상 배색을 통해 안정되고 자연스러운 색감 연출 •강조색은 원색 및 고채도의 색상을 지양하고 주로 저채부와 측벽 그래픽 부분에 적용 •공동주택의 사용색 범위는 다음의 사항을 따르도록 함 (단, 공동주택 브랜드 색상 등 사용색 범위 외의 색상 사용은 별도의 건축심의 및 자문을 통해 사용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조색:색상 YR-Y / 명도 8~9.5 / 채도 0.5~2 -보조색:색상 YR-Y / 명도 5~7 / 채도 2~5 -강조색:색상 YR-Y / 명도 3~5.5 / 채도 1.5~6
단독 주택 용지	-	공통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벽면과 지붕의 재료 및 색채는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하되,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 및 형광색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단, 자연재료 및 벽돌, 석재 타일 등 자재색은 그대로 적용한다.) •외장재는 목재, 벽돌 등 자연친화형 재료를 권장하며 재료 본연의 색채와 소재감을 그대로 적용한다.
상업 시설 용지	-	공통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밝고 쾌적한 주조색과 보조색, 선명한 강조색, 브라운과 블루계열의 지붕색으로 Cool & Modern 분위기 연출 •주조색, 지붕색은 저채도를 선정하여 다른 용도 보다 돌출감과 압박감이 덜 느껴지도록 유도 •건물매스에 따른 음영변화가 잘 나타나도록 명도조절, 색상은 동일 색상의 2~3가지 내로 조정 •상업시설 및 주거복합시설의 사용색 범위는 다음의 사항을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조색:색상 YR-BG / 명도 8~10 / 채도 0.5~2 -보조색:색상 YR-BG / 명도 4~7 / 채도 2~4 -강조색:색상 GYR-BG / 명도 2~5 / 채도 2~4
학교 용지 (노유자 시설 용지 포함)	-	공통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색상의 차분한 색채를 형성하고 큰 면적은 명도차를 이용한 면 분할로 분절화 유도 •주조색은 저채도로 차분하고 안정감 있도록 계획 •지붕은 강조색인 YR- GY 계열의 색상과 저명도, 저채도로 통일 •교육시설의 사용색 범위는 다음의 사항을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조색:색상 YR-GY / 명도 8~9.5 / 채도 0.5~2 -보조색:색상 YR-GY / 명도 5.5~7 / 채도 2~4 -강조색:색상 YR-GY / 명도 3~5 / 채도 2~4.5

용지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가구 번호	획지 번호	
공공 청사 용지 (업무 시설 용지 포함)	-	공통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밝고 쾌적한 주조색과 보조색, 선명한 강조색, 브라운계열의 지붕색으로 Warm & Natural 분위기 연출 ● 주조색, 지붕색은 저채도를 선정하여 다른 용도 보다 돌출감과 압박감이 덜 느껴지도록 유도 ● 건물매스에 따른 음영변화가 잘 나타나도록 명도조절, 색상은 동색계열 2-3가지 내로 조정 ● 공공청사의 사용색 범위는 다음의 사항을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조색: 색상 YR-Y / 명도 8~9.5 / 채도 0.5~1.5 - 보조색: 색상 YR-Y / 명도 5~7 / 채도 2~3 - 강조색: 색상 YR-Y / 명도 3~5 / 채도 2~4
근린 생활 시설 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채도의 주조색과 보조색, 선명한 강조색의 대비로 경쾌하고 활기찬 분위기로 연출 ● 주조색은 R-GY계열의 밝은 색상을 주로 사용하고, 보조색은 주조와 동일색상 배색을 통해 안정되고 활기찬 색감 연출 ● 강조색은 원색 및 고채도의 색상을 지양하고 주로 저층부와 측벽부분에 적용 ● 근린생활시설의 사용색 범위는 다음의 사항을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조색: 색상 YR-GY / 명도 8~10 / 채도 0.5~2 - 보조색: 색상 YR-GY / 명도 4~7 / 채도 2~4 - 강조색: 색상 YR-GY / 명도 2~5 / 채도 2~4
물류·유 통시설 용지	-	공통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조색은 R~YR, BG~N 계열의 색과 밝은 톤 사용 ● 보조색은 주조색과 동일 색상 배색을 통해 안정적인 색감 연출 ● 강조색은 원색 및 고채도의 색상을 지양하고 주로 저층부와 측벽 그래픽 부분 적용 ● 지식산업센터의 사용색 범위는 다음의 사항을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조색: 색상 R-YR, BG, N / 명도 8~9.5 / 채도 0.5~2 - 보조색: 색상 R-YR, BG, N / 명도 5~7 / 채도 2~3 - 강조색: 색상 R-YR, BG, N / 명도 2~4.5 / 채도 1.5~4

<별표 2>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구분	계획내용																
기본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제시된 16개의 옥외광고물 중 돌출간판(소형 돌출제외), 세로형간판, 애드벌룬, 현수막 설치를 금지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출소, 소방서, 공공청사 등 공공건축물은 필요 시 돌출간판을 설치할 수 있음 -현수막은 지정계시대애 한하여만 게시할 수 있음 ● 옥상간판은 표시를 금지함.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입체형 간판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가목의 종교집회장 표시 도형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가목의 병원 표시 도형 ● 본 지침에 제시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2010)’,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름 																
공통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 수량은 1개로 한함.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개 업소당 2개 이내로 표시 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기관·약국 표지등(+, 약, 싸인볼에 한한다)을 표시하는 경우 -연립지주이용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로서 2층 이하 정면의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간판 ● 건축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은 주변 광고물과의 관계, 접촉거리 등을 고려하여 크기와 설치위치를 결정하며 간판의 형상은 건물의 형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함 ● 동일 건물에 설치되는 간판은 형태의 조화 및 통일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함 ● 주변 건물 및 간판과 어울리지 않는 색상과 검정색 및 빨강·파랑·노랑·녹색의 경우 순도 높은 원색을 바탕색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 간판의 색채는 다음의 사항을 따를 것을 권장함 <table border="1" data-bbox="379 1720 1433 188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25%;">구분</th> <th style="width: 25%;">색상</th> <th style="width: 25%;">명도</th> <th style="width: 25%;">채도</th> </tr> </thead> <tbody> <tr> <td>주조색</td> <td>R-PB, N</td> <td>6이상 10이하</td> <td>1이상 3이하</td> </tr> <tr> <td>보조색</td> <td>R-PB</td> <td>4이상 7이하</td> <td>5이상 8이하</td> </tr> <tr> <td>강조색</td> <td>R-PB, N</td> <td>2이상 8이하</td> <td>2이상 9이하</td> </tr> </tbody> </table>	구분	색상	명도	채도	주조색	R-PB, N	6이상 10이하	1이상 3이하	보조색	R-PB	4이상 7이하	5이상 8이하	강조색	R-PB, N	2이상 8이하	2이상 9이하
구분	색상	명도	채도														
주조색	R-PB, N	6이상 10이하	1이상 3이하														
보조색	R-PB	4이상 7이하	5이상 8이하														
강조색	R-PB, N	2이상 8이하	2이상 9이하														

구분	계획내용														
가로형 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의 3층 이하에 설치하고 업소당 1개 간판을 입체형 문자체로 설치하며 판류형은 1층에만 설치가 가능함 •가로크기는 당해 업소 가로 범위의 80% 이내(최대 10m), 세로크기는 판류형의 경우 80cm이내 입체형은 최대 50cm 이내(동일 층엔 세로 폭 통일)로 하며 두께는 건물 벽면으로부터 30cm 이내로 함 •입체형의 주 표기내용(상호 또는 브랜드명)의 평균 세로크기는 최대 50cm 이내로 하며 보조 표기내용(지점명, 전화번호, 인터넷주소, 영업내용)의 세로크기는 간판 세로크기의 1/4 이내로 함 •판류형의 표기면적은 간판면적의 1/3 이내로 표기하거나, 주 표기내용의 평균 세로크기를 간판 세로크기의 1/2 이내로 표기하며 보조 표기내용의 세로크기는 간판 세로크기의 1/6 이내로 함 														
소형 돌출 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 및 보도에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한 1층 업소가 표시하는 간판으로서 총수량에 포함되지 않음 •1면의 표기면적은 최대 0.36㎡ 이내로 표시하며 두께는 20cm 이내에 표시하며 업소 출입구의 좌·우측 중 한곳에 1개 표시함 														
유형별 기준 지주 이용 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하여 당해 부지 내 주출입구 부근에 연립형식(종합안내판)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1개 업소만을 표시하는 간판을 설치할 수 없음 •1면의 면적은 최대 6㎡, 간판면적의 합계는 24㎡ 이내로 하며,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3m 이내로 함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 경계선으로부터 1m이상 안쪽에 설치한다. •브랜드명 또는 상호명과 같이 핵심적인 내용만 표기함 •표기내용은 개별간판 면적의 1/3 이내로 표기하거나, 표기내용의 평균 세로크기를 개별간판 세로 폭의 1/2 이내로 표기함 •배경색은 저채도의 단일색을 사용하며, 실사이미지 사용을 금지함 •특화가로축에 인접한 근린생활시설은 지주이용간판의 설치를 금지함. <table border="1" data-bbox="464 1420 999 1742"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 colspan="2">지주이용간판 금지 대상</th> </tr> </thead> <tbody> <tr> <td>11</td> <td>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td> </tr> <tr> <td>12</td> <td>① ③ ④ ⑤ ⑥ ⑦ ⑧</td> </tr> <tr> <td>13</td> <td>① ② ③</td> </tr> <tr> <td>14</td> <td>① ② ③ ④</td> </tr> <tr> <td>16</td> <td>① ②</td> </tr> <tr> <td>17</td> <td>② ③</td> </tr> </tbody> </table>	지주이용간판 금지 대상		11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2	① ③ ④ ⑤ ⑥ ⑦ ⑧	13	① ② ③	14	① ② ③ ④	16	① ②	17	② ③
지주이용간판 금지 대상															
11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2	① ③ ④ ⑤ ⑥ ⑦ ⑧														
13	① ② ③														
14	① ② ③ ④														
16	① ②														
17	② ③														
연립 가로형 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면적 8㎡ 이내, 개별간판 표기내용의 세로 크기는 최대 50cm, 면적은 0.5㎡를 넘지 않으며 두께는 20cm이내에 표시함 •곡각지점에 「ㄱ」자 형태로 표시할 수 있음 •건물 출입구 상단에 설치할 경우 출입구의 폭을 초과할 수 없음 •벽면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곳에 설치함 •통일된 규격으로 조화를 고려하여 건물에 설치함 •브랜드 명 또는 상호명과 같이 핵심적인 내용만 표기함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50호

도시관리계획(송의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송의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균형계획과, ☎032-440-4634), 미추홀구청(도시창생과, ☎032-880-4488)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9. 03. 11.

인천광역시장

1. 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마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송의역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하는 사항임.

2. 위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송의동 362-19 일원

3. 도시관리계획(송의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송의역 주변	미추홀구 송의동 362-19 일원	-	증)17,585.8	17,585.8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적(m ²)	결정 사유
신설	1	미추홀구 362-19 일원	17,585.8	• 노후·불량건축물 및 위해 환경요소가 많은 지역에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 공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분	소 계	면 적(m ²)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상업 지역	소 계	17,585.8	-	17,585.8	100.0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17,585.8	-	17,585.8	100.0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2) 용도지구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지 구 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	중앙지구	방화지구	중, 동, 미추홀구 송의동, 용현동 상업지역	1,923,000 (17,585.8)	인고 제1063호 (1987.1.8.)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면적임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4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8	5,794	4,392.7	-	-	-	4	4,921	2,189.8	3	639	1,876.3	1	234	326.6
대로	1	3,830	128.9	-	-	-	1	3,830	128.9	-	-	-	-	-	-
중로	1	750	293.7	-	-	-	1	750	293.7	-	-	-	-	-	-
소로	6	1,214	3,970.1	-	-	-	2	341	1,767.2	3	639	1,876.3	1	234	326.6

※ 도로총괄표의 면적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편입면적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2	6	30~33	보조간선	3,830	중앙동광3-2	용현동대2-10	일반도로	-	'70.2.9	
변경	대로	2	6	30~33 (30)	보조간선	3,830(50)	중앙동광3-2	용현동대2-10	일반도로	-	'70.2.9	
기정	중로	2	3	15	보조간선	750	대2-6	중1-2	일반도로	-	'70.2.9	
변경	중로	2	3	15~18 (15)	보조간선	750(90)	대2-6	중1-2	일반도로	-	'70.2.9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257	대2-9	대2-6	일반도로	-	'39.3.11	
변경	소로	2	3	8	국지도로	148	대2-9	중2-3	일반도로	-	'39.3.11	구역외
기정	소로	3	5	6	국지도로	228	소3-4	소3-4	일반도로	-	'39.3.11	
변경	소로	3	5	6	국지도로	126	소3-4	중2-4	일반도로	-	'39.3.11	구역외
기정	소로	3	6	6	국지도로	274	소3-4	소4-7	일반도로	-	'39.3.11	
변경	소로	3	6	6	국지도로	123	소3-4	중2-4	일반도로	-	'39.3.11	구역외
기정	소로	4	7	4	국지도로	234	지구계선	대2-9	일반도로	-	'39.3.11	
변경	소로	4	7	4	국지도로	150	중2-3	대2-9	일반도로	-	'39.3.11	구역외
신설	소로	2	1	10	국지도로	84(84)	대2-6	중2-3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1	3	특수도로	137(137)	대2-6	중2-4	보행자 전용도로	-	-	

※ 폭원 ()는 대표 폭원임. 연장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제물량로 (대로2-6)	제물량로 (대로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모: 폭원 30~33m → 30~33m(30m) 연장: 3,830m → 3,830m(50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 교통서비스수준 향상 및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일부구간 노선변경 규모(폭원) 및 연장을 전체 및 구역 내로 구분하여 표기
제물량로 24번길 (중로2-3)	제물량로 24번길 (중로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모(폭원): 15m → 15~18m 연장: 750m → 750m(90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복합용지 주진출입구 및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일부구간 노선변경 규모(폭원) 및 연장을 전체 및 구역 내로 구분하여 표기
제물량로 4번길 (소로2-3)	제물량로 4번길 (소로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장: 257m → 148m 종점: 대2-6 → 중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복합용지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 연장 축소
제물량로 4번길 (소로3-5)	제물량로 4번길 (소로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장: 228m → 126m 종점: 소2-3 → 중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복합용지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 연장 축소
제물량로 4번길 (소로3-6)	제물량로 4번길 (소로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장: 274m → 123m 종점: 소2-3 → 중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복합용지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 연장 축소
제물량로 (소로4-7)	제물량로 (소로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장: 234m → 150m 기점: 지구계선 → 중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복합용지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 연장 축소
-	소로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장: 84m, 폭원: 10m 기점: 대2-6, 종점: 중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지역의 연결교통 확보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신설
-	소로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장: 137m, 폭원: 3m 기점: 대2-6, 종점 : 중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로2-6호선의 확장계획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보행자전용도로를 계획

(나) 철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 장 (m)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요경과지				
기정	1	철도 (수인선)	일반 철도	남동구 논현동 인천시계	중구전동 40	남동구, 연수구, 미추홀구, 중구, 동구	16,960	383,960 (229)	인고2003-102 (2003.05.23)	여객선 (지하화)

※ 면적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면적임

(2) 공간시설

(가) 공원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 원 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설	1	숭의소공원	소공원	미추홀구 숭의동 379-59 일원	-	증)217	217	-	

○ 공원 결정사유서

도면표 시번호	공원명	내용	사유
1	숭의소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공원 신설 - 위치: 미추홀구 숭의동 379-59 일원 - 면적: 217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해 소공원 신설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m ²)	
-	1	15,459.2	1-1	14,832.5	공동개발 권장
			1-2	226.7	
			1-3	400.0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도 면 번호	위 치 (획지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1-1 1-2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70% 미만인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주택법」 제2조 제13호의 부대시설 「주택법」 제2조 제14호의 복리시설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이외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도 면 번 호	위 치 (획지번 호)	구 분	계 획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지 남측 대로2-6호선 전면 구간 세탁소 및 철물점 - 건재상, 공구상, 안마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의사·식품제조가공업이 아닌 제조업소·수리점 및 세탁소,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0%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5조 제4항의 별표2에 의거 일반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은 주택연면적비율 60~70% 미만 적용 	
		높 이	• 47층 이하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탑상형 배치(권장), 건축물의 주된 벽면은 전면가로 방향과 45°내에 일치될 권장 • 주거복합건축물은 주거의 용도와 이외의 용도가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로 건축을 권장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길이가 길수록 일조 및 조망의 측면에서 주거환경에 불리하므로 건물의 규모, 인동간격 등을 고려하여 주동의 길이는 60m를 초과할 수 없음 • 공동주택의 지붕은 평지붕으로 권장하고 옥상의 설비기기 등 경관 불량요소는 전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함 • 건축물의 외관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로 2-6호선에 접한 1층부는 벽면의 50% 이상을 투시형으로 하고 투시형 서터를 권장함 - 건축물 외벽면에 냉·난방 실외기 설치를 불허함. • 담장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복합용지내 담장설치불허 • 건축물의 지상부에 관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복합용지내 저층(5층이하)을 제외한 상층부는 쾌적성 및 개방감과 통경축을 고려해 대지면적 80%이상의 오픈스페이스 확보(단, 오픈스페이스는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함)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채이미지는 인천광역시 경관가이드라인 기준을 준수 - 주조색은 밝은색으로 하되 2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고, 랜드마크 기능 및 단지내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원색사용을 지양 - 강조색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가능한 한 주조색 및 보조색과는 대조를 이루는 원색 또는 강한 색을 사용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대지경계로부터 3m	
-	1-3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제외) - 지역자치센터, 보건소, 공공도서관 중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관장, 공동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장 중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및 라목의 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바목의 시설 • 노유자시설
			불허	• 허용이외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도면번호	위치 (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

기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허용구간	송의동 383-2대 인근, 360-11대 인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출입허용구간 - 중로2-3호선변 일부구간에 차량출입허용구간 계획 - 소로2-1호선변 일부구간에 차량출입허용구간 계획 	
차량동선계획	소로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동선계획 - 대로2-6호선에서 주거복합용지 진입부까지는 일방향통행 - 중로2-3호선에서 주거복합용지 진입부까지는 양방향 통행 	

(2) 공공보행통로·무상귀속에 관한 사항

기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중로 2-3에서 소로3-1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획지 남측에서 북측으로 공공보행통로 계획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송의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설치하는 1-3획지 와 건축물을 해당청에게 무상귀속하며, 주택건설사업 준공시기와 같게 함 이 외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3장 제17절 3-17-5 및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제2절 및 인천광역시 등 관련 지자체 협의에 의함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17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3. 6.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의 명칭 : 영종 RC2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주)반도건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12, 11층(역삼동, 허바허바빌딩)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건설주택의 규모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099-4번지 (영종하늘도시 RC2블록)

나. 대지면적 : 20,365.8m²

다. 연 면 적 : 97,485.4431m²

라. 건설주택 규모

- 공동주택 : 지하3층, 지상 26층 / 6개동 / 450세대

· 83형 117세대, 84A형 179세대, 84B형 99세대, 84C형 55세대

- 부대복리시설 :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근린생활시설 등 18개동

4. 사업시행기간 : 2019. 5. ~ 2021. 12.

5. 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 사항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454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공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1일

인천광역시장

 기부금품 모집등록 내역

등록 번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모집 목표액 (백만원)	모집 지역	모집기간
						사용기간
2019- 495	월드리더스 재단	인천시 연수구 송도문화로 119	○ 개발도상국출신 인재 육성 장학금 지원을 통한 차세대 리더를 양성함	200	전국	모집등록일로 부터 1년
						모집완료일로 부터 1년

※ 기타 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민관협치담당관 (☎032-440-339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 - 46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등록의 말소)에 따라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우편 발송하였으나 처분당사자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장

□ 공고기간 : 2019년 3월 5일 ~ 3월 25일(21일)

□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당사자	성명(명칭)	(사)친환경생활국민운동인천광역시본부 대표자 석영섭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454번길 11-9(선화동 31-1번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 · 상시 구성원수 100인 이상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대표자(관리인) 등의 확인 불가로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등록의 말소)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청문실시	기관명	인천광역시	부서명	환경정책과	담당자	국미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본관 421호(구월동)		전화번호	032-440-3514	
	일시	2019년 4월 11일(목) 15시 부터 16시 까지(1시간)		장소	환경정책과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인천광역시 자원순환과 지방기술서기관			
	성명	서 용 성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환경정책과(032-440-35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 1부.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 - 462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등록의 말소)에 따라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우편 발송하였으나 처분당사자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장

공고기간 : 2019년 3월 5일 ~ 3월 25일(21일)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당사자	성명(명칭)	청소년환경봉사대 대표자 박희경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41, 한빛빌딩 204호(구월동 1133-1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 · 상시 구성원수 100인 이상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대표자(관리인) 등의 확인 불가로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등록의 말소)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청문실시	기관명	인천광역시	부서명	환경정책과	담당자	국미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본관 421호(구월동)		전화번호	032-440-3514	
	일시	2019년 4월 11일(목) 16부터 17까지(1시간)			장소	환경정책과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인천광역시 자원순환과 지방기술서기관			
	성명	서 용 성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환경정책과(032-440-35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 1부.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463 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 2. 28.

인천광역시장

등록변경사항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단체명	변경사항(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주된 사업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제2004-0- 인천광역시-23(285)호 (2004. 7. 22.)	인천노동 협회	편석우	박병만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75 4층	건전한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한 노사문제 연구 및 근로자 상담	대표자 변경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471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 3. 4.

인 천 광 역 시 장

변경 등록 사항 : 단체의 명칭 변경

○ 등록번호 : 제2013-0-인천광역시-26호

○ 등록 연월일 : 2013년 10월 17일

구분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주된 사업	주관과
변경전	사단법인 대한민국특전사전우회 인천광역시지부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753번길, 202호(십정동, 신 태양빌딩)	김은수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 안전 취약지구 방범순찰 봉사 ○지역사회 공헌 활동 (환경보호 활동) ○지역행사 자원봉사 활동 ○중앙회의 기본사업과 연계한 사업	안전정책과
변경후	사단법인 대한민국특전사동지회 인천광역시지부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473호

도시관리계획(석남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 공고·열람

인천도시관리계획(석남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3. 6.

인천광역시장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요내용

- (토지이용) 공업용지 50,159㎡→54,324㎡(증 4,165㎡)
- (기반시설) 도로(중로) 1개 노선→폐지
 봉수대로(광3-9호), 길주로(대1-11호) 완화차로 설치
- (가구·획지계획) 2개 가구, 27개 필지 → 1개 가구, 1개 필지
- (건축물 등 계획)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400%이하(변경 없음)
 높이 8층 이하 → 8층 이하(80m이하)
- (기타사항) 공공보행통로 삭제, 차량출입불허구간 조정

2.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위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안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청(도시균형계획과, ☎ 032-440-4633), 서구청(도시개발과, ☎ 032-560-4762)

4. 관계도서: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47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대표자)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4일

인천광역시장

등록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변경일	변경사유	주관 부서
2015-0- 인천광역시-11호	한국고용복지 나눔협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주대로 591번길 60 (구월동, 산승빌딩 4층)	김 명 자	2019. 2.28.	대표자 변경	일자리 경제과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476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공고 · 열람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3. 11.

인 천 광 역 시 장

1. 주요내용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불로동 일원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 별	번 호	폭원 (m)								
신설	중로	2	가	15.5 (155~305)	보조간선 도로	950	대로 3-58	광로 3-24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1	나	11 (11~22)	집산도로	95	중로 3-90	불로동 415-6	일반 도로	-	-	
기정	대로	3	58	25 (25~28)	주간선 도로	8,510	동측 지구계	광로 3-23	일반 도로	-	인고 제1998-118호 (1998.6.12.)	
변경	대로	3	58	25 (25~30)	주간선 도로	8,510	동측 지구계	광로 3-23	일반 도로	-	인고 제1998-118호 (1998.6.12.)	일부 구간 폭원 확장 (변속차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2-가	○노선 신설 - 연장: 950m - 폭원: 15.5m(15.5~30.5)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간선시설 확보를 위한 노선 신설
-	소로1-나	○노선 신설 - 연장: 95m - 폭원: 11.0m(11.0~22.0)	
대로3-58	대로3-58	○폭원변경 - 기정 25~28m→25~30m	○교차로 구간(L=37m) 변속차로 설치에 따른 폭원변경

2.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청(시설계획과, 032-440-1703, 연수구 갯벌로 12)

○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개발과, 032-560-4762, 서구 서곶로 307)

4. 관계서류: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끝.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478호

인천도시관리계획(블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시행(변경) 및 환지계획 인가

인천도시관리계획(블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와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사업시행(변경) 및 환지계획 인가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9. 03. 11.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목적 및 사업명칭

- 가. 목적(변경없음):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나. 명칭(변경없음): 블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시행지구 및 시행토지면적

- 가. 지구(변경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일원
- 나. 면적(변경없음): 75,119m²

3. 사무소의 소재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

4. 사업기간(변경없음): 2001. 01. 29. ~ 2020. 12. 31.

5. 시행(변경) 및 환지계획 인가 연월일: 2019. 3. 11.

6.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가. 주소(변경없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
- 나. 성명(변경없음): 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7. 사업계획(변경)

○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기 정	변 경	증 감	기 정	변 경
합 계	75,119.0	75,119.0	-	100.0	100.0
1. 주 거 용 지	51,557.0	51,557.0	-	68.7	68.7
단독 및 다세대	12,706.8	12,242.3	감)464.5	16.9	16.3
공동주택	36,170.7	36,170.7	-	48.2	48.2
근린생활시설	2,679.5	3,144.0	증)464.5	3.6	4.2
2. 종 교 시 설	661.2	661.2	-	0.9	0.9
3. 주 차 장	709.7	709.7	-	0.9	0.9
4. 공 공 용 지	22,191.1	22,191.1	-	29.5	29.5
공 원	2,369.1	2,369.1	-	3.1	3.1
녹 지	7,875.6	7,875.6	-	10.5	10.5
도 로	11,946.4	11,946.4	-	15.9	15.9

주)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161호(2017.7.3.) 불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반영

8. 환지계획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총 면 적	75,119.0	100.0	
일 반 지	44,011.3	58.6	청산채비지 포함
공 공 용 지	22,191.1	29.5	
도 로	11,946.4	15.9	
공 원	2,369.1	3.2	
녹 지	7,875.6	10.4	
체 비 지	8,916.6	11.9	
순 수 체 비 지	8,206.9	11.0	
주 차 장	709.7	0.9	

9. 관계도서: 게재 생략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계획과(☎032-440-4655) 및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032-440-5183)에 갖추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입니다.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479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공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1일

인천광역시장

기부금품 모집등록 내역

등록 번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모집 목표액 (백만원)	모집 지역	모집기간
						사용기간
2019-2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	인천시 연수구 함박 퇴로 220	○ 위기가정 생계, 주거, 의 료, 교육비 긴급지원 등	50	인천시 전지역	2019.3.10.~5.10
						2019.6.1.~12.31

※ 기타 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민관협치담당관 (☎032-440-339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48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대표자)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4일

인천광역시장

등록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변경일	변경사유	주관 부서
2002-0- 인천광역시-2호	전국건설노동자 무료취업알선센터 인천지부	인천광역시 부평구 대정로 80, 1층 (부평동)	박종희	2019. 3. 4.	대표자 변경	일자리 경제과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482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 3. 5.

인천광역시장

□ 변경 등록 사항

구분	등록번호 (등록일자)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주된 사업	비고
당초	제2014-0- 인천광역시- 6호 (2014.1.28)	인천광역시 차세대여성 지도자연합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878 (구월동, 2층)	김진희	- 여성권익향상을 위한 여성 정책개발 사업 - 지역사회 개발 및 공헌 사업 - 여성리더로서의 역량강화 사업	
변경	상동	상동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담로 25 (청학동)	김성희	상동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488호

2019년도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이자지원 계획 (수정) 공고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제 5조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자금 융자금 이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3. 5.

인 천 광 역 시 장

1. 지원규모 : 300백만원 범위 내
2. 지원대상
 - 2019년도 기업환경개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방지시설 설치자금의 융자 시 이자
 - 사업장(배출시설)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아래의 중소기업
 - 대기(악취, V O C) · 수질 오염방지 시설 설치 사업장
 - 대기·수질 측정기기 설치 사업장 등
 - 2015년 기업환경시설 융자금 이자지원 중단된 사업장 중 2019년 발생이자 사업장
3. 이자 지원 대상 자금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개선자금
 -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진흥 창업 및 진흥기금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의 중소기업육성기금
 - 기타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자금 등
4. 지원조건
 - 지원규모 : 업체당 융자금 2억원 한도 내 발생이자 보전
 - 지원금리 : 변동금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개선자금 이자율 적용
 - 타 자금의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자율 범위 내에서 지원
 - 기준 금리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적용 이율과 타 자금 간 이자 차액은 사업장 부담
 - 이자 지원은 사업장에서 매분기 발생이자를 분기 마지막일까지 납부 완료 후 다음달 5일(휴일 제외)까지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보조금 지급은 예산 범위 내 시행하며 보조금 신청은 매년 예산 확보 시에만 신청 가능

5. 지원제외 대상

- 접수일 현재 환경개선자금 융자금 이자 지원을 2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 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통해 이자 보전을 받고 있는 사업장
- 환경과태료 및 배출부과금 미납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매 분기 익월 5일까지 해당 분기 발생이자에 대한 이자교부금을 신청하지 않을 시에는 다음 분기에 신청 불가 (해당 분기 이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015년 2분기 이후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기업환경개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방지지설 설치자금의 융자 시 이자는 제외

6. 지원결정 취소 대상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7. 접수 및 신청기간

- 접수처 :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032)440-3505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1138)
- 신청기간 : 2019. 1 ~ 자금 소진 시까지 (매분기 익월 5일 이내)

이자발생기간	이자교부신청서 제출일	비 고
1/4분기(1.1 ~ 3.31)	4. 1 ~ 4. 5	
2/4분기(4.1 ~ 6.30)	7. 1 ~ 7. 5	
3/4분기(7.1 ~ 9.30)	10. 1 ~ 10. 7	
4/4분기(10.1 ~ 12.31)	2020. 1. 2 ~ 1. 7	

8. 신청 구비서류

- 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개선자금 융자승인업체
- 환경개선자금 이자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1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개선자금 융자승인서 1부.
- 나. 기타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물질 방지지설 설치 자금
-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대기(악취), 수질분야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1부.
 - 시공업체 사업자 등록증, 시공업체 방지지설 등록증(면허증 등) 1부.
 - 중소기업 환경오염물질 방지지설 설치 자금 융자승인서 1부.
 - 방지지설 설치 자금 투자 내역 1부.
- 다. 기타 접수처에서 요구하는 방지지설 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9.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032-440-35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 - 491호

**도시계획시설(도로명: 중로1류23호선, 공사명:
범양아파트 주택재건축 도로구조 개선공사)
공사완료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6-234(2016.10.10.)호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공사 완료한 도시계획시설 【도로명: 중로1류23호선, 공사명: 범양아파트 주택재건축 도로구조 개선공사】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19. 3. 11.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남동구 간석동 616-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 (도로:중로1류23호선)
 - 명칭: 범양아파트 주택재건축 도로구조 개선공사(SET-BACK)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면적: A=413.0m²
 - 규모: 도로 Set-back L=142m, B=4~6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범양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 조일원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석정로 461번길 7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19. 3. 31.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 - 493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 3. 6.

인 천 광 역 시 장

변경 등록 사항

구분	등록번호 (등록일자)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비고
당초	제2011-0- 인천광역시44호 (2011.9.26.)	인천생활원예 네트워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숙골로 61-21	이은교	
변경	상동	상동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도로 260	정경숙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494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등록사항

등록번호	제2019-0-인천광역시-3호		
단체명	한국다양성연구소		
대표자	성정숙		
주사무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배로 432번길 3, 3층		
주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성 사회를 위한 청소년, 시민의 다양성 교육 ○ 다양성교육효과측정 등 다양성 연구 ○ 사회적 소수자, 약자의 권리옹호 활동 ○ 국내외 인권단체 및 사회복지 기관과의 연대 교류 ○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에 필요한 사업 		
등록일자	2019. 3. 6.	등록구분	신규

2019년 3월 6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497호

일반측량업 등록취소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일반측량업 등록사업자의 등록취소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3. 6.

인 천 광 역 시 장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처분일자
일반측량업 (022881)	지구측량설계공사	송성일	인천광역시 중구 백운로1(중산동)	2019.3.6.
위반내용	등록기준 미달 - 기술인력 미확보			
처분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4호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498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복합용도지구, 용현·학익 2-1블록 도시개발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고·열람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복합용도지구, 용현·학익 2-1블록 도시개발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3. 7.

인 천 광 역 시 장

1. 재열람 사유

- 용도지구(복합용도지구) 신설 등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복합용도지구, 용현·학익 2-1블록 도시개발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요내용

- 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664-3번지 일원
- 결정(변경)(안) 주요 내용
 - 용도지구: 복합용도지구 신설(7,617.5㎡)
 - 기반시설: 공공시설 변경(18,833.1㎡ → 11,215.6㎡)
 - 가구·획지계획: 복합시설용지 신설(7,617.5㎡)
 - 건축물 등 계획: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이 50m 이하
 -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조업소, 수리점,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공동주택

2. 열람 기간 및 의견 제출 방법

가.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의견제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열람 장소

가. 인천광역시청 도시균형계획과(032-440-4634, 남동구 정각로 29)

나. 미추홀구청 도시창생과(032-880-4509, 미추홀구 독정리로 95)

다. 용현5동 주민센터(032-728-6225, 미추홀구 토금북로 60)

4. 관계 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507호

정보통신공사업자 행정처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자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6일

인 천 광 역 시 장

○ 행정처분 사항

정보통신 공사업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업 소재지	법령위반 내 용	행정처분 내 용
제 320226호	(주)씨엔전자 이 종 간	인천 서구 백범로 681 가동 304호(가좌동)	정보통신기술자 등록기준 미달	영업정지 15일 (2019.2.28.~ 2019.3.14.)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514호

남동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준공인가 공고

남동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남촌동 644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준공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시설계획과, ☎ 032-440-4673), 남동구청(교통행정과, ☎ 032-453-268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9. 3. 11.

인천광역시장

1. 사업의 명칭: 남동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 남촌동 644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①	사업시행자	남동국가산업단지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②	사업시행자	남동국가산업단지 남촌동 644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 남동구청장 이강호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남동구청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논현동, 고잔동 일원

- 사업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44번지

나. 면적: 9,574,049.9㎡

- 산업단지 내 주차장: 6,514.5㎡

4. 준공인가연월일: 2019년 3월

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해당없음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515호

「제5회 생명의 바다 그림대회」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제5회 생명의 바다 그림대회」 행사를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9. 3. 11.

인천광역시장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제5회 생명의 바다 그림대회
- 나. (일시) 2019. 4월 ~ 12월
- 다. (장소) 인천시 전지역
- 라. (대상) 유치부·초·중·고등학생 및 학부모
- 마. (사업비) 50백만원(시비)
- 바. (내용) 바다를 주제로 그림 그리기, 수상자 심사 및 시상식 등

2. 신청자격

- 가. 공고일 기준 사무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공연·축제·문화행사 사업이 가능한 법인·단체이거나
- 나. 최근 1년 이내 생명의 바다 그림대회 또는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법인·단체로서
- 다.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공익적인 문화행사 및 축제 관련 실적이 있는 법인·단체

【 신청자격 제외 대상】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최근 5년 이내 보조금 지원 관련 법령 위반한 법인·단체

3. 공모 및 접수

- 가. (공모기간) 2019. 3. 11(월) ~ 3. 22(금) / 10일간
- 나. (접수기간) 2019. 3. 21(목) ~ 3. 22(금) 17:00까지/ 2일간(평일 근무시간)
- 다. (접수장소)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본관 5층), ☎032-440-4022
- 라. (접수방법) 방문접수(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소속 직원)

4. 제출서류

- 가. 공모신청서(위임장), 법인(단체)소개서, 공모 신청자 서약서 각1부
- 나. 사업계획서(프리젠테이션 자료 포함) 7부
- 다. 실적증명서 1부
- 라.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및 법인(단체)등록증 1부
 - ※ 신분증(대리인은 위임장 포함)을 지참하고 제출서류는 전자파일로 USB에 저장하여 별도 제출

5.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 가. (선정방법)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에서 심의·선정
 - 단독 신청 : 재공고 후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 및 선정
 - 복수 신청 :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 및 선정
 - ※ 재공모시에도 1개일 경우 적격심사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함.
- 나. (선정기준)
 - 시비보조금액의 최소 10%이상 자부담 의무적 부담
 - 사업계획의 적절성
 - 행사내용의 적합성
 - 사업 수행능력
- 다. (선정통보) 선정 단체 개별 통보

6. 보조금 집행, 사업정산 및 평가

- 가.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실행계획서, 이행보증보험증권(자부담),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통장사본 제출 / 미 제출시 선정자격 취소
- 나. 보조금과 자부담금은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 및 사용
- 다.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2개월 이내 제출(별도 서식)

7. 기타사항

- 가. 자부담은 시비보조금액의 최소 10%이상 의무적 부담
- 나. 반드시 지정된 서식을 사용하고 요건 부적합시에는 미접수 처리함.
- 다. 법인·단체에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라.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 및 선정 제외함
- 마. 보조금 집행시는 보조금결제전용카드로 구비하여 집행하여야 함.
- 바.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 사.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보조금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함.
- 아. 보조금 관련 제반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교부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거나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제제를 취함.
 -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호) 등
- 자. 심사결과 적격 단체가 없을 시에는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차. 참가등록을 한 법인·단체가 1개일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재공모시에도 1개일 경우 적격심사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함.
- 카. 공모신청서에 서류미비로 인한 심의 시 탈락은 제출자 책임임.
- 타. 선정된 사업은 사업추진과정 중 행정절차 이행에 있어 제출기한을 엄수하는 등 성실하게 임하여야하며 불성실한 경우 사업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비 전액을 환수 조치함.
- 파.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담당부서(문화예술과)에 문의.

※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 (032-440-4022)

붙임1 공모 신청서

- 제5회 생명의 바다 그림대회 보조사업자 선정 - 공모 신청서

신청 개요	업체(단체)명			
	소재지	□□□-□□□		
	대표자	성명 :	담당자	성명 :
		휴대전화 :		휴대전화 :
E-mail :		E-mail :		
단체 소개	설립연도			
	설립목적			
	인적구성 (조직도)			
	자산내역			
	활동실적	※ 사진, 인쇄물, 보도자료 등 첨부		
제출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프리젠테이션 자료 포함) 7부. ○ 실적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및 법인(단체)등록증 1부. 			
<p>상기 기재내용과 제출 자료는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u>제5회 생명의 바다 그림대회</u>에 대한 보조사업자 공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9년 3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단체명 (직인) 대표자 (사인)</p> <p style="text-align: center;">인천광역시장 귀하</p>				

붙임2 | 위임장

- 제5회 생명의 바다 그림대회 보조사업자 선정 - 위 임 장

대표자	법인또는 단체명		법인(단체)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업체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제5회 생명의 바다 그림대회』에 제안함에 있어 상기인을 법인(단체)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9. 3.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모든 책임을 짐

붙임3 | 법인(단체) 소개서

- 제5회 생명의 바다 그림대회 보조사업자 선정 - 법인(단체) 소개서

법인(단체)명			대표자			
대표자 주요경력	○ 주요경력 : ※ 다수인 경우 2~3인까지 기재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단체연혁	○ '90.11.10 ○○ 센터 창립 ○ '95. 7.18 ○○ 사단법인 설립허가 (해당부서명 :) ○ '98.10.28 ○○ 인천시비영리민간단체등록설립(해당부서명 :)					
주요사업	○ 정관 또는 회칙의 규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인력현황	○ 회원 수 : 명 ○ 사무국직원수 : 명 (회장1, 사무총장1, 부장2, 직원1 회계담당 등)					
조직도표	※ 별첨가능 <div style="text-align: center;"> <pre> graph TD A[대표 (공동대표)] --- B[○○고문] A --- C[○○자문회의] A --- D[사무총장 (국장)] D --- E[○○회의] E --- F[군·구지회] E --- G[○○국·부] E --- H[○○부] E --- I[○○부·과] E --- J[○○과] </pre> </div>					
조직현황	○처/ ○국/ ○과/ ○팀		회원수	○○○명 (2019.2월 현재)		
	대표자 및 임원 현황 (※ 따로 붙임 가능)					
	직위	성명	전화번호	현직업	주요경력	
			010-0111-0111		•	
					•	
					•	
					•	
사무국 직원 현황(상근/비상근 구분)						
계	사무국장	부장	과장	팀장	기타()	
0명/ 0명	0명/ 0명	0명/ 0명	0명/ 0명	0명/ 0명	0명/ 0명	

붙임4 공모 신청자 서약서

- 제5회 생명의 바다 그림대회 보조사업자 선정 -
공모 신청자 서약서

단 체 명	
-------	--

본 단체에서 제출한 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붙임 자료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아래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만일 제출한 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였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 될 경우 사업의 선정 무효,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 본 단체는 사업자 선정방식에 동의하며 최근 5년 이내 보조금 지원 관련 법령 위반을 하지 않았으며 거짓으로 확인되어 보조사업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보조사업자로 선정 되지 않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사업계획서 및 협약서의 내용대로 성실히 공연을 진행한다.

2019년 3월 일

신청인 : 단체명	(직인)
대표자	(사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붙임5 사업 계획서

- 제5회 생명의 바다 그림대회 보조사업자 선정 - 사업 계획서

사업명	☞ 표지의 신청사업명과 동일하게 기재			
사업기간	2019. ○. ○. ~ ○. ○.	총 기간일수	총 ○ 일	
사업장소	☞ 행사 메인장소 혹은 주요장소를 기재. 예) ○○○, ○○○ 외 3개소			
사업내용	<input type="radio"/> ☞ 세부 프로그램명을 간략히 기재 <input type="radio"/>			
참가규모 ☞ 참여 예술단체 및 예술가 전체 규모를 기재	예술단체	계 ○팀	국내 ○팀	해외 ○팀
	예술가 (스태프 포함)	계 ○명	예술가 ○명	스태프 ○명
사업비(예산) ☞ 지원신청내용을 포함한 예산계획을 기재	구분	예산액(원)	비율(%)	확정 여부
	계			
	시 보조금	50,000,000	100	확정
	자체 부담금			
	민간 후원금		10	
주최	☞			
주관	☞			
후원	(확정)	☞ 확정된 후원 혹은 협력기관, 기업체 등을 기재		
	(미정)	☞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협의 중인 기관, 기업체 등을 기재.		
신청단체	<input type="radio"/> 단체명 : <input type="radio"/> 대표,임원, 실무 책임자 등			
	직위 직책	이름	연락처(핸드폰)	e메일
	☞ 실제 사업 담당자의 해당내용을 기재			

1

사업 목적 및 기획 의도

 사업 목적

- ☞ 본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동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게 기술하여 주시되, 사업 추진 배경이나 필요성 등도 추가로 기재

-

○

-

 행사 주제 (혹은 기획 의도)

- ☞ 2019년 사업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에 대한 콘셉트를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

-

○

-

2

세부사업계획

 사업개요

- 기 간 :
○ 장 소 :
○ 내 용 :

 사업 목표

구 분	참여인원 (명)	행사규모 (명/팀)		비 고
		주요행사	부대행사	

☞ 향후, 결과보고서 정확한 산출근거를 제시 / 객관적인 증빙자료(사진, 통계, 보도기사, 관련 리뷰 등)

세부 프로그램 내용 (상세히 기술)

○ 주요 행사 (예시)

구분	내용		관람객(명)	비고
본 행사	일시	2019. ○. ○		
	장소	○○○		
	내용			
부대행사	일시	2019. ○. ○ ~ ○. ○		
	장소	○○○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일시			
	장소			
	내용			

○ 사업 장소

장소명	행사장 규모 (참여인원)	비고

 지역성과 연계된 특성화 (혹은 차별화) 방안

○ ☞ 개최 지역의 특성 또는 지역적 소재(역사, 문화, 장소, 인물 등)가 지닌 독창성과 연관된 본 사업의 차별화 방안에 대해 기술

-

○

-

추진 프로세스(추진일정 및 절차)

일정	추진내용	비고
2019. ○~○	기본 방향 설정 및 자료 조사	
2019. ○~○		
2019. ○~○		
2019. ○~○		

☞ 신청 사업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절차를 세부적으로 기재
주제 선정, 참가자 결정, 사업 준비 및 전개 과정, 결과물 공유 및 확산 등 신청 사업의 전 과정에 대한 추진 방법을 사업 특성에 맞도록 설명

안전관리계획 ☞ 공연법 상 재해대처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 시설관리 책임자, 안전관리 조직도



○ 비상시 조치, 연락처

구분	조치담당업무	책임자(소속)	연락처

○ 안전관리인력 확보

구분	조치담당업무	관료요원(소속)	비고

○ 안전대비 관련 단체보험 가입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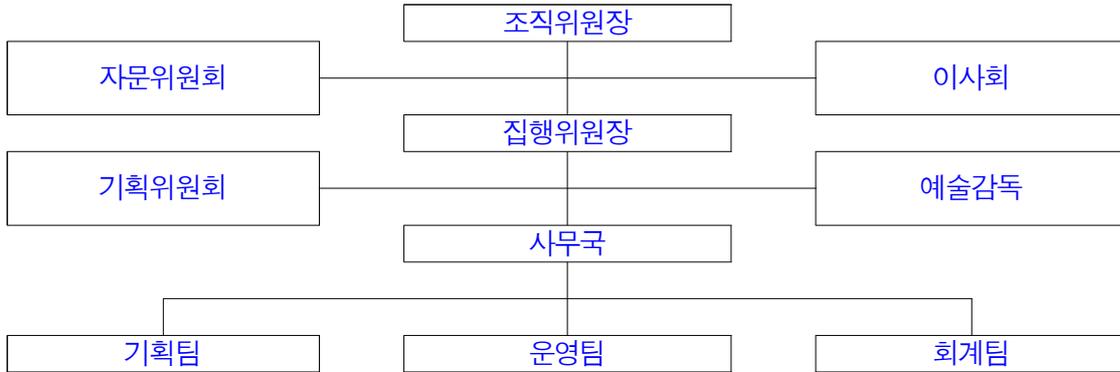
-

안전관리 예산

항 목	산출근거	지출액	신청액
안전요원 인건비	10만원×10인×7개 행사	7,000,000원	7,000,000원
행사 보험료	200만원×1식	2,000,000원	자부담
구급약품 구입	50만원×1식	500,000원	자부담

3 조직 및 운영 인력

운영 조직도(예시)



☞ 사업을 주최(주관)하는 조직의 구성을 알 수 있는 조직도를 위와 같은 이미지나 도표 형태로 작성

운영 인력

○
-

구분	역할	성명	현직 / 주요경력	비고
①		○○○		상근
⑥		○○○		비상근

☞ 위 운영 조직도의 세부 구성 인적사항을 위 예시와 같이 작성

4 예산 계획

수입

(단위 : 원)

구분		금액	비율(%)	확정 여부
사업수입 (A)	사업 수입		00.0%	
	사업 외 부대수입		00.0%	
공공재원 (B)	국고보조금(문체부 및 소속기관)		00.0%	
	지자체보조금 (지방자치단체)		00.0%	
	지자체보조금 (기초자치단체)		00.0%	
	기타 국고 및 공공기관 지원금		00.0%	
민간재원 (C)	기업협찬 후원금		00.0%	
	개인 기부금		00.0%	
자체부담 (D)	순수한 단체의 자체 부담금		00.0%	
계(E)			100.0%	
재정자립도	[(A+D) / 총 수입액(E)] × 100%		00.0%	

☞ 본 공모사업의 2019년도 재원은 시 보조금으로 확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확히 기재.

지출 예산

☞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은 동일해야 하며, 지출예산의 산출근거는 세부적으로 작성
 지출예산 중 간접사업비(상주 직원 인건비, 업무추진비, 단체 운영 경비)는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음
 (보조금 지원은 직접 사업비로 제한)

(단위 : 원)

구분	항목	산출 근거	지출액	지원 신청액	
				보조금	자기부담금
홍보비	광고게재				
	행사 홍보비				
사업비	심사비				
	인쇄비				
	행사장 시설비				
	부대행사비				
일반운영비	대관료				
	보험료				
계					

5 참가자 확보를 위한 홍보 계획

홍보 계획

- 예) 사전 홍보 계획
-
- 예) 매체 홍보 계획
-
- 예) SNS 및 온라인 홍보 계획
-
- 예) 인쇄물 또는 설치물 제작·활용 계획
-
- 예)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홍보 활성화 계획

참가인원 확보 계획

- 예) 관련 이벤트 및 캠페인 활용 계획
 -
-
-

6

파급효과(기대효과)

바다의 중요성 인식개선에 대한 기여도

-
-
-
-

자체 모니터링 및 환류 계획

- 예) 참가자 만족도 조사 추진
 - 조사 시기, 조사 방법, 주요 조사내용, 결과 환류
- 예) 자체 모니터링 및 평가 실시
 - 조사 시기, 조사 방법, 주요 조사내용, 결과 환류

7

참고자료(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신청사업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참고 자료(언론, 전문지 보도 등)

붙임6 실적 증명서

- 제5회 생명의 바다 그림대회 보조사업자 선정 -
실적 증명서

신청인	법인(단체)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제출처			
	증명서용도		제안서 응모 제출용			
	범위 및 기준		공익적인 문화행사 및 축제 관련 실적			
사업수행 실적내용	사업명					
	사업개요					
	총사업금액		₩	100%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원)	
위 사실을 증명함		2019년 월 일				
발급기관		기관명 :		(인)		
발급부서 :						
전화번호 :		담당자 :		(인)		

- 주)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실적은 발주 기관의 실적증명서를 제출하고, 민간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를 제출하고 세금계산서 사본 또는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4. 공고일 이후에 발행된 실적증명서만 인정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518호

2019년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공고

환경시설 개선에 따른 중소기업장의 재정적 어려움 해소 및 우리 시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9년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3. 8.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 3월~ 12월
- 예산규모 : 568,400천원
- 신청기한 : 2019년 11월까지
- 지원대상 : 대기환경개선 및 사업자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질소산화물 저감 효율을 갖는 저녹스버너(캐스케이드 방식 포함) 교체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금액 : 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용량에 따라 지원

(단위 :천원)

용량별	국비	지방비	용량별	국비	지방비
0.1톤이상 0.3톤미만	1,774	710	4톤이상 5톤미만	7,230	2,892
0.3톤이상 0.5톤미만	3,101	1,240	5톤이상 6톤미만	7,969	3,188
0.5톤이상 0.7톤미만	4,210	1,684	6톤이상 7톤미만	8,434	3,374
0.7톤이상 1톤미만	4,761	1,904	7톤이상 8톤미만	9,066	3,626
1톤이상 2톤미만	5,152	2,061	8톤이상 10톤미만	10,046	4,018
2톤이상 3톤미만	5,461	2,184	10톤 이상	10,861	4,345
3톤이상 4톤미만	6,773	2,709	※ 1톤 = 619,000kcal로 산정		

- 지원항목 : 저녹스버너 및 부대설비(제어판넬, 송풍기 등)
- 지원범위 : 사업장별 1대 우선지원(예산범위 내 연간 3대까지 지원)

2. 보조금 지원 신청서 접수

- 기간 : 공고일 ~ '19. 11월까지
- ※ 지급대상자 결정 후 신청자 미달 시 사업비 소진 시까지 사업 추진
- 접수장소 : 우리 시 방문(대기보전과) 또는 우편 접수
- 구비서류
 - 저녹스버너 설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1부.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서 사본(해당시설에 한함) 1부.
 - 공사 계약서 및 세부 내역서 1부.
 - 설계도면, 설비규격 등의 사양서 1부.
 - 저녹스버너 인정검사 성적서 사본 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중소기업의 경우)

3. 보조금 지급 청구

-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저녹스 버너 설치 후 보조금 지급 요청서 1부 제출

4. 지원 우선순위

-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르되, 각 호 내에서는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큰 사업장을 우선 지원
 - ① 제조업 사업장
 - ② 제조업 이외의 사업장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동일한 경우 우선 순위>

- ① 연료전환(B-C유 → LNG) 사업장
- ② 연료전환(경유 → LNG) 사업장
- ③ 버너 설치년도가 오래된 사업장
- ④ 버너용량이 큰 사업장

5. 보조금 지급조건

-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 통지 후 4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고, 공사 완료한 사업장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 기한 내 공사를 착수하지 못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 될 수 있음

6.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취소 및 보조금 반환지원제외 대상

- 신규 설치 가스 또는 경질유(경유, 등유 등) 보일러에 포함된 저녹스 버너 가운데 보일러 규모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저녹스 버너 설치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성실하게 작성 하여야 하며 허위로 기재 한 것이 확인된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함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 지급대상자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 설비 탈거 한 경우 등

7. 기타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세부 추진사항은 「2019년도 중소기업장 지원 보조금 집행관리 실무요령」 (환경부 지침)에 따르며,
-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Tel 440-3506)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저녹스버너 설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양식) 등 1부. 끝.

[제3호 서식]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

저녹스버너 설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1. 신청인(사업주)			
대표자			
주소	(-)	전화번호	() -
2.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업종	
설치소재지	(-)	중소기업 여부	
전화번호	() -	상시 근로자수	명
대기종별		보일러·건조시설 용량	톤/시간 (kcal)
		냉온수기 용량	RT (kcal)
설치대상	기존 버너설치연도: 년 월, 보일러(냉온수기·건조시설) 설치연도: 년, 사용연료:		
3. 설치 저녹스버너 개요			
제작사		판매사	
모델명		사용연료	
정격 연료사용량	(l/Hr, Nm ³ /Hr)	적용 보일러 (냉온수기·건조시설)용량	톤/시간
4. 설치 대상 보일러·냉온수기·건조시설(간접가열 시설) 개요			
정격증발용량	(Ton/Hr)	종류(형식)	
전열면적	(m ²)	연소실 용적	(m ³)
정격열부하량	(Kcal/m ² ·Hr)	정격 압력	(Kgf/cm ²)
5. 신청 금액			
총 소요금액	천원	보조금신청금액	천원
6. 신청 설비 타기관 등의 용자 및 보조금 기사용 현황			
자금 사용 여부		사용 자금용도 및 금액	
위와 같이 ()년도 저녹스버너 설치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신청합니다.			
20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서 사본(해당시설에 한함)			
2. 공사 계약서 및 세부 내역서			
3. 설계도면, 설비규격 등의 사양서			
4. 저녹스버너 인정검사 성적서 사본			
5. 사후관리검사 이행 동의서			
6.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중소기업의 경우)			

사후관리검사 이행 동의서

저녹스버너 설치 익년부터 7년간 질소산화물 저감효율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저녹스버너 사후관리검사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장 (인)

[제5호 서식]

보조금 지급 요청서			
사업명			
신청인 (사업주)	성명		
	주소		
사업장개요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보조금 승인 금액		지급 요청금액	
입금 희망은행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p style="text-align: center;">보조금 지급대상 시설에 대해서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20 . . .</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인천광역시장 귀하</p>			
<p>※ 구비 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사비 소요금액 산출내역서 1부. 2. 입금 희망통장 사본 1부. 3. 설비 설치 내역서 1부 4. 공사관련 사진 1부.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520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공고·열람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교통관리과(☎032-440-392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3. 11.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99-1번지, 2930-1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 【명칭】 운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규모(2개소)
 - 운서동 2899-1번지 : 516.8m²
 - 운서동 2930-1번지 : 650.8m²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9. 10.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과 같음
7.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붙임]

토지조서 및 토지의 소유자

1. 운서동 2899-1번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동	본번	부번		공부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계	1필지					516.8	516.8			
1	중구	운서동	2899	1	차	516.8	516.8	조○경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2. 운서동 2930-1번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동	본번	부번		공부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계	1필지					650.8	650.8			
1	중구	운서동	2930	1	차	650.8	650.8	임○석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2019-42호

2019 IFEZ 문화행사 지원사업 공모 (재공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IFEZ)에서는 IFEZ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2019년에 추진하는 문화행사 3건에 대한 행사를 주관할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재공모하여 지원할 예정이오니 창의적이고 유능한 법인 및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 3. 6.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 사업개요

1. 2019 청라뷰티페스티벌

- 일 시 : 2019. 6. 15.(토) (1일 간)
- 장 소 : 청라 커널웨이 일대
- 보조한도액 : 100,000,000원(자부담 10%이상 의무)
- 주 요 내 용 : 청라의 아름다운 도시 정체성을 반영한 뷰티 축제
 - 패션·미용·주얼리 등 뷰티와 관련된 산업 전시 및 쇼 등
 - 그 밖에 공연, 전시, 체험·연계 행사 등

2. 2019 청라와인페스티벌

- 일 시 : 2019. 9. 20.(금) ~ 9. 22.(일) (3일 간)
- 장 소 : 청라 호수공원 일대
- 보조한도액 : 200,000,000원(자부담 10%이상 의무)
- 주 요 내 용 : 청라의 아름다운 도시 풍경을 배경으로 즐기는 와인을 소재로 한 축제
 - 다양한 와인 시음행사 및 와인관련 문화프로그램, 와인의 역사 및 종류 등 교육프로그램 등
 - 그 밖에 공연, 전시, 체험·연계 행사 등

3. 2019 청라 자전거 페스티벌

- 일 시 : 2019. 10. 12.(토) (1일 간)
- 장 소 : 청라 호수공원 야외음악당 일대
- 보조한도액 : 100,000,000원(자부담 10%이상 의무)
- 주 요 내 용 : 자전거를 소재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주민 참여형 축제
 - 자전거 퍼레이드 및 개인 및 그룹, 단체가 함께하는 각종 자전거 관련 체험 등
 - 그 밖에 공연, 전시, 체험·연계 행사 등

※ 축제별 시기 및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음. 공모신청 시 임의변경 불가

※ 우천 시 연기 등의 사항은 선정된 보조사업자와 합의하여 결정

□ 신청자격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행사 및 축제 사업이 가능한 법인·단체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1건 이상 공익적인 문화행사 및 축제 관련 실적이 있는 법안단체

<공모 참가 제외 대상 법인 및 단체>

- 특정정당, 종교단체의 지지 법인·단체
 - 전년도 인천시 문화행사 및 축제 보조 사업으로 선정 후, 법인·단체의 귀책사유로 중도 포기한 단체
 - 법인·단체의 활동과 관련하여 불법 사실 등으로 고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법인·단체
 - 대표자 또는 관리인, 상근직원, 기타 사무실이 없는 법인·단체
 - 동일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또는 지원 확정된) 법인·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법인·단체
 - 최근 5년 이내 보조금 지원 관련 법령 위반한 법인·단체
- ※ 사업선정 후 신청자격 상실, 중복지원 사실, 부적격 요인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서 제출

- 기 간 : 2019. 3. 6.(수) ~ 3. 11.(월) (평일 09:00 ~ 18:00)
- 제 출 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보문화과
 - 청라뷰티페스티벌, 청라 자전거 페스티벌 : 김경숙 주무관(453-7093)
 - 청라와인페스티벌 : 김태경 주무관(453-7094)
-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송도동 24-4 G타워) 28층
- 방 법 : 방문제출(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소속 직원)
 - ※ 인터넷, 우편접수 불가
 - ※ 법인(단체)는 5개 행사에 대해 **중복신청 할 수 없음(1개 행사만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하단의 서류를 모두 구비
 - 공모신청서 등 부속서류 각 1부 (서식 1 ~ 4)
 - 사업계획서 9부 (서식 5)
 - 실적증명서 각 1부 (서식 6)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1부
 - 단체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 ※ 신분증(대리인은 위임장 포함)을 지참하고, 제출서류는 전자파일(직인생략 가능)로 USB에 저장하여 별도 제출
- 사업계획서 구성
 - 축제 목적, 구성 및 진행 : 세부기획 및 진행방법 제시
 - 축제 컨셉 및 방향, 기대효과
 - 행사장 구성도 및 개최기간(시간)
 - 프로그램 구성 : 킬러콘텐츠, 공연, 체험·기획·연계 등 프로그램, 출연진, 참가단체 등 프로그램의 수준과 내용, 진행방법 등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제시
 - 운영 및 관리 : 화장실 및 주차장 확보 관리, 식수 등 편의시설 확충 및 운영 방안, 행사장소 접근성 확보 방안, 관람객 안내 진행 요원 배치, 장애인 및 노약자 이용편의 대책 등
 - 관람객 확보를 위한 홍보 계획 및 예상 관람객 수
 - 집행항목별 세부예산 집행계획(자부담을 포함하여 구분하여 작성)
 - 장비확보, 설치, 관리 및 철거 방안 등
 - 현장운영 및 안전관리계획(진행 및 안전요원 운영 방안, 보험 등)
 - 단체(사업자) 소개 : 설립연도 및 목적, 대표자 및 인적구성, 자산내역, 활동실적, 정관(회칙) 등
 - 기타사항 : 청소(주변정리), 행사장 원상 복구 및 우천 등 비상대책

□ 심사방법

- 선정방법 : 신청서류, 인터뷰 등 담당부서 검토, 심사위원회,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자격심사 : 제출한 서류를 통한 사전적격심사(부적격자에게는 공모신청서에 작성한 휴대전화로 메시지 통보)
 - 자체심사(심사위원회) : 자격심사에 선정된 법인(단체)을 대상으로 사업 평가 심사위원회에서 평가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최종심의
- 선정기준 : 단체역량, 사업내용, 예산 등
 - 예산편성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산출기초가 불명확할 경우 이를 조정하여 지원 사업비를 결정
- 선정사항 :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

□ 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9. 3. 13.(수) 14:00 ~
- 장 소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중회의실
 -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송도동 24-4 G타워) 28층
 - ※ 일시 및 장소는 IFEZ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3. 12.(화)까지 IFEZ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하고 공모신청서에 작성한 휴대전화로 메시지 통보
- 진행방법
 - 사업별 신청자를 대상으로 개별 입장하고 제안내용 발표 후 심사위원들의 질의에 답변(발표 시간은 10~20분 사이로 지원법인(단체) 수에 따라 심사당일 알림,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의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평가항목별 점수로 심사
 - 사업계획서 내 심사에 필요한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거나, 제시한 경우라도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등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사위원들의 합의에 의하여 처리
 - 배점기준 등은 심사위원회 의결로 조정할 수 있음

○ 심사기준표

분야	항목	심사내용	
단체 역량 (30)	단체의 적격성 (10)	법인(단체) 활동 범위와의 적합성	
		사업수행의 전문성	
		공익사업 활동 기간 및 실적	
	사업 추진의지 (10)	자기자금 부담비율	
		자부담 확보방안 및 실현가능성	
	추진 인프라 (10)	조직구성 등 지원체계 적정성	
인적구성의 적합성 및 효율성			
사업수행 능력(유사실적, 추진역량 등)			
사업 내용 (60)	추진계획 적정성 및 현실성 (60)	계획의 적합성 (36)	사업의 적격성 및 공익성
			사업목표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기여도 및 수혜도
			사업비 대비 목표 달성의 효과성
			관련 기관 및 외부자원과의 연계성
			프로그램 구성의 구체성 및 완성도
	추진의 현실성 (24)	세부실행계획 및 진행방법의 실현가능성	
		행사장 구성, 운영 및 관리의 준비 정도	
		안전관리 계획 및 원상복구 등 대책	
		홍보 방안 및 관람객 확보 가능성	
예산 (10)	사업운영 적정성 (10)	예산편성 구체성, 타당성 및 효율성	
		운영계획 적정성, 사후관리 계획	

□ 보조사업자 선정

- 시비보조액의 최소 10% 이상 의무적 부담
- 심사 절대평가 기준
 - 심사결과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법인(단체) 중에서 최고득점자를 선정하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항목별 심사의견을 받아 실무검토 의견서 작성 및 제출
 - ※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각 항목별 위원 평균 점수가 배점의 50% 미만의 점수가 있는 경우 각 항목별 합계가 최고득점자라도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 재공고 후 지원 업체 1개일 경우 자체심사위원회 평가로 선정 (심사 절대평가 기준 적용)
- 포기 또는 과정 중 부적격 판정 시 후순위자 선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심의(결정, 3월 말 예정)
- 선정결과는 IFEZ 홈페이지(공지)에 게재하고 선정된 보조사업자에게는 공모신청서에 작성한 휴대전화로 메시지 통보

□ 보조금 교부, 수행, 정산 및 평가

- 대 상 : 2019 문화행사 보조사업 지원이 결정된 법인(단체)
- 보조금의 교부, 수행, 정산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여 추진
 - 동일단체 유사·중복사업 등 보조금 지원불가 단체 검토,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등 보조금 교부 전 확인사항 검토 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교부(교부결정시 보조금 청렴사용서약서 작성 및 제출)
 - 선정된 법인(단체)는 보조사업 지원 결정액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원사업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신청 : 세부계획서 제출 시 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
 - 자부담금은 별도의 통장에 입금하고 보조금교부신청 시 사본 제출
 - 보조사업 완료 후 60일 이내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제출 서류 포함)’ 제출
 - 성과 평가 (익년도 공모 시 반영)

□ 교부조건

- 친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또는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 있을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협약이 된 이후라도 협약 해지
- 보조사업비 중 자부담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교부결정 후에도 교부결정 취소 또는 환수
- 행사에 참여하는 일반 시민들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방안을 찾아 예방하고,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에 따라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한 경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 절차를 이행

□ 유의사항

- 반드시 지정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신청자는 사업계획서를 숙지하여 제반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부정한 행위가 발견될 경우 감점 및 참가 자격을 박탈할 수 있음
 - 공모신청서 서류미비로 인한 심사탈락은 제출자 책임임
- 심사결과 적격 단체가 없을 시에는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용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함
- 공모심사일 변경 등 모든 안내는 공모신청서에 작성한 휴대전화로 전화 및 메시지로 통보하며, 3회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아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 공모 신청자와 심사위원 간 질의 및 답변 내용은 계획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의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 지방보조금은 별도 계정(전용통장)으로 관리하고, 지방보조금 결제 전용 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함
- 보조금 관련 제반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교부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거나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제재를 취함
 -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호) 등
- 우리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 철회 및 사업비 회수
- 선정된 사업은 사업추진과정 중 행정절차 이행에 있어 제출기한을 엄수하는 등 성실하게 임하여야 하며, 불성실한 경우 사업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비 전액 환수 조치함

□ 문의사항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보문화과

- 청라뷰티페스티벌, 청라 자전거 페스티벌 : 김경숙주무관(032-453-7093)
- 청라와인페스티벌 : 김태경주무관(032-453-7094)

【서식 2호】

- 2019 IFEZ 문화행사 보조사업 -
법인(단체) 소개서

법인(단체)명			대표자		
대표자 주요경력	○ 주요경력 : ※ 다수인 경우 2~3인까지 기재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단체연혁	○ '90.11.10 ○○ 센터 창립 ○ '95. 7.18 ○○ 사단법인 설립허가 (해당부서명 :) ○ '98.10.28 ○○ 인천시비영리민간단체등록설립(해당부서명 :)				
주요사업	○ 정관 또는 회칙의 규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인력현황	○ 회원 수 : 명 ○ 사무국직원수 : 명 (회장1, 사무총장1, 부장2, 직원1 회계담당 등)				
조직도표	※ 별첨가능 <pre> graph TD A[대표 (공동대표)] --- B[○○고문] A --- C[○○자문회의] A --- D[사무총장 (국장)] D --- E[○○회의] E --- F[군·구지회] E --- G[○○국·부] E --- H[○○부] E --- I[○○부·과] E --- J[○○과] </pre>				
조직현황	○처/ ○국/ ○과/ ○팀		회원수	○○○명 (2019.2월 현재)	
	대표자 및 임원 현황 (※ 따로 붙임 가능)				
	직위	성명	전화번호	현직업	주요경력
			010-0111-0111		•
					•
					•
					•
사무국 직원 현황(상근/비상근 구분)					
계	사무국장	부장	과장	팀장	기타()
0명/ 0명	0명/ 0명	0명/ 0명	0명/ 0명	0명/ 0명	0명/ 0명

보조금 지원현황 (국가, 자치단체, 기업, 민간재단 등)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액(천원)						
	2016년		2017년			2018년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현황						
	연도별	사업명	사업비(천원)			사업내용	
			계	보조금	자부담		
	2016						
	2017						
	2018						
		천원	보조금	천원	%		
			자체수입	천원	%		
2018년 예산현황	예산액 세부 수입내역(천원)						
	계	보조금		자체수입			
		인천시	군·구청 등	회비	기부금	사업수익	기타
	금 액						
	비율(100%)	%	%	%	%	%	
최근 3년 공익활동 실 적	사업명	사업기간	지원대상 /장소	사업비	운영실적		
2019년 주요사업 계 획	사업명	사업기간	지원대상 /장소	사업비	운영내용		

※ 정관(회칙)은 별도 첨부

【서식 4호】

- 2019 IFEZ 문화행사 보조사업 -
공모 신청자 서약서

법인(단체)명	
---------	--

본 법인(단체)에서 제출한 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붙임 자료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아래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만일 제출한 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였거나 허위 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사업의 선정 무효,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 본 단체는 사업자 선정방식에 동의하며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사업계획서 및 협약서의 내용대로 성실히 축제를 진행한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 법인(단체)명
(직인)

대표자

(서명)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서식 5호】

- 2019 IFEZ 문화행사 보조사업 -
사업계획서

축 제 명	☞ 신청축제명과 동일하게 기재		
기 간	2019. ○. ○. ~ ○. ○.	총 기간일수	총 ○일
장 소	☞ 행사 메인장소 혹은 주요장소를 기재. 예) ○○○, ○○○ 외 3개소		
내 용	○ ☞ 세부 프로그램명을 간략히 기재 ○		
사업비(예산) ☞ 지원신청내용을 포함한 예산계획을 기재	구분	예산액(원)	비율(%)
	시 보조금	100,000,000원	33.3%
	자체 부담금	50,000,000원	16.7%
	민간 후원금	50,000,000원	16.7%
	계	300,000,000원	100%
주 최	☞ 주최기관을 기재		
주 관	☞ 주관단체를 기재		
후 원	(확 정)	☞ 확정된 후원 혹은 협력기관, 기업체 등을 기재	
	(미 정)	☞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협의 중인 기관, 기업체 등을 기재.	
투입인력	○ 법인(단체)명 :		
	○ 대표자 :		
	○ 해당 축제에 투입될 인력		
	직위 직책	이름	연락처(핸드폰)
	총괄책임		
	☞ 실제 사업 담당자의 해당내용을 기재		

1

사업 목적 및 기획 의도

 사업 목적

- 본 축제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동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게 기술하여 주시되, 사업 추진 배경이나 필요성 등도 추가로 기재

-

○

-

 사업 주제 (혹은 기획 의도)

- 2019년 사업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에 대한 콘셉트를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

-

○

-

2

세부사업계획

 개요

- 기간 :
- 장소 :
- 내용 :

 목표

구분	관람객 (명)			규모 (명/팀)		비고
	계	무료	유료	주요프로그램	기타 프로그램	

향후, 결과보고서 정확한 산출근거를 제시 / 객관적인 증빙자료(사진, 통계, 보도기사, 관련 리뷰 등)

 세부 프로그램 내용 (상세히 기술)

- 주요 행사 (예시)

구분	내용		유/무료	비고
개막식	일시	2019. ○. ○	무료	관람객 700명
	장소	○○○		
	내용	개막공연 및 리셉션		

구분	내용		유/무료	비고
본 행사	일시	2019. ○. ○ ~ ○. ○	무료	관람객 50,000명
	장소	○○○		
	내용			
부대행사	일시			
	장소			
	내용			
폐막식	일시			
	장소			
	내용			

○ 상세 사업 장소

구분	축제장소	행사장 규모 (객석수 또는 공간면적)	비고
실내장소	○○○	2,500석	
야외장소	○○○야외무대	450석	

○ 행사장 구성도

지역성과 연계된 특성화 (혹은 차별화) 방안

- 개최 지역의 특성 또는 지역적 소재(역사, 문화, 장소, 인물 등)가 지닌 독창성과 연관된 본 사업의 차별화 방안에 대해 기술
-
-
-

추진 프로세스(추진일정 및 절차)

일정	추진내용	비고
2019. ○~○	기본 방향 설정 및 자료 조사	
2019. ○~○		
2019. ○~○		
2019. ○~○		

신청 축제를 효과적,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절차를 세부적으로 기재
주제 선정, 참가자 결정, 사업 준비 및 전개 과정, 결과물 공유 및 확산 등 신청 사업의 전 과정에 대한 추진 방법을 사업 특성에 맞도록 설명

안전관리계획 재해대처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 시설관리 책임자, 안전관리 조직도



- 비상시 조치, 연락처

구분	조치담당업무	책임자(소속)	연락처
○○○콘서트홀		○○○(단체명)	
○○○야외무대		○○○(단체명)	

- 안전관리인력 확보

구분	조치담당업무	관료요원(소속)	비고
○○○콘서트홀		○○○(단체명)	
○○○야외무대		○○○(단체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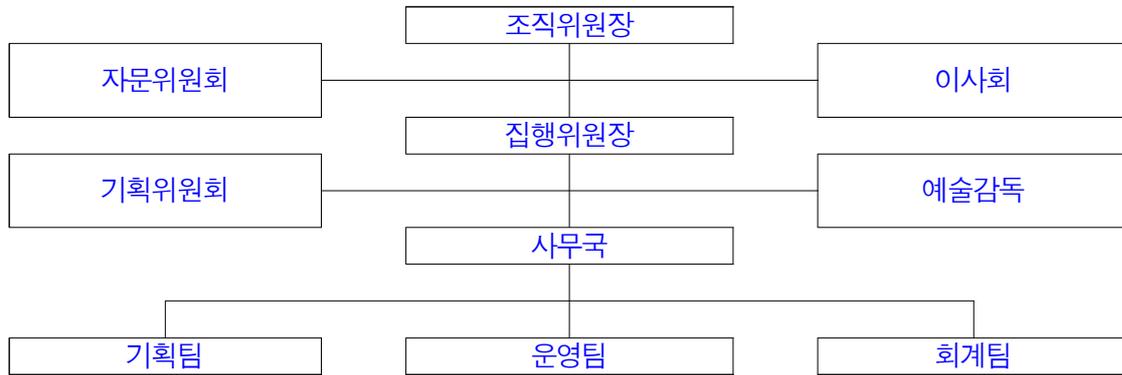
- 안전대비 관련 단체보험 가입 계획
-

안전관리 예산

항 목	산출근거	지출액	신청액
안전요원 인건비	10만원×10인×7개 행사	7,000,000원	7,000,000원
행사 보험료	200만원×1식	2,000,000원	자부담
구급약품 구입	50만원×1식	500,000원	자부담

3 조직 체계 및 운영 인력

운영 조직도(예시)



☞ 사업을 주최(주관)하는 조직의 구성을 알 수 있는 조직도를 위와 같은 이미지나 도표 형태로 작성

운영 인력

○
-

구 분	역 할	성 명	현직 / 주요경력	비 고
①	위원장	○○○		상근
⑥	예술감독	○○○		비상근
⑦	사무국	○○○		비상근

☞ 위 운영 조직도의 세부 구성 인적사항을 위 예시와 같이 작성

4

예산 계획

□ 수입 예산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율(%)	확정 여부
사업수입 (A)	사업 수입		00.0%	
	사업 외 부대수입		00.0%	
공공자원 (B)	지자체보조금 (지방자치단체)		00.0%	
민간자원 (C)	기업협찬후원금		00.0%	
	개인 기부금		00.0%	
자체부담 (D)	순수한 단체의 자체 부담금		00.0%	
계(E)			100.0%	
재정자립도	[(A+D) / 총 수입액(E)] × 100%		00.0%	

☞ 본 공모사업의 2019년도 재원은 시 보조금으로 확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확히 기재.

☞ 사업수입과 민간재원의 경우 해당 사업 예산으로 사용하고 정산하여야 함.

자부담 조달계획

- 신청축제에 대한 자부담 예산 확보방안

※ 경비의 부담자가 있는 경우 성명, 부담금액, 방법 기입

5

홍보·마케팅 및 관객 유치 계획

홍보·마케팅 계획

- 예) 사전 홍보 계획

-

- 예) 매체 홍보 계획

-

- 예) SNS 및 온라인 홍보 계획

-

- 예) 인쇄물 또는 설치물 제작·활용 계획

-

- 예)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홍보 활성화 계획

-

관객 개발 계획

- 예) 할인, 패키지를 통한 취약계층 초청 계획

-

- 예) 타 지역 관람객 및 해외 관광객 유입 활성화 계획

-

- 예) 관련 이벤트 및 캠페인 활용 계획

-

6

파급효과(기대효과)

문화향유에 대한 기여도

-

-

-

-

사회적 기여도

○

-

자체 모니터링 및 환류 계획

○ 예) 관람객 만족도 조사 추진

- 조사 시기, 조사 방법, 주요 조사내용, 결과 환류

○ 예) 자체 모니터링 및 평가 실시

- 조사 시기, 조사 방법, 주요 조사내용, 결과 환류

7

참고자료(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신청사업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참고 자료(언론, 전문지 보도 등)

※ 기타 추가 자료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하여 첨부 가능(9부를 인쇄하여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

위 임 장

대표자	법인또는 단체명		법인(단체)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대리인	성 명		생 년 월 일	
	소 속 (업체명)		전 화 번 호 (휴대폰번호)	
	주 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하는 『 (축 제 명) 』 에
제안함에 있어 상기 인을 법인(단체)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
였음을 증명합니다.

2019. .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모든 책임을 짐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9-83호

손실보상협의 공시송달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164(2017.07.03.)호로 인천 도시계획시설(인천가족공원) 3-1단계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인천가족공원(3-1단계) 조성사업』 구간에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 연고자의 주소·거소, 그 밖의 송달장소 불명 등으로 인하여 손실보상협의 통지가 불가능한 연고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협의), 동법 시행령 제4조(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8일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1.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시행지	사업규모	사업시행자
인천가족공원조성 (3-1단계) 조성사업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산54-10 일원	- 공원 총면적 : 1,681,139㎡ - 금회시행면적(3-1단계 사업) : 247,441㎡	인천광역시장 (종합건설본부장)

2. 공고기간 : 2019. 3. 8.(금) ~ 3. 25.(월)

3. 보상협의 내용 및 방법

- ◇ 협의기간 : 2019. 3. 8(금) ~ 3. 25(월) 까지
- ◇ 협의장소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4층 보상2팀(440-5172)

◇ 보상방법 : 현금보상 (계좌입금)

◇ 보상절차 : 분묘개장 등의 절차 이행 후 보상

◇ 보상협의시 구비서류

- 지참물 : 고인제적등본 1부,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부, 통장사본, 분묘개장신고서, 개장비용영수증, 분묘개장사진, 위임장 등

4. 보상협의대상 : 분묘 연고자 44건명(붙임 참조)

5. 기타사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6항에 따라 공고한 날로부터 15일이 지난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6.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032-440-5172)

공시송달 대상

구역 번호	묘번	매장자 (성명)	분묘 형태	물건 종류	구 조	평균	분묘이전비 (B)	손실보상액 (A+B)	연고자		
									주소	성명	우편번호
C156	나6-775	최봉연	단장	비석	대리석	1,330,000	3,335,000	4,665,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946번길 00, 0동000호 (병방동,삼지구택)	최*복	21028
				상석	화강석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000 우리라이온스밸리 0000	최*복	21315
				석축1	화강석						
				석축2	화강석						
				측백나무							
				돌받침	화강석						
				꽃병	화강석						
C261	나6-473	전주이씨	단장	비석	화강석	490,000	3,335,000	3,825,000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북한강로 000	정*호	12280
				상석	콘크리트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북한강로525번길 00-0	정*호	12280
				석축	화강석						
				꽃병	화강석						
C292	나5-1498	인동김씨	단장	비석	화강석	1,035,500	3,335,000	4,370,500	인천부평구 수변로19번길 00. 덕성빌라 0-000	김*주	21415
				상석	화강석				강원도 속초시 응골길 00, (노학동)	김*주	24868

구역 번호	묘번	매장자 (성명)	분묘 형태	물건 종류	구 조	평균	분묘이전비 (B)	손실보상액 (A+B)	연고자		
									주소	성명	우편번호
				석축1	화강석						
				석축2	화강석						
				측백나무							
E221	나1-410	노영호	단장	비석	콘크리트	601,500	3,335,000	3,936,500	인천 강화군 고비고개로741번길 00-00	노*길	23018
				석축	화강석						
				상석 (바닥석)	콘크리트						
E337	나1-646	경완섭	단장	비석	화강석	1,435,500	3,335,000	4,770,500	인천 동구 화수로 0-00 솔빛마을주공2차아파트 000동000호	김*예	22546
				상석	화강석						
				석축1	화강석						
				석축2	화강석						
				돌받침	화강석						
F255	나2-700	김해근씨	단장	비석	화강석	528,500	3,335,000	3,863,500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1029번길 00, 0동000호 (계산동,신한아파트)	이*엽	21039

구역 번호	묘번	매장자 (성명)	분묘 형태	물건 종류	구 조	평균	분묘이전비 (B)	손실보상액 (A+B)	연고자		
									주소	성명	우편번호
				상석	콘크리트						
				석축	화강석						
				측백나무							
G146	나2-103	이요습	단장	비석	화강석	2,237,500	3,335,000	5,572,500	인천미추홀구인주대로57번길00,000호 (송의,신안쉐르빌)	이*희	22173
				상석	화강석						
				석축1	화강석						
				석축2	화강석						
				돌받침	화강석						
				꽃병	화강석						
				석등	화강석						
G164	나2-88	장병준	단장	비석	화강석	1,014,000	3,335,000	4,349,000	경기안산시단원구 광덕3로 00 성안빌딩 0층	장*열	15441
				상석	콘크리트						

구역 번호	묘번	매장자 (성명)	분묘 형태	물건 종류	구 조	평균	분묘이전비 (B)	손실보상액 (A+B)	연고자		
									주소	성명	우편번호
				석축1	화강석						
				석축2	화강석						
				측백무							
G185	나2-434	장순남 김영숙	합장	비석	화강석	332,000	4,238,000	4,570,000	인천 중구 도원로30번길 00(도원동)	장*식	22327
G265	나2-247	김해림씨	단장	비석	화강석	246,000	3,335,000	3,581,000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282번길 00	김*덕	22118
				상석	콘크리트						
G272	나2-237	이용구, 이평은씨	합장	비석	대리석	1,223,500	4,238,000	5,461,500	인천 중구 우현로35번길 00-0, 000호	이*욱	22318
				상석	화강석						
				석축1	화강석						
				석축2	화강석						
				돌받침							
G296	나2-901	최종재	단장	비석	대리석	1,065,500	3,335,000	4,400,500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로15번길 00. 000동 000호 (봉담그대가3단지아파트)	최*수	18321

구역 번호	묘번	매장자 (성명)	분묘 형태	물건 종류	구 조	평균	분묘이전비 (B)	손실보상액 (A+B)	연고자		
									주소	성명	우편번호
				상석	화강석						
				석축1	화강석						
				석축2	화강석						
				돌받침	화강석						
G347	나2-55	엄창운	단장	비석	화강석	444,500	3,335,000	3,779,500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애기봉로806번길 00-00. 태삼빌라 000호	엄*호	10011
				석축	화강석						
G376	나2-45	배소례	단장	석축	화강석	84,500	3,335,000	3,419,5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00 (동춘동, 삼성력키아파트) 0/000호	김*진	21968
H73	가12-98	김해꺾씨	단장	비석	화강석	1,225,500	3,335,000	4,560,500	인천 부평구 부흥북로95번길 00-00	이*오	21352
				상석	화강석						
				석축	화강석						
				돌받침	화강석						
				향나무							

구역 번호	묘번	매장자 (성명)	분묘 형태	물 건 종 류	구 조	평균	분묘이전비 (B)	손실보상액 (A+B)	연고자		
									주소	성명	우편번호
				펜스	스텐텐스						
H147	가12-751	박성삼	단장	비석	화강석	317,000	3,335,000	3,652,000	인천 동구 샛골로161번길 00	김*철	22543
H148	가12-774	오춘근	단장	비석	화강석	763,500	3,335,000	4,098,500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00	오*근	21445
				상석	콘크리트						
				석축1	화강석						
				석축2	화강석						
H151	가12-754	존.W.굳	단장	비석	화강석	1,120,000	3,335,000	4,455,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남로14번길 00	박*자	21429
				석축1	화강석						
				석축2	화강석						
i148	가12-880	백천조씨	단장	비석	대리석	1,987,500	3,335,000	5,322,5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안로235번길 00-0, 000호 (간석동)	이*국	21506
				상석	화강석						
				석축1	화강석						

구역 번호	묘번	매장자 (성명)	분묘 형태	물건 종류	구 조	평균	분묘이전비 (B)	손실보상액 (A+B)	연고자		
									주소	성명	우편번호
				석축2	화강석						
				돌받침	화강석						
				향나무							
i157	가12-862	전주씨	단장	비석	대리석	1,969,000	3,335,000	5,304,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안로235번길 00-0, 000호 (간석동)	이*국	21506
				상석	화강석						
				석축1	화강석						
				석축2	화강석						
				돌받침	화강석						
				향나무							
i200	가12-266	남기용	단장	비석	대리석	3,099,000	3,335,000	6,434,000	인천시 미추홀구 염창로 00-00	차*희	22128
				상석	화강석						
				석축1	화강석						

구역 번호	묘번	매장자 (성명)	분묘 형태	물건 종류	구 조	평균	분묘이전비 (B)	손실보상액 (A+B)	연고자		
									주소	성명	우편번호
				석축2	화강석						
				돌받침	화강석						
				꽃병	화강석						
J10	나2-915	인권옥, 김건자	합장	비석	대 석	1,193,000	4,238,000	5,431,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로182번길 00-0(주안동)	인*훈	22181
				상석	화강석						
				석축1	화강석						
				석축2	화강석						
				돌받침	화강석						
J147	나4-98	이성원	단장	비석	대리석	665,000	3,335,000	4,000,000	경북 포항시 북구 대안길 00 000동 000호 우방타운아파트	이*복	37650
				상석	화강석						
				석축	화강석						
J185	나4-453	박우정	단장	비석	대리석	1,793,500	3,335,000	5,128,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0000, 000동 000호 (산곡동, 현대아파트)	박*진	21384

구역 번호	묘번	매장자 (성명)	분묘 형태	물건 종류	구 조	평균	분묘이전비 (B)	손실보상액 (A+B)	연고자		
									주소	성명	우편번호
				상석	화강석						
				석축1	화강석						
				석축2	화강석						
				돌받침	화강석						
K114	나6-89	조광호	단장	비석	화강석	327,000	3,335,000	3,662,000	경기 의정부시 회룡로105번길 00. 000동 000호(신원아파트)	조 *	11633
K309	가13-11	원주원씨	단장	비석	화강석	1,234,000	3,335,000	4,569,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00-0, 000호(부개동, 원광하이빌)	이*석	21400
				상석	콘크리트						
				석축	화강석						
				석축2	화강석						
K338	나4-343	오세정	단장	비석	화강석	1,614,500	3,335,000	4,949,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체육관로 00, 000동000호(삼산동,삼산타운)	오*석	21341
				상석	콘크리트						
				석축	화강석						

구역 번호	묘번	매장자 (성명)	분묘 형태	물 건 종 류	구 조	평균	분묘이전비 (B)	손실보상액 (A+B)	연고자		
									주소	성명	우편번호
K352	나4-697	장윤희	단장	비석	화강석	289,000	3,335,000	3,624,000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장차로 00, 000동0000호 (길훈아파트)	장*원	10126
L98	가13-374	김동혁 전주씨	합장	비석	대리석	997,000	4,238,000	5,235,000	경기 군포시 삼성로87번길 0-0. 000호(신도빌라)	이*자	15873
				상석	화강석						
				석축1	화강석						
				석축2	화강석						
				돌받침	화강석						
				꽃병	화강석						
L110	가13-99	이연식	단장	비석	대리석	817,000	3,335,000	4,152,000	충남 예산군 덕산면 덕산온천로 00-00	이*선	32407
				상석	콘크리트				인천 서구 청마로 00. 0-000 (하나로 아트빌0차)	이*선	22675
				석축1	화강석						
				석축2	화강석						
L183	가13-136	박근준 이순개	합장	비석	대리석	1,118,000	4,238,000	5,356,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길파로27번길0 (주안동,럭키연합) 0-000호	박*득	22126

구역 번호	묘번	매장자 (성명)	분묘 형태	물건 종류	구 조	평균	분묘이전비 (B)	손실보상액 (A+B)	연고자		
									주소	성명	우편번호
				석축	화강석						
				석축2	화강석						
				축백무							
L189	가13-268	박유관	단장				3,335,000	3,335,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북로 00 (부평동, 부광하이츠빌) 0동 000호	박*욱	21353
L199	가13-240	홍봉국	단장	비석	화강석	1,460,000	3,335,000	4,795,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1104번길 0. (일신동, 삼성연립)	홍*희	21419
				상석	콘크리트						
				석축1	화강석						
				석축2	화강석						
				묘주무							
M34	나10-4	창주한씨	단장	비석	화강석	625,500	3,335,000	3,960,500	경기도 부천시 상오정로 000 0동 000호 (오정동 고려주택)	강*순	14440
				석축	화강석						
M77	나10-52	신삼수	단장	석축	화강석	271,500	3,335,000	3,606,500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로 00-00 (오류동,현대타운) 00동 000호	신*철	08343

구역 번호	묘번	매장자 (성명)	분묘 형태	물건 종류	구 조	평균	분묘이전비 (B)	손실보상액 (A+B)	연고자		
									주소	성명	우편번호
				측백나무							
M120	나10-261	김만복	단장	비석	화강석	488,500	3,335,000	3,823,5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4길 00,0 00호 (성정동,지유하우스)	김*민	31141
				상석	시멘트						
				석축	화강석						
M163	나10-223		단장				3,335,000	3,335,000	인천 미추홀구 수봉로 000-00	전*오	22181
N140	나9-21	김귀임	단장	비석	화강석	1,123,000	3,335,000	4,458,000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117번나길 00, 000호 (송림하이츠5차)	함*웅	48115
				석축1	화강석						
				석축2	화강석						
N148	나6-8	김형섭	단장	상석	화강석	1,275,000	3,335,000	4,610,000	경기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0000-0. 기호빌라 0동 000호	김*자	17096
				돌받침	화강석						
				노간주							
N149	나6-9	남양홍씨	단장	노간주		250,000	3,335,000	3,585,000	경기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0000 기호빌라 0동 000호	김*자	17096

구역 번호	묘번	매장자 (성명)	분묘 형태	물 건 종 류	구 조		분묘이전비 (B)	손실보상액 (A+B)	연고자		
					평균				주소	성명	우편번호
P75	묘번무	선진선	단장				3,335,000	3,335,000	충남 천안시 서북구 봉서7길 00. 000동 0000호(일성1차아파트)	서*주	31149
P104	나6-251	임성씨 유완근	합장	비석	대리석	953,000	4,238,000	5,191,000	인천 동구 육송로 10번길 00-0	유*희	22545
				상석	대리석						
				돌받침	화강석						
P169	나9-73	창원씨	단장	비석	화강석	330,000	3,335,000	3,665,000	경기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0000-0. 기호빌라 0동 000호	김*자	17096
R127	나8-332	이상덕	단장	비석	화강석	506,000	3,335,000	3,841,000	인천 남동구 문화서로18번길 00	이*심	21568
				상석	콘크리트						
				석축	화강석						
				석축2	화강석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25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3월 4일

인천광역시 의회의장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발생할 시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설치 조례에 이에 대한 대상과 절차가 존재하지 않아 의회의 동의 없이 경제청 주요사업이 결정되어 진행되기가 일쑤였음.
- 이에 위 해당 조례에 동의의 대상과 절차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경제청 입장에서는 사업 판단과 운영에 안전성을 기하고 의회로서는 시민 대의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사항에 관한 협약에 관하여 의회의 동의를 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3.14.(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의회의장(참조 : 산업경제 전문위원실 전화 440-6233, 팩스 440-8765, 이메일 sp081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검토사항 1부.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부터 제23조를 제19조부터 제24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시장은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협약에 관해서는 의안의 형식을 갖추어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

1. 의안은 시장이 해당 협약 체결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추진이 필요할 시에는 협약서 등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의안에는 구체적인 의무부담 내용과 비용추계서, 협약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3. 시장은 의결기한을 요청할 수 있고 의회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4.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그리고 조성원가 이상으로 판매하는 토지 매매계약은 이 규정의 예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p>제18조(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시장은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협약에 관해서는 의안의 형식을 갖추어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안은 시장이 해당 협약 체결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추진이 필요할 시에는 협약서 등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의안에는 구체적인 의무부담 내용과 비용추계서, 협약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3. 시장은 의결기한을 요청할 수 있고 의회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4.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그리고 조성원가 이상으로 판매하는 토지 매매계약은 이 규정의 예외로 한다.
<u>제18조 ~ 제23조 (생략)</u>	<u>제19조 ~ 제24조 (현행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와 같음)</u>

관련법령 검토

관계 법령	<p><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법</p> <p style="padding-left: 20px;">-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p> <p>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1. ~ 7.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p> <p><input type="checkbox"/> 지방공기업법</p> <p style="padding-left: 20px;">- 제40조(중요 자산의 취득·처분)</p> <p>① 지방직영기업의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6. 4.></p> <p>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p>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비예산 사업

4. 작성자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사업본부 투자유치기획과장 백종학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26호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3월 4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가. 산업시설환경개선사업은 노후된 산업시설에 디자인을 접목하여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 나. 정부의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 및 원도심 활성화 사업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환경개선사업에 대응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기관인 인천환경디자인센터를 설치함

2. 주요내용

- 가. 인천환경디자인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하고 인천환경디자인센터의 사업범위를 정함(안 제4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3. 14 (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회장 (참조 :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전화 440-6233, 팩스 440 -8765,

이메일 hongjjang6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제7호까지”를 “제5호까지, 제7호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4조1항제6호 및 제11호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천환경디자인센터(이하 “환경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의2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지원센터”를 “지원센터, 환경센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의2(인천디자인지원센터 등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제1호부터 <u>제7호까지</u> 및 제11호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천디자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 style="margin-left: 20px;"><u><신 설></u></p> <p><u>② ~ ⑤</u> (생략)</p> <p><u>⑥</u>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u>지원센터</u>, 서비스센터 및 교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4조의2(인천디자인지원센터 등의 설치·운영 등) ① ----- ----- <u>제5호까지</u>, <u>제7호</u> ----- ----- ----- -----.</p> <p>② 시장은 제4조1항제6호 및 제11호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천환경디자인센터(이하 "환경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p> <p><u>⑦</u> -----<u>지</u> <u>원센터</u>, <u>환경센터</u>, ----- ----- -----.</p>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

관계법령	<p>□ 산업디자인진흥법</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산업디자인"이란 제품 및 서비스 등의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 행위(창작·개선을 위한 기술개발행위를 포함한다)와 그 결과물을 말하며, 제품디자인·포장디자인·환경디자인·시각디자인·서비스디자인 등을 포함한다.</p> <p>제5조(산업디자인의 육성·개발사업) ①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디자인 개발 등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높인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시상 및 지원 2. 산업디자인 개발을 통한 우수브랜드의 육성·지원 3. 그 밖에 산업디자인 개발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향상을 위한 지원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환경디자인센터 설치 및 운영비(인건비 포함)는 매년 사업인 원도심특별 회계, 「산업시설 환경개선 사업」 예산으로 기 확보.
- 환경디자인센터 공간은 부평구청 측에서 무상임대 지원하기로 결정 하였기에
- 별도의 추가 발생비용은 없음.

4. 작성자

일자리경제본부 산업진흥과장 임경택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27호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3월 4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2018년도에 개정된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상의 일부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인천시 4차 산업혁명의 촉진과 급진전하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4차 산업혁명 대응 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나열 (안 제4조)
-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근거 마련 (안 제4조의2)
- 원활한 활동을 위한 부위원장 수 및 당연직 위원 구성원 변경(안 제8조)
- 기업지원 및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근거 마련 (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3. 14 (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회장 (참조 :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전화 440-6233, 팩스 440 -8765, 이메일 hongjjang6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 호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4차 산업혁명의 환경 및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의 추진 방향 및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3명”을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제자유구역청장, 4차 산업혁명 관련 업무 담당 국장, 전담기관의 장
제14조제1항제1호 중 “기술 관련”을 “기술, 창업에 관련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대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 연구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연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생략) <u><신 설></u></p> <p><u><신 설></u></p>	<p>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국내·외 4차 산업혁명의 환경 및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u> <u>2. 4차 산업혁명의 추진 방향 및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u> <u>3.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u> <u>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u> <p>제4조의2(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한다.</p>
<p>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u>3명</u>을</p>	<p>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 <u>2명</u>----</p>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
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
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
다.

- 1.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경제자유구역청장, 기획조정실장, 4차 산업혁명 관련 담당국장, 인천도시공사 사장, 전담기관의 장

2. 3. (생략)

④·⑤ (생략)

제14조(기업지원 등의 활성화) ①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
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 1. 4차 산업혁명 정책 및 기술 관련 정보제공
- 2. (생략)
- 3.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창업에 관련된 정보 제공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경제자유구역청장, 4차 산업혁명 관련 담당국장, 전담기관의 장

2. 3.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14조(기업지원 등의 활성화) ①

- 1. ----- 기술, 창업에 관련된 --
- 2. (현행과 같음)
- 3.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대응을 위해 시장이 필요

②·③ (생략)

<신설>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 연구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연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검토

관계법령	<p>□ 지방자치법</p> <p>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p style="text-align: center;">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p> <p>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p>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전문인력 양성 시책 추진 (안 제4조의2 신설)
 - 4차 산업혁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 추진
- 기업지원 등의 활성화(안 제14조의 제①항 3호, 제④항 신설)
 -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된 개발 장려, 산·학·연 간의 공동연구 촉진 노력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8. 2. 20. 제정된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안)으로서
- 현 조례 제13조 제1항에서 전담기관을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로 지정하고 시장이 정하는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재원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
- 금회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라 신설되는 사항은 이미 추진 또는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근거가 있으므로 비용 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 성 자 : 일자리경제본부 신성장산업과장 신남식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 - 28호

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3월 5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건축정책의 공공적 가치구현을 위하여 「건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밖에 인천광역시의 건축정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건축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 외의 시 건축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목적을 개정(안 제1조)
- 나. 건축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연령별 고른 주민참여 방안이 포함되도록 개정(안 제4조제6호)
- 다. 건축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연령별 건축물 이용 특성조사 및 반영 방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안 제4조제9호 신설)
- 라. 민간전문가(인천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의 명칭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1조 및 제12조 신설)

마. 민간전문가(인천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3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4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참조: 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45, 팩스 032-440-8766, 이메일: budu7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축기본법 및 건축기본법시행령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다. 합 의:

라. 규제심사: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그 시행에”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에 인천광역시의 건축정책 등에”로 한다.

제4조제6호 중 “주민참여”를 “성별·연령별 고른 주민참여”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성별·연령별 건축물 이용 특성조사 및 반영 방안에 관한 사항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인천총괄건축가 운영 등) ① 시장은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인천지역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건축·도시·디자인 관련 주요 공공사업의 총괄조정 등 지역경쟁력 강화 및 지역 현황에 부합한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이하 “인천총괄건축가”라 한다)를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인천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인천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건축·도시·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검토 및 자문
2. 시장 등이 발주하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또는 설계비 2억원 이상

의 공공건축물 및 공간 환경사업의 기획·발주·기본설계에 대한 총괄 조정 및 자문

3.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사업시행에 관한 자문

4. 공공건축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업에 대한 중점관리

④ 인천총괄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시의 공공사업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⑤ 시장은 인천총괄건축가의 업무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공공건축가 운영 등) ① 시장은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인천 지역에 이루어지는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 단계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 설계 또는 총괄조정 및 관리하는 전문가(이하 “공공건축가”라 한다)를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건축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 등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설계 또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자문

2. 시장이 결정하는 정비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의 수립에

대한 자문

3.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의 기획·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사업의 기획·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

④ 시장은 공공건축가의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인천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해촉) 시장은 인천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가를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체사항

관계법령	<input type="checkbox"/> 「건축기본법」 ○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input type="checkbox"/> 「건축기본법 시행령」 ○ 제21조(민간전문가의 참여)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건축기본법」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민간전문가의 자격·업무범위·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민간전문가의 참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기술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를 말한다)
3. 대학에서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②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건축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민간전

문가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건축·도시 관련 기획 및 설계 업무에 대한 조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정책에 대한 자문과 건축민원 업무의 처리

3. 다수의 사업자 또는 설계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및 관리

4. 건축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과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에 대한 기획·설계 등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인천총괄건축가 운영 등(안 제11조)
- 공공건축가 운영 등(안 제12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으로 설정
-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운영비
 - 2019년도는 총괄건축가 모집 및 구성절차 등의 소요기간을 감안, 실질적 운영기간인 6월분만 편성
 - 2020~2023년까지 매년 엔지니어링노임단가 상승률(기술사 1.2%, 특급기술자 5.69%)을 감안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설정

나. 추계 결과

-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민간전문가(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운영에 따른 비용은 1차 연도 40백만 원이 소요되며, 5년간 총 371.4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다. 재원조달방안

- 일반회계 충당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도시균형계획국 건축계획과장 김기문

[붙임]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입							
	소계						
세출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운영	40,000	81,140	82,280	83,420	84,560	371,400
	소계	40,000	81,140	82,280	83,420	84,560	371,400
채원 조달							
국 비							
시비	소 계	40,000	81,140	82,280	83,420	84,560	371,400
	일반회계	40,000	81,140	82,280	83,420	84,560	371,40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32호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3월 6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
- 나. 통합운영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 다.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라.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제10조)

마. 스마트도시산업 육성·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3. 15(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전화 440-6213, 팩스 440-8763, 이메일 jyung@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스마트도시계획)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시점 및 인천광역시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통합운영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 “통합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통합센터는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구축하되,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호환성·안전성·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2. 스마트도시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제공 등
3. 통합센터의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각종 부대시설물 관리·운영
4. 통합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

제4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계획(이하 “관리·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및 기능 향상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연계·통합관리를 위한 관리주체 간의 협력적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비 조달 및 절감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전문 인력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전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전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스마트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실무협의회 구성)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의 실무담당자와 관계기관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11조에 따라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관계 기관의 협조)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스마트도시산업 육성·지원 시책)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스마트도시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전·보급
2.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과의 공동연구개발
3. 중소기업 등의 스마트도시기술 경쟁력 강화
4. 스마트도시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5. 스마트도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스마트도시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및 스마트도시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는 폐지한다.

제3조(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input type="checkbox"/>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input type="checkbox"/>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input type="checkbox"/>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관할 구역에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2017. 3. 21., 2018. 8. 14.>

1.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건설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목표 및 추진 전략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5. 관계 행정기관간 역할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사항(국가시범도시가 지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10.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도시·군기본계획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2. 5. 23., 2013. 3. 23., 2017. 3. 21.>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2017. 3. 21.>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의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있는 경우로서 관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2. 5. 23., 2017. 3. 21.>

⑤ 스마트도시계획은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2. 5. 23., 2017. 3. 21.>

⑥ 삭제 <2015. 12. 29.>

⑦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2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5. 12. 29., 2017. 3. 21.>

[제목개정 2017. 3. 21.]

제14조(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7. 3. 21.>

1. 사업의 명칭 및 범위
2. 사업의 목적 및 기본방향
3. 사업시행자
4. 사업의 시행기간
5. 사업의 시행방법
6.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비용분담방안을 포함한다)
7.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
9. 스마트도시기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둘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도지사를,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5조, 제16조에서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5. 23.,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을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2013. 3. 23.>

⑤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목개정 2017. 3. 21.]

제19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중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기반시설의 관리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개정 2012. 5. 23., 2017. 3. 21.>

②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설과 관계되는 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시설들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③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전문인력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④ 그 밖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3. 21.>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계획을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운영계획의 수립 및 그 밖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제목개정 2017. 3. 21.]

제24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①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

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7. 3. 21.>

1.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5. 23., 2017. 3. 21.>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사업시행자
4.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5.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6.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7. 3. 21.]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협의사항)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9. 19.>

1.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사항

□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1-13>

제3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1-13>

1. 스마트도시건설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13>
2.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13>
3.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13>
4.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13>
5.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13>
6.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13>
7.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1-13>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2-15>

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스마트도시 전담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11-13>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사업시행자
3. 도시계획 또는 스마트도시기술(정보통신, 정보시스템, 기타) 전문가 <개정 2017-11-13>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신설 2015-8-3> <개정 2017-11-13>
5. 스마트도시건설(운영 포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11-13>
6.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수회에 걸쳐 응하지 아니하거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제5조(회의)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스마트도시 업무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7-11-13>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무협의회 운영)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련기관·부서 실무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13>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도시통합운영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에 따른 재정이 수반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4. 작성자

기획조정실 스마트도시담당관 시 현 정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33호

『인천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3월 6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조~제6조)

나. 분과협의회 구성·운영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제8조)

다.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안전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직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라. 시장은 협의회 업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나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마. 협의회 및 분과협의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3. 15(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전화 440-6213, 팩스 440-8763, 이메일 jyung@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소 : ○ 성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혁신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의 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 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한다.

③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정·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간사) 협의회에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7조(분과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 32조제8항에 따라 분과협의회를 둔다.

② 분과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협의회의 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협의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분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분과협의회는 회의 결과 및 중요 사항을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분과협의회의 간사는 분야별 분과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분과협의회의 기능) 분과협의회는 협의회 심의 사항에 대한 분야별 연구·검토 등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며,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협의회나 분과협의회에 출

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조사·연구) ① 시장은 협의회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협의회, 분과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및 분과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인천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인천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사항**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input type="checkbox"/>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input type="checkbox"/>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시·도 지역혁신협의회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지역혁신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시·도협의회는 심의결과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도 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할 시·도 지역 산업·기업의 육성 등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3. 관할 시·도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관할 시·도에서 제11조에 따라 추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시책 운영 체계에 대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관할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과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도협의회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관할 시·도의 국가균형발전시책 및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도협의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지역혁신지원단을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시·도협의회와 시·도 지역혁신지원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시·도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시·도 지역혁신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시·도협의회"라 한다)는 시·도협의회의 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9. 18.>

② 시·도협의회의 위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8. 9. 18.>

1.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2.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3.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해당 시·도 지방의회 의원

5. 해당 시·도 공무원
6.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 ③ 시·도협회의회의 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18. 9. 18.>
-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9. 18.>
- ⑤ 시·도협회의회의 장은 시·도협회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18. 9. 18.>
- ⑥ 시·도협회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9. 18.>
- ⑦ 법 제2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시·도협회의회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개정 2018. 9. 18.>
 1.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시·도 출연·보조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율계정 및 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지역지원계정 세출 사업(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각각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한 시·도의 예산신청에 관한 사항
 3. 제12조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행하는 시·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의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4.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작성·제출하려는 지역발전투자협약안에 관한 사항
 5. 제41조 제4항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통보하는 시·도협회의회의 의견에 관한 사항
 6.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에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⑧ 시·도지사는 시·도협회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능별 또는 분야별 분과협회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8. 9. 18.>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협회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8. 9. 18.>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 및 출장 시 소요 경비
- 업무수행을 위한 조사·연구에 소요되는 경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임

4. 작성자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김인수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34호

『인천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3월 6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인천 전 지역에서 지하 공간 개발로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지하 공간 공사 시 발파분진의 관리 및 공사 준공 이후에도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 나. 인천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9조)
- 다. 지하시설물 등 안전관리 현황 파악을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참조 :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팩스 032-440-8763, 이메일 obw0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032-440-6212)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소 : ○ 성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시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역의 안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1명을 둔다.

⑦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 담당자가 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 ① 시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input type="checkbox"/>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input type="checkbox"/>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세부내용 별지 작성”</p>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란 개발·이용·관리의 대상이 되는 지표면 아래를 말한다.
2. "지반침하"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
3. "지하개발"이란 지반형태를 변형시키는 굴착, 매설, 양수(揚水) 등의 행위를 말한다.
4. "지하시설물"이란 상수도, 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동구, 지하차도, 지하철 등 지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5. "지하안전영향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6.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란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말한다.
7. "지하개발사업자"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지하시설물관리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지하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지하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지하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지하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로 본다.
9. "승인기관의 장"이란 지하안전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10. "지반침하위험도평가"란 지반침하와 관련하여 구조적·지리적 여건, 지반침하 위험요인 및 피해예상 규모, 지반침하 발생 이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탐사장비 등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정량(定量)·정성(定性)적으로 위험도를 분석·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11. "지하정보"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정보 중

지반특성, 지하시설물의 위치 등 지하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12. "지하공간통합지도"란 지하를 개발·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하 정보를 통합한 지도를 말한다.

13. "지하정보관리기관"이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관리기관으로서 지하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7조(시·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지반 침하 예방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시·도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도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 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도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지방지하안전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시·도 지하안전위원회와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5조(지반침하위험도평가 및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등)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지반침하위험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라 한다)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긴급복구공사를 완료한 경우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4조제4항에 따라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실시명령을 받은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지반침하의 위험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고시하기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과 지반침하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지조사단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관계인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로써 이를 갈음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중점관리대상이 보수·보강 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반침하 위험이 해소된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의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 지정을 해제·고시하여야 한다.

⑥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방법·절차,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중점관리대상의 지정·고시 및 변경·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시·도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의 수립)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시·도 관리계획"이라 한다)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립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시·군·구 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관할 지역의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의 지정·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시·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도 관리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2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시·군·구 관리계획을 시·도지사,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도

지하안전위원회와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은 시·도지사가,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 지하안전위원회는 시·도지사가,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 지하안전위원회 또는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1조(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점관리대상의 위치·규모·설계도서 및 관리주체 등 기본 현황
2. 중점관리대상의 지반침하 위험 현황
3. 중점관리대상의 정비에 소요되는 기간·비용 등 정비사업 계획
4. 중점관리대상 정비사업 전(前)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중점관리대상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비계획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계획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정비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받은 시·도지사는 정비계획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정비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위원회 참석 수당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 위원회 10명 × 100천원 × 2회 = 2,000천원

4. 작성자 : 시민안전본부 재난대응과장 최 정 근